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ESG

경영안내서 공급망편



Start your business
with ESG guide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목차

Part 1. 공급망 실사의 이해

- | | |
|------------------|----|
| 1. 공급망 실사의 개념 | 05 |
| 2. 국내외 공급망 실사 동향 | 06 |
| 3. 기업 사례 | 09 |

Part 2. ESG 자가진단 체계

- | | |
|-------------------------|----|
| 1. ESG 자가진단 수립 배경 및 필요성 | 13 |
| 2. ESG 자가진단 지표 선정 배경 | 15 |
| 3. ESG 자가진단 지표체계 | 16 |
| 4. ESG 자가진단 지표 구성 | 17 |

Part 3. ESG 자가진단 지표설명

- | | |
|---------------|-----|
| 1. 환경(E) 영역 | 20 |
| 2. 사회(S) 영역 | 57 |
| 3. 지배구조(G) 영역 | 115 |



Part

1

공급망 실사 이해



1. 공급망 실사의 개념

2. 국내외 공급망 실사 동향

3. 기업 사례



공급망 실사 (Supply Chain Due Dilig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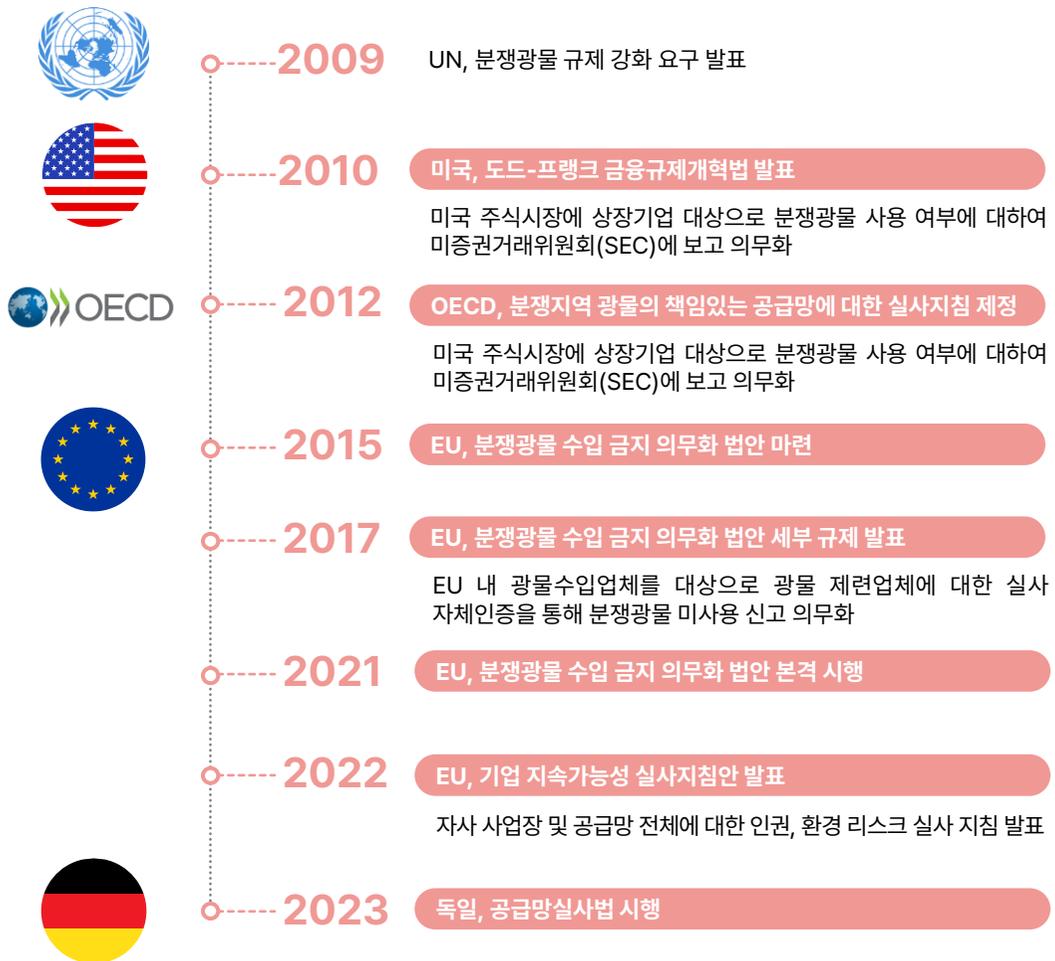
• 공급망 실사의 개념

- ✓ 각 국가별 유관법령에서 정의하는 규제 대상 기업(매출액, 고용인력, 상장 여부 등)이 공급망 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조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 자사, 자회사, 공급망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 및 완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실제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영향도 포함합니다.

• 중소벤처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 ✓ 미국, 유럽 등에 수출하는 규제 대상 기업은 공급망 실사 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 등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수출을 하지 않는 협력업체도 대기업 공급망에 포함되어 관련 정책 문서화, 자료 제출, 인력 및 설비 보완 등의 요구를 받을 수 있어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합니다.

공급망 실사 관련 규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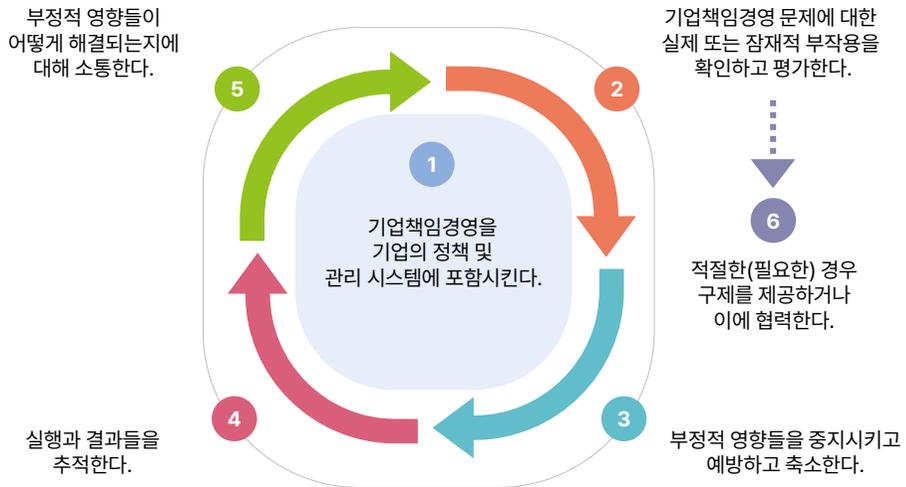
OECD

•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OECD 기업실사 지침(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제정(2018년)

- ✓ OECD의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1976년)에 근거를 둔 실사 지침으로 환경·사회·반부패와 관련된 부정적 영향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해 책임경영을 위한 실사에 대해 기업이 이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국가에 기반하고 있거나 경영되는 모든 다국적기업이며 중소기업도 포함 • 모 사업체 또는 지방소재 사업체 및 자회사를 포함한 다국적기업 그룹 내의 모든 사업체 |
| 실사 주제 및 지표 예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 물 사용 정도, 폐기물 및 화학물질 발생량,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등 • 부패 : 뇌물수수 여부, 뇌물 수수 금액, 뇌물수수 빈도 등 • 노동 : 고용상 차별금지, 임금 지불, 근로시간 등 • 인권 :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성희롱 및 성차별 금지 등 • 정보공개 : 부적절한 정보공개 또는 허위 정보공개 등 • 소비자 이익 : 제품 및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조치 등 |

[그림] 기업실사 프로세스 및 조치사항



출처: OECD(2018). 기업 책임경영을 위한 OECD 기업 실사지침

| 기업실사 프로세스 | 협력업체 조치사항 예시 |
|--------------------------------|---------------------------|
| 1 기업 정책 및 관리 시스템에 책임경영 포함 | • 노동, 인권, 환경, 윤리 등 정책 문서화 |
| 2 부정적 영향 확인 및 평가 | • 평가 응답 및 관련 자료 제출 |
| 3 부정적 영향 중단, 예방, 완화 | •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필요 사항 점검 |
| 4 관련 조치의 이행 실태와 결과 추적 | • 원청사 실사 대응 |
| 5 조치 결과에 대한 소통 | • 개선 결과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
| 6 부정적 영향 발생 시, 적절한 구제 제공 또는 협력 | • 구제 협력 및 개선 진행 |

미국

- 「**도드 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1502조)**」에 따라 미국 상장 기업은 분쟁 지역에서 생산되어 무장 세력의 자금 조달 및 생산 과정의 인권 침해와 연관될 수 있는 분쟁광물의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해당 상장 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국내 기업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제품이 강제노동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미국으로의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섬유, 반도체, 태양광,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의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항목 | 「도드-프랭크법」1502조 |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
|-------|---|---|
| 개요 | 미국 상장 회사들이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3TG 광물의 1) 사용 여부, 2) 출처, 3) 공급망 실사 결과 및 4) 관련 조치를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개보고서를 통해 공유 | 1)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생산되었거나, 2) 법안에서 식별된 강제노동 관련 단체가 생산한 모든 제품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 |
| 시기 | 2010년 7월 21일 제정 | 2022년 6월 21일 시행 |
| 대상 지역 | 콩고민주공화국 및 그에 인접한 9개 국가* |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
| 대상 항목 |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3TG(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 광물 |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 자동차 부품, 구리, 강철 등 |
| 비고 | * 앙골라,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남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 수입업자는 위구르지역 제품을 미국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강제노동과 무관함을 입증해야 함. |

독일

- 독일 「**공급망실사법**」 시행
 - ✓ 2021년 6월 통과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기업 실사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독일과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에 부정적인 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실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 적용범위는 산업을 불문하고 대상 기업의 자사 사업장, 직접 공급업체 및 간접 공급업체까지 전 영역에 적용되어 독일로 수출하는 기업의 협력업체들이 실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까지 독일 내 고용인원이 3,000명 이상인 기업이었으나, 2024년부터 1,000명 이상 기업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됨. * 고용인원에는 고용인, 해외파견 직원 및 6개월 이상 근무한 임시직 등이 포함됨 |
| 벌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80만 유로 • 전 세계 연 매출 4억 유로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연 매출의 최대 2%(3개년 회계연도 매출 기준) |
| 주요 실사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사 사업장 및 직접 공급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리스크 분석 ② 리스크 관리(예방 및 구제 조치 포함) ③ 사내 정책/강령 수립 ④ 고충처리절차 구축 ⑤ 문서화 및 보고 • 간접 공급업체(잠재적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리스크 분석 ② 예방조치 실행 ③ 관련 규정/강령 업데이트 |

EU

•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법안 잠정 합의

- ✓ 아동 노동, 강제 노동, 환경오염, 과도한 물 소비, 생태계 훼손 등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기업의 자사 사업장에 더해 공급망 전체에서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리스크를 실사하는 지침으로 향후 CSDDD가 발효 시, EU 수출기업의 협력업체들이 실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기업(2023년 12월 잠정 합의안 기준) |
|---------|---|
| EU 내 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수 500명 이상이고, 전세계 연간 순매출액 1.5억 유로 이상 기업(Grope 1) • 임직원 250명 이상이고, 전세계 연간 매출액 4천만 유로 이상 기업들 중 고위험 섹터에서 매출이 50% 이상 발생하는 기업(Group 2) |
| EU 외 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내 연간 순매출액 1.5억 유로 이상 기업(기준안) (Group 3) • 유럽 내 연간 순매출액 4천만 유로 이상 1.5억 유로 미만이고, 전세계 매출의 50% 이상인 고위험 섹터에서 발생하는 기업(기준안) (Group 4) • 지침 발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EU에서 발생한 순매출액이 3억 유로 이상인 기업(합의안) |

[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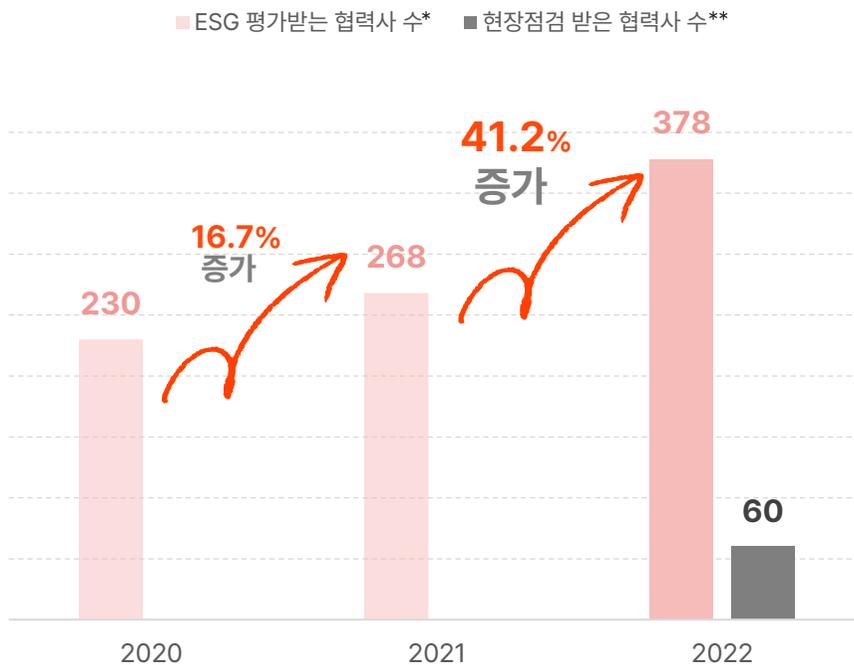
| 구분 | 내용 |
|---|--|
| 조항 20. 제재 부과 (Article 20. Sanction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에 제재 부과 시, 기업의 완화조치 이행 여부 및 부정적 영향 해소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고려해야 함. • 위반 행위의 중지 또는 임시 조치 명령, 행정적 제재 또는 금전적 제재(벌금) 부과 가능하며, 벌금을 부과할 경우 기업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벌금 규모를 결정해야 함. • 감독기구는 제재를 부과한 경우, 그 사건과 제재 강도를 대외에 공개하여야 함. |
| 조항 2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허용 (Article 22. Civil liabilit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은 실사 규정을 위반하고 부정적 영향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기업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지만 기업이 이를 대비 및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음. <p>*간접 연계된 협력사에서 발생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책임을 묻지 않음.</p> |

[실사 항목 및 주요 내용]

| 실사 항목 | 내용 |
|--------------------------|---|
| 인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인권협약에 따른 위반 사항 • 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매매, 임금차취,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에 제약을 가하거나 불필요한 간섭 등의 일체의 활동(평판, 종교, 사생활, 통신 등에 대한 간섭이나 제약 등) |
| 환경오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2개의 위반사항으로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유해폐기물 등에 관한 국제 환경협약과 긴밀히 연결 • 수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등의 제조·사용 및 폐기 등에 대한 내용 |
| 기후변화 (Group1 대기업만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및 파리협정의 지구평균기온 상승 1.5도 이하로 제한 목표로 부합하는 사업모델 및 전략이 포함된 계획의 수립 및 채택 • 사업계획에는 기업이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 수준에 기반해, 기후변화가 기업 운영에 미치는 위험 또는 영향을 파악해야 함. • 기후변화가 기업 운영의 주요 위험인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계획 내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함. • 기후변화 노력을 경영진의 변동성과금을 기후변화 노력과 연계해야 하며, 사업계획에는 기후변화 관련 의무 이행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경영진의 상여금 지불과 연계 |

공급망 ESG 관리

- 현재 국내 공급망 실사 관련 규제는 없지만 EU, 미국 등 해외 국가는 관련 규제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협력사 ESG를 평가한 81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ESG평가를 받은 평균 협력사 수는 230개('20년)에서 378개('22년)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협력사 실사를 수행한 32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실사를 받은 협력사는 2022년 평균 60개로 확대('20-'21년 0개)되었습니다.

국내 대기기업의 공급망 ESG 평가 및 실사 현황

*정보가 공개된 81개 기업 대상 평균, **정보가 공개된 32개 기업 대상 평균

출처: 한국경제인협회, 2023 K-기업 ESG 백서

공급망 ESG 관리 • 공급망 ESG 관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거래사, 산업, 지역, 규모 등에 따라 요구하는 내용과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관련 제도와 동향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1. 자동차 산업 공급망 요구사항(현대자동차, 폭스바겐)



공급망 ESG평가

- 1, 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리스크 서면 평가 실시
- 리스크 확인된 협력사 대상, 제3자(평가기관) 동반한 현장 실사 진행

공급망 관리

- CMRT/CRT 자료 제출 (광물 구매 관련 증빙자료)
- RMAP 인증 제련소 거래 현황 점검
-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관리 현황 관련 증빙 자료 제출 필요

공급망 ESG평가

- 자체 평가 설문(SAQ) 응답 및 증빙 서류 제출하고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positive 등급 획득 시, 계약 체결
- 리스크 확인 시, 현장 점검 실시(환경, 산업안전, 노동 인권 등)

공급망 관리

- 전체 에너지 사용량, 탄소배출량(Scope 1,2,3) 정보 요구
- OECD 실사 지침 준수 제련소 원자재 사용 요구 및 실사 진행
- 국제노동기구(ILO) 관행 준수 요구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2. 화장품 산업 공급망 요구사항(유니레버, 로레알)



공급망 ESG평가

- 자체 평가 설문(SAQ) 응답하고 부적합 사항 발견 시, 7일 이내 시정조치 계획 제출
- 원자재 및 완제품 공급업체는 현장 감사, 장비 및 서비스 공급업체는 EcoVadis 원격 평가 진행

공급망 관리

- 공급업체는 규모, 유형, 리스크와 상관없이 유니레버 공급업체 자격 시스템(USQS)에 매년 등록 필요
- 팜유를 원료로 하는 소비자 및 완제품 생산 전과정에 걸친 재료 수량, 제품 유형, 지속가능 인증 여부 등 정보 추적 관리

공급망 ESG평가

- 사회/환경 영향(CSR, 공급망, 혁신), 품질, 경쟁력 5가지 항목 평가
- RBI(Responsible Beauty Initiative), EcoVadis 평가 진행

공급망 관리

- 공급업체는 로레알의 윤리강령과 상호윤리협약서(MECL)에 서명하고 사회 및 환경 감사 프로그램에 동의 필수
- NDPE(산림파괴, 이탄지파괴, 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 이행 요구 및 지속가능 팜 지수(SPI)에 따른 우대 혜택 제공

출처: 기업 홈페이지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Part

2

ESG 자가진단 체계



1. ESG 자가진단 수립 배경 및 필요성

2. ESG 자가진단 지표 선정 배경

3. ESG 자가진단 지표체계

4. ESG 자가진단 지표 구성



중소벤처기업의 ESG란

대규모 상장사 중심으로 강화되어 온 ESG 규제가 공급망 실사 의무화를 계기로 점차 중소기업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시작되어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협력사 선정에 ESG 기준을 반영하고 이를 최소 연 1회 이상 평가하는 공급망 실사를 체계화하며 그 실사 대상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ESG 성과를 공공입찰 참여기준에 반영하고 금융기관은 ESG 성과를 연계한 대출·보증 등 금융상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SG는 중소기업이 시장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내부적으로도 경영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이슈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이해관계자별 ESG 요구사항

정부기관

- ✓ 환경, 노동 등 관련 규제 강화 및 법률 준수 요구
- ✓ 공공입찰 기준에 ESG성과 반영

고객사

- ✓ 협력사 선정 기준에 ESG평가 결과 반영
- ✓ 환경·인권 위험관리를 위한 공급망 ESG 실사 수행

금융기관

- ✓ ESG 성과를 연계한 대출·보증상품 확대
- ✓ 기업 ESG 리스크를 고려한 투자기준 마련

소비자

- ✓ 제품 선택 시 환경과 기후변화를 고려한 소비 증가

경영안내서 역할

경영안내서는 ESG 자가진단을 수행하는 기업에게 개별 지표에 대한 정의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표별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기업은 경영안내서를 통해 관련 법령을 파악하고, 타기업의 우수사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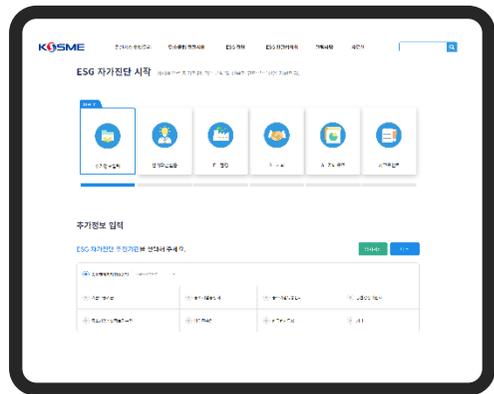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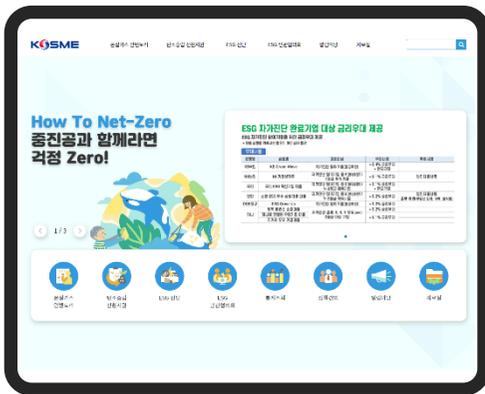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SG 자가진단 필요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ESG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ESG 자가진단 1.0 플랫폼을 시작하여 현재 ESG 자가진단 3.0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38,000여개 기업이 ESG 자가진단 플랫폼을 통해 자사의 ESG 수준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중 연매출액 20억 미만인 기업이 전체 기업 중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SG 자가진단은 공급망 실사 대응에 앞서 고객사로부터 요구 받을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스스로를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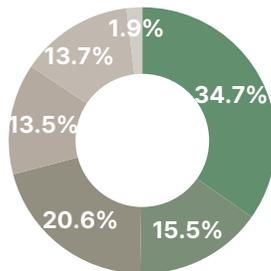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SG 자가진단 플랫폼

- STEP 1 기업 기본정보 입력**
 - 산업·연매출액·주요제품·수출여부·거래기업 등 기본정보 입력
 - ✓ 진단기업의 업종과 규모(매출액)에 적합한 질문 제시
- STEP 2 자가진단 실시**
 - 최소 45개부터 최대 56개 지표에 대한 진단 실시
 - ✓ 2지선다 유형과 3지선다 유형의 문항으로 구성
 - ✓ 진단기업의 특성을 고려하는 기능(Y/N) 추가
 - ✓ 일정규모(연매출액 100억원)이상의 기업은 심화지표 추가 응답
- STEP 3 진단보고서 확인**
 - 영역별·통합등급을 제시하고 미흡한 지표에 대한 솔루션 제공
 - ✓ 진단기업 스스로 최대 6개의 취약한 지표 선택 후, 해당 지표에 대한 솔루션 제시



ESG 자가진단 플랫폼 : <https://esg.kosmes.or.kr>

ESG 자가진단 플랫폼 이용기업 매출액 수준



- 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20억 미만
- 20억원 이상~50억 미만
- 50억원 이상~100억 미만
- 1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글로벌기업 선정

- 업종별 매출액 상위 글로벌 기업 Pool을 선정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액 상위 품목군을 조사한 후, 수출 품목별 세부품목 및 특징을 고려하였습니다.
- 품목별 수출국가, 국내 대기업 거래관계, 공급망 정책 보유 및 세부기준 공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최종 글로벌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공급망 행동강령 및 이니셔티브 분석

- 선정된 글로벌 기업이 자사 협력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분석하여 ESG자가진단 지표에 반영하기 위해 ① 공급망 행동강령, ② 공급망 ESG 평가 및 실사항목, ③ 산업별 주요 이니셔티브의 ESG 관리 및 평가 항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니셔티브 예시



• 경제성과·환경·사회·거버넌스 정보 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위기와 기회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정보 수집과 투자 반영을 목적으로 한 투자자 이니셔티브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Advancing Sustainability Globally

• 전자 산업 행동규범으로 공급업체의 근로조건 및 환경 의무를 개선하고 전자기업과 공급업체의 표준 단일화를 목적으로 함.

지표체계 도출

- ESG 체크리스트 2.0 지표와 비교·분석하여 기존 지표체계에 없으나 해외 주요기업에서 공급망 실사를 위해 요구하는 중요한 지표를 신규지표로 도출하였습니다.
- 기존 지표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의미가 유사한 지표는 병합하고, 모호하거나 지엽적인 지표는 삭제하여 지표체계를 전체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지표체계 확정

- 대기업과 대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존 자가진단 체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개선 필요사항, 애로사항 등)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지표체계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림] ESG 자가진단 지표 구성 프로세스

- 1 글로벌기업 선정**
중소기업 수출액 상위 품목 조사 → 품목 수입 업종 분석 → 글로벌 기업 Pool 선정
- 2 공급망 행동강령 및 이니셔티브 분석**
선정된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행동강령 및 산업별 주요 이니셔티브 공급망 요구사항 조사
- 3 지표체계 도출**
기존 지표와 비교·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표체계(안) 수립 후, 유사·병합·삭제지표 도출 및 신규지표 추가
- 4 대기업 협력사 대상 설문조사 실시**
대기업 협력사 대상으로 자가진단 체계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5 대기업 대상 자문회의 실시**
대기업 ESG 담당자 대상 자문회의를 통해 지표체계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
- 6 지표체계 확정**

ESG 자가진단 지표 구조

- 자가진단 지표는 기업 규모와 산업을 반영해 총 5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진단기업은 산업과 자사 특성에 따라 최소 45개에서 최대 56개 지표를 응답합니다.

E 환경 지표 S 사회 지표 G 지배구조 지표



지표 구성

- **일반 & 산업특화 지표 (산업특성 반영)**
 - ✓ 전체 지표는 산업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일반지표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산업별 특화지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기본 & 심화 지표 (기업 규모 반영)**
 - ✓ 일정 규모(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기업은 기본지표와 심화지표 모두 응답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은 기본 지표만 응답하는 구조로 규모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였습니다.
 - ✓ 규모가 작은 업체도 심화지표 응답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문항 구성

- **기업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간단한 답변 구조**
 - ✓ 명사형 보기를 통해 직관적인 의미 전달이 가능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습니다.
 - ✓ 2지선다, 3지선다 유형의 단순한 보기를 통해 응답 피로도를 감소시키고자 하였습니다.
- **기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능(Y/N) 추가**
 - ✓ 기업이 특정 지표와 관련이 없는 경우, 응답자가 [N]을 선택하면 해당 문항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아도 되며 스코어링에서도 제외됩니다.
 - ✓ 예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기업은 [N]을 선택하여 '수처리 및 폐수관리' 지표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SG 자가진단 지표

심화 산업

| | | | |
|--------------|---------------|----------------|-----------------------|
| 환경 (18) | 환경 목표 수립 | 환경성과 점검 및 관리 | 온실가스 배출 관리 |
| | 에너지 사용량 관리 | 폐기물 관리 | 수처리 및 폐수 관리 |
| | 악취 및 소음 관리 | (유해)화학물질 관리 | 대기오염물질 관리 |
| | 에너지 사용량 절감 활동 | 용수 절감 활동 | 원부자재 순환성 향상 |
| | 환경오염 저감 활동 | 기후변화 완화 활동 | 환경 관련 인증 |
| | 지속가능패키지(포장) | 생물 다양성 보호 | 환경 법규 준수 |
| 사회 (28) | 사회 관련 정책 수립 | 사회 관련 인증 | 취업규칙 적용 |
| | 표준근로계약서 적용 | 채용수수료 부담금지 | 아동노동 금지 |
| | 강제노동 금지 | 노사 상생문화 조성 | 임직원 역량개발 |
| | 고용상 차별 금지 | 차별금지 및 모니터링 | 여성 임원 보유 |
| |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 신고자 보호 및 권리 보장 |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
| | 동반성장 | 공급망 관리 | 휴게시설 제공 및 위생관리 |
| | 사업장 안전 관리 | 임직원 건강 관리 | 산업재해 발생 내역 |
| | 비상상황 대응 체계 구축 | 제품 안전 및 품질 관리 | 제품·서비스 안전정보 제공 및 사후관리 |
| | 책임있는 원부자재 관리 | 데이터 및 정보 보안 | 개인정보 보호 |
| | 사회 법규 준수 | | |
| 지배구조 (11) | 윤리경영 정책 | 윤리경영 인증 | 준법경영시스템 구축 |
| | 법규준수 및 위험관리 | 하도급업체와 공정계약 이행 | ESG KPI 설정 |
| | ESG 정보 공개 | 경영진의 ESG 역량 개발 | 정기적인 이사회 운영 |
| | 주주 권리 참여 보장 | 윤리법규 준수 | |

Part

3

ESG 자가진단 지표설명



1. 환경(E) 영역

2. 사회(S) 영역

3. 지배구조(G) 영역



E01 환경 목표 수립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환경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목표란 에너지 사용량 절감,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축 등 기업의 사업활동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저감하는 목표를 의미합니다. 환경목표는 환경 요인 별로 달성 기한과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포함합니다. 세부적인 실행 계획은 환경 요인 별로 연간 목표 달성 수단을 먼저 파악한 뒤, 공정 설비 교체, 포장재 재사용 등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하며, 이를 문서화하여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가속화로 인하여 기업의 환경영향에 대한 각종 규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벌금, 소송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 실사는 협력관계에 있는 모든 기업의 환경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환경 KPI(핵심성과지표)를 수립함으로써, 환경 규제 준수 및 환경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목표 달성과정에서 에너지 소비 저감이나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통해 기업의 비용 절감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솔루션

- STEP 1**

대내외 환경 분석

-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원과 인허가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 에너지 사용량은 산업에 관계없이 관리해야 하며, 제조설비가 있는 경우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등 환경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 STEP 2**

목표 및 세부계획 수립

환경오염원

 - 대기: 먼지, 황산화물 등
 - 수질: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총 유기탄소(TOC), 부유물질(SS) 등
 - 폐기물: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 환경분석을 통해 기업에 중요한 환경데이터를 선정하면 주요 환경오염원에 대한 감축 등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 이때, 국내외 고객사의 환경목표를 참고할 수 있으며 고객사의 요청 등을 반영해 중요한 환경항목별로 수치화 된 목표를 수립합니다.
 - 목표는 중기·장기·단기로 구분되면 더욱 좋습니다.
- STEP 3**

문서화 및 정기적인 점검

- 수립한 환경 목표와 세부계획은 문서화하여 모든 임직원들이 해당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A사 |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세부계획 수립

- 2030년 까지의 중장기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정량 성과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플라스틱 포장재의 최소화, 재활용, 재사용, 퇴비화 제고를 위하여 재활용 소재 함량이 30% 이상인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하고 리필 제품 및 서비스를 확장하였습니다.

| G사 | 환경경영을 위한 목표 설정

- G사는 기후위험*과 기회를 파악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목표 설정하였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Scope 1, 2에 대하여 절대량 기준으로 2025년까지 10%, 2040년까지 25% 감축을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 기후위험이란 정책 당국 및 기업 경영진 등이 의사결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태풍·폭염, 산불, 해수면 상승, 물 부족 등 기상 이변에 따른 물리적 피해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규제, 소비 성향의 변화, 보유 자산의 손상 등 정책·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표] 환경 목표 및 세부 계획 공개 예시

| | | | |
|-----------------|---|--|--|
| 환경경영 전략 | 2050 탄소중립을 통해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고 환경경영 조직과 프로세스 정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 | | |
| 비전 | 지구에 불필요한 영향을 최소화하며, 함께 만들어 가는 녹색 기업 | | |
| 목표 | 2050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 | |
| 전략 | 저탄소 혁신 및 환경경영 기반 강화 | | |
| 차년도 실행계획 | 오염물질 저감 | 온실가스 감축 | 녹색 경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염물질 배출 총량 전년 대비 10% 감축 폐기물 재활용 비율 20% 증대 노후 생산 설비 교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사용량 최적화 및 절감 고효율 생산설비 도입 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 10% 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환경보호 프로그램 운영 국제 인증 규격 친환경 제품 개발 |

* 환경 목표 및 계획 요건

1. 목표 설정: 1, 3, 5, 10년 등 장단기 달성기간에 따른 정량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2. 세부 실행계획: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 |
|-----------|--|
| 참고 | GRI G4 Standards • NORMAPME User Guide for European SMEs on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 RBA Code of Conduct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 Drive Sustainability • Responsible Care • ResponsibleSteel • Sustainable Shipping Initiative • Sustainable Apparel Coalition |
|-----------|--|

E02 환경성과 점검 및 관리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환경 목표 대비 달성률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성과는 환경개선 및 오염방지 등 기업이 설정한 목표에 대하여 실제 이행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환경성과 점검을 위해서는 목표 대비 달성 수준을 점검할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체계는 그 외에도 IT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이란 각종 환경데이터를 기간별로 확인하고 이를 정리하고 목표와 비교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목표와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환경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목표 대비 성과가 좋은 분야에 대한 불필요한 투자를 최소화하고 미진한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등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솔루션

- STEP 1**
관리체계 구축

- 환경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담당자 또는 담당조직을 지정합니다.
 - 담당자는 설정한 환경목표에 대한 실적을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관련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 성과관리 체계는 초기부터 무리하게 적용하기보다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STEP 2**
목표 달성 여부 점검

- 환경목표 및 세부 추진 계획 대비 성과를 최소 연 1회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 목표 대비 달성 수준을 점검하여 성과가 우수한 항목에 대한 불필요한 투자는 줄이고, 성과가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현실성 있는 목표 달성 전략을 점검합니다.
 - 특히, 처음 도입하는 기업은 목표 달성 가능성 여부를 더욱 자주 점검하여 기대 수준과 실제 수준과의 차이를 파악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 STEP 3**
향후 대책 마련

- 환경성과 달성률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실행 계획 단계의 부족한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고 차년도에는 달성 가능한 환경 목표를 수립하도록 합니다.

환경성과 달성률

- 설정한 목표 대비 실제 수준
- $\text{달성률}(\%) = \frac{\text{측정된 실제 데이터}}{\text{설정된 환경 목표 데이터}} \times 100(\%)$

| C사 | 연도별 실적 및 달성 목표 설정

- ◎ C사는 전년도 환경성과를 공개하고 향후 3개년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 환경 목표를 핵심성과지표(KPIs)로 설정하여 매년 달성수준을 관리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환경영역 핵심성과지표(KPIs)>

| 분류 | 범주 | 안전보건목표 | 성과지표 (KPI) | 실적 | | | |
|-----------|----------------|---------------|------------|------|------|------|------|
| | | | | 2022 | 2023 | 2024 | 2025 |
| E (환경) | 에너지 사용 감소 관리 | 사용량 감축 | 감축률(%) | 1.3% | 1.0% | 1.0% | 1.0% |
| |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관리 | Scope1 배출량 감축 | 감축률(%) | 18% | 20% | 22% | 24% |
| |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관리 | Scope2 배출량 감축 | 감축률(%) | 15% | 17% | 19% | 21% |
| | 물 사용 및 수자원관리 | 사용량 감축 | 감축률(%) | 0.7% | 0.5% | 0.5% | 0.5% |
| | 대기오염물질 관리 | 배출량 감축 | 감축률(%) | 1.0% | 1.0% | 1.0% | 1.0% |
| |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 배출량 감축 | 감축률(%) | 1.2% | 1.0% | 1.0% | 1.0% |
| | 화학물질 관리 | 화학물질 관리 | 누락 건수 | 0 | 0 | 0 | 0 |
| | 지역오염 방지 | 비상사태 대응 훈련 | 실행 횟수 | 1 | 1 | 1 | 1 |
| |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사고 | 환경사고 관리 | 사고 건수 | 0 | 0 | 0 | 0 |

출처: C사 홈페이지

[참고] 환경성과지표 예시

- ◎ 성과지표를 참고하여 환경영역 핵심성과지표와 중단기 목표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 규제 | 구분 | 내용 |
|--------|------|--|
| 온실가스 | 성과지표 | •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 2) |
| 대기오염물질 | 성과지표 |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SOx, NOx, 총 먼지의 합) |
| 용수 | 성과지표 | • 용수 사용량(상수, 지하수, 하천수, 호소수, 해수 사용량의 합) |
| 폐기물 | 성과지표 | • 폐기물 처분량(지정, 일반, 건설 폐기물의 합) |

출처: 환경부, 환경성 평가체계 가이드라인(2022)

참고 환경부, 환경성 평가체계 가이드라인 · ISO 26000 · GRI G4 Standards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 Drive Sustainability · PSCI · Responsible Care · Responsible Beauty Initiative · Sustainable Apparel Coalition

E03 온실가스 배출 관리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온실가스 관리 정책을 보유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은 제품의 생산 및 유통, 폐기 등 사업 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를 연소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기업은 에너지 절감 캠페인 등 일상의 에너지 절약 활동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향하고 추진해야 하는 사항을 정책·규정·지침서의 형태로 문서화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관리정책은 온실가스 에너지 (i) 관리 계획과 (ii) 관리 실적의 점검 및 평가의 방법, (iii) 교육 및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외 규제 강화로 글로벌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장기적이고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주요한 관리 사안입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체와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도입하여, EU 역외 수입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부과할 예정으로 협력사들은 규제 준수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p><small>*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5만tCO₂eq, 200TJ 이상 업체, 1.5만tCO₂eq, 80TJ 이상 사업장</small></p> |
| 솔루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EP 1 배출량 측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원과 배출유형에 따라 각 사용량 및 배출량을 정량화합니다. 본사 및 사업장 배출량 데이터를 합산 관리하며, 제조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사무실의 전기사용량 등을 확인 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 합니다. <div style="background-color: #9e9e9e;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종류: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삼불화질소 배출유형: 사업장 직접 소유·관리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한 직접 배출(Scope 1) 구매 전력, 열, 스팀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Scope 2), 기타 간접 배출(Scope 3) </div>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EP 2 관리 매뉴얼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규정 수립과 담당 조직·담당자를 지정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전략 및 방안 수립하여 관리절차·정책 등을 문서화합니다. <div style="background-color: #9e9e9e;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매뉴얼 내용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량, 실제 감축량을 주기적으로 측정·기록·보관 관리 매뉴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량, 실제 감축량 공개 </div>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EP 3 감축 활동 및 정기적인 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성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이행하는지 월간·분기·연간 등 점검 주기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div style="background-color: #9e9e9e;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온실가스 감축 활동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고효율 설비 교체, LED 교체, 재활용 원자재 사용 법인차량을 전기·수소차 전환, 나무심기 등 캠페인 등 </div> |

II사 | 온실가스 저감 개선 활동

- 그린리모델링 통한 건물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사무실 실내환경 개선으로 임직원의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사무실 이외에 제조 공장의 무전극 삼파장 램프 교체, 보일러 교체, 펌프 타이머 설치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IT사 | 사업용 차량 교체 및 전력 사용 절감

-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지원사업으로 사업용 차량 100% 전기차 전환하거나, 제조공장 지붕 태양광 발전, PPA(Power Purchased Agreement: 전력거래계약) 도입으로 석탄 기반 연료 사용 대신 재생에너지 소비량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IK사 | 탄소중립 달성 목표 및 이행방안 수립

- 내부 데이터 관리의 경우에도 본사와 여러 지역에 소재한 제조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관리해야 하며, 배출량 집약도 및 매출 단위당 배출량을 산출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 있는 경우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1, 2, 3) 현황, 2040년(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및 이행방안 등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공개 예시

| 온실가스 배출량 | 2023 | | | 2022 | 2021 | 배출량 집약도 | 2023 | 2022 | 2021 |
|------------------------------|---------------|------|-------|------|------|---|------|------|------|
| 단위: tCO ₂ eq | A본사 B사업장 C사업장 | | | ... | ... | 단위: tCO ₂ eq / TJ | 17 | 18 | 19 |
| 직접배출(Scope 1) | 10 | 200 | 250 | ... | ... | * 배출량 집약도(tCO ₂ eq / TJ)는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 2)을 총 에너지소비량으로 나눈 값으로, 탄소함유량이 높은 에너지원의 소비 비중이 높을 수록 집약도가 높음. | | | |
| CO ₂ | ... | ... | ... | ... | ... | | | | |
| CH ₄ | ... | ... | ... | ... | ... | | | | |
| N ₂ O | ... | ... | ... | ... | ... | | | | |
| HFCs | ... | ... | ... | ... | ... | | | | |
| PFCs | ... | ... | ... | ... | ... | | | | |
| 원단위 배출량 | 2023 | | | 2022 | 2021 | * 원단위 배출량은 기업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배출량을 부가가치 단위(연결회계 기준 매출액)로 나눈 값 | | | |
| 단위: tCO ₂ eq / 억원 | 17 | 18 | 19 | | | | | | |
| 간접배출(Scope 2) | 20 | 2000 | 27000 | ... | ... | | | | |
| CO ₂ | ... | ... | ... | ... | ... | | | | |
| CH ₄ | ... | ... | ... | ... | ... | | | | |

* 배출량 측정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한 범위 · 환산 기준 등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 · GHG Protocol · ISO26000 · GRI G4 Standard · WBCSD/WRI Technical Guidance for Calculating Scope 3 Emissions(version 1.0) · 2006 IPCC Guidelines _Volume 2_chapter 3 Mobile Combustion

E04 에너지 사용량 관리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에너지 사용량 관리 정책을 보유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사용량 관리란 기업 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연료, 열 및 전기 등)를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한 경우 3년간의 원단위 전력사용량을 입력해야 합니다. 제조시설 없이 사무실만 임차하여 전력사용량 관리가 어려운 기업은 자가진단에서 응답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력사용량 관리는 필요합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은 주로 석탄 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사용량 관리 조치들은 환경 피해를 줄이고 기후 변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산업은 기후 관련 규제, 에너지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에너지와 관련된 리스크가 발생할 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에너지 사용 효율이 기업의 비용과 직결되므로 사전에 에너지 관리를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본 지표에서 요구하는 최근 3개년 전력원단위를 파악하여, 사용량 추이를 관리하고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솔루션

- STEP 1

사용량 측정

- 기업의 에너지 사용 용도와 사용량을 측정해 기업 내에서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는 사업장/공정 등을 파악합니다.
 - 에너지 사용량에는 열, 스팀, 전력 사용량이 모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전력사용량이 가장 높으므로 전력에 대한 원단위 사용량을 계산하여 감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이나 설비의 확장에 따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가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에,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을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에너지 사용량 측정 시 참고사항

 - 데이터 수집 범위 예시: 본사 사무실, A공장, B공장
 - 화석 에너지(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태양열, 지열, 풍력)로 구분하여 측정합니다.
 - 월간/분기/연간 등 기준 설정을 통한 주기적인 측정이 중요합니다.

- STEP 2

관리 정책 수립

- 사용량을 바탕으로 에너지를 관리할 전략을 세웁니다.
 - 이때, 담당 조직이나 담당자를 지정하면 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 정책 구성 예시

 - 화석 에너지 사용량 감축 목표량
 -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량
 - 에너지 관리 전략 및 방안

- STEP 3

정기적인 점검

- 에너지 관리 전략을 수행하고, 에너지 사용량, 감축 목표량, 실제 감축량 등의 결과를 주기적으로 측정 및 기록합니다.
 - 에너지 관리 전략에 포함된 목표의 달성률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P사 | 에너지 효율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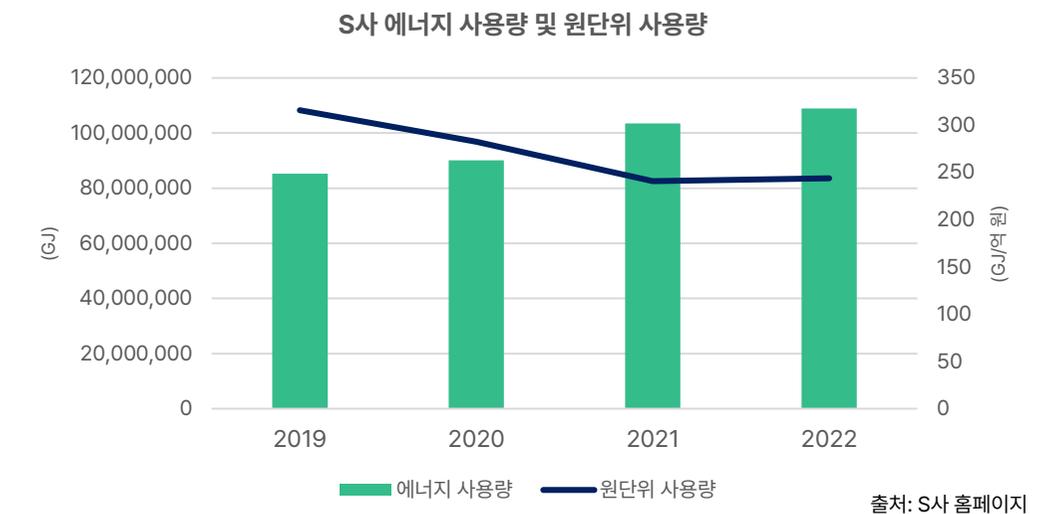
- 철강 기업 P사는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철강 공정에서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철강 공정과 발전소의 연료로 활용하여 제철소 전력의 81.6%(2022년 기준)를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 회수 설비 및 공정 개선, 부생가스 회수 증대에 투자하여 점차 에너지 절감량을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 P사 | 천연소재 에너지 원료 대체

- 원단 염색 기업 P사는 고온의 다림질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합니다.
- 회수된 폐열은 다시 생산 공정에 필요한 온수로 사용되며, 일부는 사업장의 화장실과 샤워장의 온수 공급을 위해 활용됩니다.

[표] 에너지 사용량 정보 공개 예시

|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kWh/백만원) | |
|----------------------|-------------------------------------|
| 2022년 : | _____ kWh(연간 전력사용량)/ _____ 백만원(매출액) |
| 2021년 : | _____ kWh(연간 전력사용량)/ _____ 백만원(매출액) |
| 2020년 : | _____ kWh(연간 전력사용량)/ _____ 백만원(매출액) |



* 기준연도 이후에 설립된 기업의 경우 해당 항목을 '0'으로 기입합니다.
 * 연간 전력사용량은 월간 전력고지서를 통해 연간 전력사용량으로 합산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원단위 사용량의 경우, 연도별 사업보고서 연결회계기준의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참고 '에너지법'제 2조 정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 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 ISO 50001 · Directive (EU) 2023/179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September 2023 on energy efficiency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23/955

E05 폐기물 관리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폐기물 관리 정책을 보유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및 동물의 사체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하며, 식당·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지정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사업장폐기물 중 폐농약, 폐석면, 오니 등 환경이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일반/지정)의 일평균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물 실적을 관리해야 합니다.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폐기까지의 업무 절차 및 관리 정책(지침, 표준, 절차서)를 제정하고, 정책을 통해 적용 범위, 용어 정의, 책임 및 권한, 폐기물 분리수거 및 보관시설, 발생, 수거, 보관 및 처분, 점검, 위탁계약 및 정기적인 점검을 이행합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다음해 2월 말까지 1년간 총 지정·일반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실적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솔루션

- STEP 1**
배출항목 파악 및 배출량 측정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배출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합니다.
 -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올바로시스템**(온라인 방식)에 등록합니다.

올바로시스템 (한국환경공단)

 -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IT 기반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 (<https://www.allbaro.or.kr>)
 - 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는 관할 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제출할 경우에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함.

- STEP 2**
정책 문서화

- 폐기물 배출량을 바탕으로 폐기물 발생의 주요 과정을 파악하고, 어떤 경로로 처리 또는 재활용 되는지 등에 대한 관리 절차를 정책에 명시해야 합니다.
 - 폐기물 감축활동 및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면 좋습니다.
 - 모든 임직원들이 정책 문서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폐기물 감축활동 예시

 -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실천, 제품 제조 및 배송 과정에서의 과대포장 방지,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구매,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 등을 폐기물 감축 활동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STEP 3**
정기적인 점검

- 정책에 작성한 내용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점검 일자와 내용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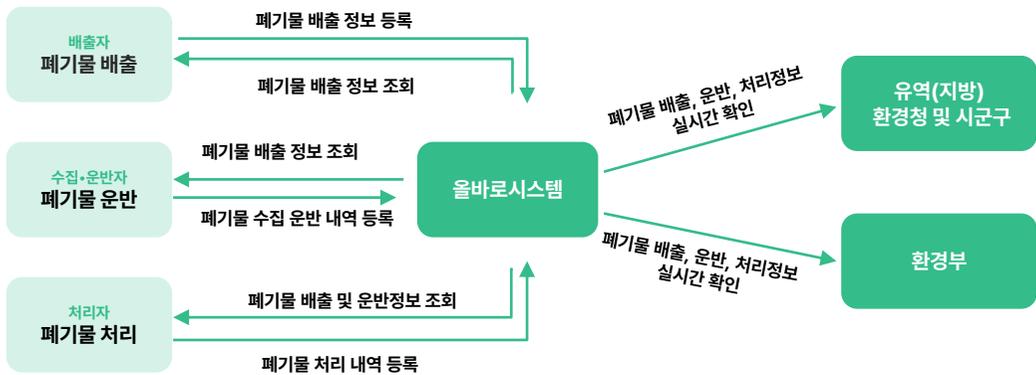
| B사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재생아스콘, 콘크리트 제품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 폐토사를 노상용, 성복토용, 뒷채움재용, 매립시설 복토용에 혼합사용 되었습니다.
- 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를 파분쇄하여 보드류 생산에 활용하거나 파분쇄된 폐목재를 대체 에너지원으로 사용중입니다.

| 참고 | 올바로시스템(<https://www.allbaro.or.kr>)

- 올바로시스템 처음사용자용 가이드 등을 참고하여 등록절차에 맞춰 폐기물 관련 정보를 등록합니다.
-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예약 또는 확정입력해야 합니다. 예약입력의 경우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해야 합니다. 운반자와 처리자도 인수받아 인계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오류 없이 정해진 기한에 맞춰야 합니다.

[그림] 올바로시스템 구조



[표] 폐기물 인허가 담당기관

|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 주요 내용 |
|-----------------------------|---|
| 사업장일반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
| 건설폐기물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수출입 폐기물 |
| 유역환경청 관할 이외 배출·운반·처리 되는 폐기물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 |

[표] 폐기물 관리 관련 참고 법령

| 법령 | 주요 내용 |
|-------------------------------|--|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재활용 시 비산먼지, 악취, 유해물질 배출 최소화, 소음 및 진동 방지 등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여야 함. 특정 유해 폐기물(예: 폐석면, PCBs,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며, 재활용 과정에서의 오염 예방 및 저감 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함.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 재활용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폐기물관리법」 제 18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방법과 과정 제공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함을 명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4의2, 4의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의 종류(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별 세부분류와 분류번호를 제공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와 설명을 제공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재활용 가능한 유형을 제공하며, 사전 분석 및 확인 필요 여부 확인 가능 |

참고

「폐기물관리법」제2조 정의 ·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시행령 별표1 지정폐기물 종류 · 시행규칙 제 20조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 DIRECTIVE 2008/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on waste and repealing certain Directives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폐수 관리 정책을 보유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수란 액체나 고체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합니다. 본 지표에서는 생활폐수가 아닌 공정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에 중점을 둡니다. 수처리 및 폐수 관리는 사용된 물이나 산업폐수를 수질 기준에 맞게 처리하여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 절차와 방지 조치 등을 담은 폐수 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점검은 사업장 폐수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정책에 맞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절한 처리가 되지 않은 폐수는 하천, 지하수 등의 담수오염과 토양오염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폐수는 고도처리를 해야 하는 난분해성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오염물질에 대한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 및 처리가 요구됩니다. 폐수를 적법하게 관리하지 못한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

솔루션

- STEP 1**
배출량 측정

 - 폐수배출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합니다.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기업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의 제외 조건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된 기업은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 없으나 측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폐수 위탁 처리 사업장은 관련 자료에서 위탁량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폐수 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사업장은 유량계 등을 참고하여 측정합니다.
 - 수질오염물질을 직접 방류하는 기업은 주기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여 법적허용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STEP 2**
정책 문서화

 - 측정한 배출량을 바탕으로 수처리 및 폐수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합니다.
 - 폐수가 어떤 경로로 정화되고 처리되는지 등에 대한 폐수 관리 절차, 폐수와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폐수 저감 활동

 - 수질오염물질 저감 기술 도입, 주요 방지시설 설치, 노후 시설 및 공정 개선 등, 폐수 저감 프로그램 계획 등
- STEP 3**
정기적인 점검

 - 매뉴얼에 작성한 내용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점검 일자와 내용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폐수 배출에서 한걸음 나아가 수질오염물질 관리 정책을 세운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폐수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 폐수배출량 산정 방법

-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폐수배출량 산정 방법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공정 중 증발량+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공정 중 발생량

출처: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안내서(환경부)

[표] 폐수배출량에 따른 사업장 분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44조 제2항 별표 13)

- 1년 중 폐수배출량이 가장 많은 날의 폐수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에서 5종으로 분류합니다. 측정된 배출량을 바탕으로 사업장이 몇 종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 분류 | 정의 | 환경기술인 |
|---------|---|--|
| 제 1종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m ³ 이상인 사업장 |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
| 제 2종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m ³ 이상, 2,000m ³ 미만인 사업장 |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
| 제 3종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m ³ 이상, 700m ³ 미만인 사업장 |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이상 수질 직접종사자 |
| 제 4종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50m ³ 이상, 200m ³ 미만인 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용인 중 1인 이상 임명 |
| 제 5종사업장 | 위 제 1종부터 제 4종까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 | |

| 참고 | 수질오염물질

-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할 때에는 오염물질의 양이나 수질의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인 BOD, TOC, SS 등을 측정합니다.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Biochemical Oxygen Demand)는 유기물의 분해에 필요한 산소의 양을 측정하여 유기물 오염의 정도를 나타내고, 총유기탄소(TOC; Total Organic Carbon)는 물 속의 총 유기 탄소량을 측정하여 유기 오염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부유물질량(SS; Suspended Solids)는 물 속에 떠 있는 고형물의 양을 측정하여 물의 탁도나 고형물 오염 정도를 나타내어 수질의 오염도를 대표하는 지표로 적합합니다.

[표]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산정 방법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산정 방법

배출량(kg/yr) = 수처리 후 농도(mg/L) × 폐수방류량(m³/일) × 연간조업일수(일/yr) × 1,000L/m³ × 1kg/1,000,000mg

참고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환경부,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안내서 · ISO 14001/14046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악취 및 소음 관리 정책을 보유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취는 황화수소, 메르캡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합니다.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합니다. 악취 및 소음 관리 정책이란 사업활동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악취 및 소음에 대해 자사에 맞는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정해 놓은 매뉴얼을 문서화한 것을 말하며, 정기적인 점검은 사업활동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악취 또는 소음의 수준을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및 소음은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사의 배출허용기준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다면,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솔루션 | |

- STEP 1

대내외 환경분석

- 악취 또는 소음으로 인한 위험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배출시설 설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자사의 배출허용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STEP 2

정책 문서화

- 파악된 법적 배출허용기준을 바탕으로 기업의 악취 또는 소음 배출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 지침 등을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STEP 3

정기적인 점검

- 정책을 문서화한 후, 사업장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정기적으로 악취 및 소음을 측정하고 방지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 특히, 도심지역에 위치한 건설현장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치가 낮아 악취 및 소음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 「소음·진동 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공장소음·진동의 배출 허용 기준
- 「악취방지법」시행규칙 [별표 3]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

| D사 | 소음·진동 관리

-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의 최소화를 위해 저소음 장비 및 기계 사용, 이동식 에어 방음벽, 소음저감 보양재 설치 등으로 소음을 측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심지에 위치한 사업장에서는 방음벽에 소음 전광판을 설치하여 소음규제 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 공장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A)

| 대상 지역 | 시간대별 | | |
|---|--------------------|---------------------|--------------------|
| | 낮 (06:00-18:00) | 저녁 (18:00-24:00) | 밤 (00:00-06:00) |
|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 보호구역 외의 지역 | 50 이하 | 45 이하 | 40 이하 |
|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취락지구·주거개발 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제외) | 55 이하 | 50 이하 | 45 이하 |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 60 이하 | 55 이하 | 50 이하 |
|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 65 이하 | 60 이하 | 55 이하 |
|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출처: 「소음·진동 관리법」시행규칙

참고

「소음·진동 관리법」·「약취방지법」

지표

- 귀사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정책을 보유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정의

- 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에 따라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하며, 화학물질 중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유해화학물질**이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기업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원칙과 규정을 담은 **정책**을 보유해야 하며 유출 또는 누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해야 합니다.

필요성

-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의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에서 규정하는 취급기준을 지켜야 하며 동법 제2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여야 합니다.

솔루션

- STEP 1**
 적법관리체계 구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적법한 관리를 위하여 취급 기준을 확인하고 국내외 규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국내외 규제 준수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사용 및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취급량 등을 파악합니다.
- STEP 2**
 정량 데이터 측정
 -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배출량 및 사용량 등 데이터를 파악해야 합니다.
 - 배출량 데이터의 경우 각 매체별(대기, 수계, 토양)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화학물질 데이터의 예
 - 화학물질 종류, 사용량, 배출량, 이동량 등
- STEP 3**
 관리 활동 이행
 -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공정을 개선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 및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하고 이행합니다.
 - 기업의 화학물질 배출 저감 활동을 시행하되, 예산·투자 비용 등을 고려하고 생산성 감소, 매출 감소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의 활동을 실행합니다.
- STEP 4**
 정기적인 점검
 - 설정한 화학물질 관리 정책에 기반하여 유출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B사 | 화학물질 관리 체계 구축

- B사는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입고관리-보관관리-취급관리-법적관리의 네 단계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입고관리: 유해화학물질 사전 안전성 평가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등을 수행합니다.
 - 보관관리: 누출 예방을 위한 적정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내부 온습도 관리 및 누출방지를 수행합니다.
 - 취급관리: 교육을 이수한 인원만 사용하며, 폭발 등 비상사태 예방 및 조치 훈련을 주기적으로 수행합니다.
 - 법적관리: 화학 사고 예방 계획서 변경 시, 즉시 업데이트하며 인허가 외 물질 사용 계획 시 사전 검토 및 허가를 진행하고 정기 검사 결과 '적합' 기준으로 시설물을 유지하고 관리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취급자 안전을 위한 안전보호구 구매, 시설 안전을 위한 검사 및 시설 보수, 기타 시설 보완 및 안전 보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 규제 | 내용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제품을 관리하는 법률로, 국내에서 제조, 수입하는 모든 신규물질, 연간 1톤 이상 수입되는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및 심사, 평가와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신고,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 표시기준 준수로 구성됨. • 불이행시, 제조 및 사용을 금지할 뿐 아니라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의 벌금을 부과함. |
| 「화학물질관리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 운영기준 구체화 등의 안전관리 강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하여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고 대비 물질 관리 강화, 화학사고의 발생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 등 화학사고 대비, 대응으로 나누어져 있음. |
|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 Syste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에서 2007년 발효한 유럽연합 내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 관련 제조품에 대해 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 규정임. • 기존 EU 내 40여 개의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통합한 규제로, 모든 주조, 단조, 프레스, 사출, 성형 등 제조품에 대해 해당하며, 제조품에 대한 물질을 명확히 밝혀야 함. |
| 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에서 시행되며 해로운 물질을 사용한 전자제품이나, 전기기기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s Equipment)에서 파생된 규제임. •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프탈레이트, 브롬계 난연제(PBBs, PBDEs) 등 6가지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 | |
|----|--|
| 참고 | 「화학물질관리법」· ISO 26000 · NORMAPME User Guide for European SMEs on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 RBA Code of Conduct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 Drive Sustainability · PSCI · RSPO · Responsible Care · ResponsibleSteel · Sustainable Apparel Coalition |
|----|--|

E09 대기오염물질 관리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대기오염물질 관리 정책을 보유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오염물질은 생물이나 물질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대기 중의 가스·입자 상의 물질입니다. 자연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산업 활동 중에 배출될 수도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란 사업활동 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개선 노력을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 절차와 방지 조치 등을 담은 대기오염물질 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점검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정책에 맞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환경과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산림을 훼손하거나 호흡기를 상하게 하는 등의 피해를 입힙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 등 오염물질 배출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시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

솔루션

- STEP 1

배출량 측정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기록합니다.
 - 배출량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이용하거나 자가측정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 STEP 2

정책 문서화

대기오염물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64개 물질을 말합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서는 그 중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3가지 물질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감축 활동

 - 배출시설별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부식 및 마모 등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을 방지하고 오래 된 방지시설 소모품을 교체하는 등의 노후 시설 및 공정 개선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STEP 3

정기적인 점검

- 임직원들이 정책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정책에 작성한 내용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점검 일자와 내용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표]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산정방법

| 구분 | 세부내용 |
|---------------|--|
| 굴뚝자동측정기기(TMS) | • CleanSYS를 통해 먼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의 사업장별 연간/지역별 배출량 및 실시간 배출농도 확인가능 |
| 실측에 의한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x 배출량(kg) = $\Sigma\{\text{자가측정 농도(ppm)} \times \text{배출가스유량(Sm}^3\text{/hr)} \times \text{연간 가동시간} \times 10^{-6} \times 46 \div 22.4\}$ / 자가측정 횟수 • SOx 배출량(kg) = $\Sigma\{\text{자가측정 농도(ppm)} \times \text{배출가스유량(Sm}^3\text{/hr)} \times \text{연간 가동시간} \times 10^{-6} \times 64 \div 22.4\}$ / 자가측정 횟수 • 먼지 배출량(kg) = $\Sigma\{\text{자가측정 농도(mg/Sm}^3\text{)} \times \text{배출가스유량(Sm}^3\text{/hr)} \times \text{연간 가동시간} \times 10^{-6}\}$ / 자가측정 횟수 |

[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른 사업장 분류(「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 분류 | 정의 | 자가측정횟수 |
|-------|--------------------------------------|---------|
| 1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주 1회이상 |
| 2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월 2회이상 |
| 3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2월 1회이상 |
| 4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 | 반기 1회이상 |
| 5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NOx, SOx 발생량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 25조)
 *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합니다.

| 참고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장이 할당량을 준수할 경우, 배출권 거래를 통해 잔여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사업장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사업장에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며 다음 연도 할당량을 삭감하게 됩니다.
- 관리대상 오염물질 항목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입니다.

| N사 | 대기오염저감 설비시설 설치 및 교체

- 높은 효율로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전기집진기를 설치했습니다.
- 공정 중 발생하는 입자상물질을 포집하기 위해 노후화된 후드 및 덕트를 교체했습니다.
- ICT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한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대기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ISO 14001 · Directive 2010/7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on industrial emissions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절감 활동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활동을 말합니다. 기업의 생산 규모가 축소되거나, 외주 등의 형식으로 기업의 자체 에너지 사용량이 감축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절감 활동은 PC절전, 에어컨 온도 조절 등 별도의 투자가 요구되지 않는 캠페인성 활동과 LED 전구 교체, 법인차량 친환경차 교체 등 별도의 비용 투자가 필요한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캠페인성 활동은 주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거나 간단한 습관의 개선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둔 활동입니다. 비용 투자가 필요한 활동은 주로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가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초기에는 비용이 소요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절감과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은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여 기업 활동의 비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 절감 등의 환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은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통해 유가 상승, 에너지 수급 차질 등 에너지와 관련된 리스크가 발생하여도 보다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솔루션

- STEP 1

사용량 측정

- 기업의 현재 에너지 사용량을 파악합니다.
 - 불필요하게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거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E04 에너지 사용량 관리' 지표의 측정 대상, 방식, 주기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STEP 2

감축 활동 이행

- 기업의 사용량 등 상황을 고려해 가능한 에너지 사용 절감 활동을 실행합니다.
 - 에너지 사용 절감 활동은 크게 공정 등 기업 활동의 주 사업과 관련된 활동과 그 외 실천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기술 및 설비 개발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절약 실천사항을 임직원에게 교육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에너지 절감 활동 예시

 - 캠페인성 활동 : PC절전, 냉난방 온도 적정 수준 유지, 야간 점멸 소등 등
 - 비용 투자가 요구되는 활동 : LED전구 교체, 법인차량 교체(전기차, 수소차), 고효율 에너지설비 교체 등

- STEP 3

결과 기록 및 점검

- 에너지 사용량 측정을 통해 에너지 절감 활동의 성과를 기록하고, 목표에 달성했는지 점검합니다.
 -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활동 계획을 세워 지속적인 에너지 사용 절감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S사 | 에너지 사용량 절감 목표 달성

- S사는 공정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을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저전력 장비를 도입하고 있으며, 기존 방식 대비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을 도입하거나, 장비의 저전력 모드를 개발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폐열 회수, 외기조화기, 냉동기 등 기업의 주요 설비에 AI와 디지털트윈 기술을 도입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방식으로 설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스템을 확장하여 안착하면 최대 45%까지 에너지 사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 S사는 에너지 절감 목표를 2030년 누적 3,000GWh로 설정하고 있으며, 매년 달성 목표를 관리합니다. 2022년도에는 연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사업 개요('23년도 기준)

| 세부사업명 | | 당해연도 동일 투자 사업장단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지원비율 |
|-----------|-----------------|-----------------------|---|--------------------------------|
| ESCO투자사업 | | 300억원 이내 |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 절약시설 설치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300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소요자금의 70% 이내 (중소기업은 90% 이내) |
| | 생산시설 설치사업 | 50억원 이내 | | |
| |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 50억원 이내 | | |
| |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 50억원 이내 | | 소요자금의 90% 이내 |

* 기업은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사업장 당 최대 300억)를 장기저리 융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
|----|--|
| 참고 | 「에너지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ISO 50001 · Directive (EU) 2023/179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September 2023 on energy efficiency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23/955 |
|----|--|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용수 사용을 절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수란 사업장 내 사용되는 모든 물로 수돗물, 지하수, 재이용수 등 취수원이 다양합니다. 용수는 사용처에 따라 제품생산에 사용한 공업용수와 일상생활에 사용된 생활용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용수 절감 활동은 임직원 대상 용수절감 캠페인 등을 통해 용수 사용 절감을 독려하거나 용수를 재이용하는 활동을 일컫습니다. |
| 필요성 |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 패턴 변화와 홍수 및 가뭄 빈도 증가는 용수 확보의 불확실성을 높여 사업장의 기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WRI가 선정한 물 스트레스(Water Stress)가 중간보다 높은(Medium-high) 국가입니다. 이에 따라 용수 절감 활동을 통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솔루션

- STEP 1**
 사용량 측정

-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합니다.
 - 취수원별 수도사용 관련 영수증의 금액 및 사용량을 정리하여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용수를 재사용하는 경우, 재사용량을 측정하여 수자원 이용 효율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STEP 2**
 절감 전략 수립

- 측정한 용수 사용량을 바탕으로 용수 절감 전략을 수립합니다. 담당 조직이나 담당자를 지정하여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용수 절감 활동 예시

 - 수도꼭지를 잘 잠그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물질약 실천
 - 시설 누수 점검
 - 공정 개선을 통한 절약
 - 물질약 관련 직원 교육
 - 빗물 및 한 번 사용한 용수를 처리하여 냉각수 등으로 재사용

- STEP 3**
 정기적인 점검

- 용수 절감 전략을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용수 사용량 변화 및 감축량, 재사용량 등을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 H사 | 물 재사용 설비 구축

- 냉각수 등 한 번 사용 후 버려지는 물을 정수해 보일러나 화장실 등에 재사용하는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 전년 용수사용량 대비 20% 절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물 절약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설비 시스템 개선, 물 사용 프로세스개선, 물 절약 생활실천 교육 및 홍보부문으로 나누어 유기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 S사 | 폐수 및 하수 재사용 설비 구축

- 2030년까지 용수 취수량을 2021년 수준으로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취수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 폐수를 재이용하는 것에 더해 지자체,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하수를 받아와 재이용하면서 자연 취수원에서 취수량을 줄일 예정입니다.
- 이 외에도 노후 설비 교체, 사업장 운영 최적화 등의 일상 저감활동과 제조공정 개선, 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의 구조 개선 활동을 통해 용수 사용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표] 용수사용량 관련 ESRS 공시

| 공시 요구 | 공시 내용 |
|------------|---|
| E3-4 용수사용량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용수사용량(m³) 수자원 리스크가 있는 지역에서의 용수사용량(m³)과 해당 지역 재이용 또는 재사용된 용수량(m³) 저장된 용수량과 저장량 변화(m³) 1~4번 계산에 사용한 가정, 방법론, 데이터 수집 방법 등 원단위 용수사용량(총 용수 사용량/매출액) |

참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Directive 2000/6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00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Community action in the field of water policy • ISO 14001/14046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원부자재 순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부자재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투입되는 모든 원료 및 자재를 의미합니다. 원자재는 최종적으로 제품의 일부가 되는 자재를 말하며, 부자재는 제조과정 중에는 사용되지만 최종 완제품에는 포함되지 않는 보조적인 자재를 말합니다. 원부자재 순환성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생분해성 소재나 재활용 소재 등의 재생원료를 사용하거나 사용한 원부자재를 재이용 또는 재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에 따라 종이, 유리, 철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조업체(PET 1만톤/년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23년 3% → 30년 30%)하고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정책과 규제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기업은 관련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솔루션

- STEP 1

원부자재 파악

 -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부자재 항목을 파악해야 합니다. 더불어, 재생가능 여부에 따라 재생이 가능한 원부자재(담수, 목재, 플라스틱 등), 재생이 불가능한 원부자재(석유, 석탄 등)로 분류합니다.

원부자재 예시

 - 원자재: 광물, 목재와 같이 제품의 생산에 있어 기초 물질로 사용되는 천연 자원
 - 부자재: 기계용 윤활유와 같이 생산공정에 투입되지만 최종 제품에 포함되지 않는 재료
 - 기타 원부자재
 - 광물, 목재 등 이외 모든 형태의 재료 및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반제품 또는 부품
 - 종이, 판지 및 플라스틱을 포함한 포장용 재료

- STEP 2

전략 수립 및 이행

 - 사업장에서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원부자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부자재 순환성 향상 전략과 관리 방안을 수립합니다.

원부자재 순환성 향상 활동 예시

 - 재생원료 사용
 - 생분해성 소재 사용(천연소재, 바이오 플라스틱 등)
 - 재활용 소재 사용(재활용 종이, 재활용 플라스틱 등)
 - 원부자재 재이용 및 재활용
 - 제품 납품 시, 중복 사용이 가능한 팔레트 사용

- STEP 3

정기적인 점검

 - 수립한 전략에 따라 원부자재 사용량, 관리 및 성과를 정기적으로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 H사 | 원자재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구현 노력

- H사는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높이고 제품 폐기 단계에서 재생 가능한 원자재를 활용하고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불용 팔레트와 폐부품을 지속적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 22년 친환경 종이 포장재 적용 비율은 60%였으며, 매년 친환경 포장재 적용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23년은 65%를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 H사 | 폐플라스틱을 수거하여 친환경 섬유 제작

- 플라스틱병에서 뽑은 원사로 만든 친환경 폴리에스터를 이용하여 친환경 섬유를 제조합니다.
- 친환경 섬유 제조 과정은 투병 페트병을 수거하여 이물질을 분리하고 세척한 뒤 품질에 따라 선별을 거치고 섬유 원료의 전 단계인 '플레이크'로 잘게 분해시키게 됩니다.
- 이후 한번 더 선별 과정을 거친 플레이크를 가열, 분해, 합성 과정을 통해 플라스틱 칩을 제조하고 방사기를 거쳐 원사로 만들고 원단 공정 및 염색을 거쳐 친환경 섬유로 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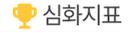
[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생산·유통 단계 자원 순환성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 • 종이, 유리, 철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2023년부터 부과하고, 특히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 •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 내구성 및 수리 용이성, 폐기되었을 때 재사용, 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하도록 지속가능한 설계 적용을 강화 |
| 친환경 소비 촉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다회용기에 원하는 만큼 구매하는 맞춤형 화장품 매장 확산을 유도 |
| 폐자원 재활용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비중을 2020년 0.1%에서 2030년 10%까지 확대 •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바이오가스화 비율을 2030년 52%까지 확대 • 엔진, 변속기 등 자동차 부품, 토너 카트리지, 복사기 등 87개 품목에 한해 재제조를 허용해왔으나, 2022년 부터 모든 제품에 대해 재제조 허용 * 재제조: 사용 후 제품을 분해, 세척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으로 만드는 활동 |

| | |
|----|---|
| 참고 | <p>'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Resource Productivity in the G8 and the OECD • KESG가이드라인 • ISO26000 • GRI G4 Standard • RBA Code of Conduct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 Drive Sustainability • Responsible Care • Responsible Beauty Initiative • Sustainable Apparel Coalition</p> |
|----|---|

E13 환경오염 저감 활동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최근 3년)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오염물질이란 사업활동 및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여 대기, 수질 등의 환경과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합니다. 환경오염물질 저감 활동은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등의 오염원 배출을 통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며, 법적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활동을 말합니다.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투자활동은 본 지표의 활동에서 제외됩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오염 저감 활동은 기업의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확실한 수단입니다.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비용 및 규제 대응 비용을 절감하여 기업의 이윤을 증대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법적 의무 사항을 넘어 환경을 위해 저감 활동을 수행하는 친환경 기업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소비자와 협력사에 심어줄 수 있습니다. 본 지표는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활동의 필요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특정 오염물질의 전반적인 관리 수준을 확인하는 E06 수처리 및 폐수 관리, E09 대기오염물질 관리 등의 관리 문항과 차별점을 가집니다. |

솔루션

- STEP 1

환경오염 파악

 - 기업의 경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거나,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파악합니다.
 -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중 저감이 용이하거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오염물질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06 수처리 및 폐수 관리, E09 대기오염물질 관리 지표의 점검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장 및 기업 활동의 환경 오염을 식별하는 것도 좋습니다.

환경오염물질 종류

-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64개 물질을 말합니다.
-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61개 물질을 말합니다.

- 저감활동 계획 및 실행**

 - 감축할 환경오염물질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활동 방법과 목표 결과 등이 포함된 저감 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 수립한 계획에 맞추어 저감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를 점검하여 후속 계획을 마련합니다.

환경오염 저감 활동 예시

- 오염물질 저배출 대체 원료 사용
- 노후 설비 교체
- 오염물질 저감 기술 개발
- 배출시설별 오염방지시설 설치
- 부식, 마모 등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 여부 확인
- 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여부 확인
- 공정 개선

| A사 | 시멘트 생산 과정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설비 도입

-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인 '선택적촉매환원(SCR)' 설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뿐만 아니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등 오염물질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유럽의 선진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개발한 기업과 기술협약을 맺고 국내 시설에 적합하도록 하는 R&D를 진행 중입니다.
- 약 300억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충북 제천 시멘트 공장에 SCR 설비를 구축하고 시험 운전할 계획입니다.

| P사 |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활동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제강 집진기,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도입 등 약 1조 8,10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3년간('23~'25년) 약 1조 6,000억 원 규모의 환경설비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표] P사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활동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집행실적 ('17~'22년) | 집행계획 ('17~'25년) |
|---------|--|-----------------|-----------------|
| 대기 환경개선 | •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설비 설치 (SCR, SNCR 등) | 6,784억 원 | 9,331억 원 |
| | • 연원료 야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설비 설치 (Silo, 방진망 등) | 2,260억 원 | 9,832억 원 |
| | • 제강지역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집진설비 설치 (건축집진기 등) | 2,382억 원 | 3,910억 원 |
| | • 굴뚝자동측정기기 (TMS), 고로 집진 브리더 설비 설치 등 | 5,238억 원 | 6,808억 원 |
| 수질 환경개선 | • 원료지역 오폐수 처리시설 및 관리 시스템 설치 | 133억 원 | 1,139억 원 |
| | • 폐수처리 정화능력 증대 시설 확장 등 (BET 설비 등) | 716억 원 | 2,369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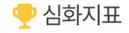
출처: P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참고] 대기·수질 TMS(원격감시시스템) 부착대상

| 구분 | 굴뚝자동측정기기 | 수질자동측정기기 |
|------|---|-------------------------------------|
| 부착대상 | 대기배출시설 1~3종 사업장 중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 부착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총량허가를 득한 사업장의 배출구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의 부착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

| | |
|----|--|
| 참고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물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

E14 기후변화 완화 활동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활동 및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최근 3년)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완화는 기후변화의 속도를 줄이는 활동을 말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거나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완화 활동으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에 투자하거나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연구개발 활동 등이 있습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은 자사 조직경계 외에서 온실가스 저감 사업이나 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또는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확보된 배출권 또는 REC를 시장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발표한 기후 관련 공시기준(S2)은 기업의 일반재무보고서를 통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대응하기 위한 자본적 지출(자금 조달 또는 투자내역)을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FRS를 채택하여 재무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은 공시를 통해 기업의 이해관계자와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솔루션

- STEP 1

투자계획수립

-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기후변화 완화 활동(외부사업,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등)에 대해 분석(경제성 등)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합니다.

- STEP 2

투자 수행

-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통해 감축 인증실적 또는 재생에너지 인증실적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외부사업이란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가 아니더라도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 외부사업 사업자는 외부사업으로 인해 인증 받은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시장에 판매하거나 거래할 수 있습니다.
-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 P사 |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 추진

- 기업은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을 통해 땀감 사용량 및 블랙카본 저감, 조리시간 단축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쿡스토브 사업은 CDM 사업으로, 쿡스토브 보급을 통해 절감된 탄소배출량을 인증 받은 만큼의 국내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S사 | 탄소포집 및 미세먼지 절감 기술 R&D

- S사는 탄소포집 및 미세먼지 절감 기술 R&D 센터를 운영하고 하고 있으며, 공정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에너지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체분리막, 플라즈마 등 적용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S사는 2030년 이후 반도체 제조시설에 탄소포집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S사는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공기 정화 필터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기술을 적용한 시제품을 사업장과 건물 공조시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30년부터 기술 적용 대상을 협력회사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고

IPCC Working Group III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FRS S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E15 환경 관련 인증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경영시스템 또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 관련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영역의 경영시스템 인증은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ISO 20121(이벤트지속가능성경영시스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 14040(전과정평가) 등이 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인증은 환경성적표지, 탄소발자국, 물발자국, 환경마크, 환경성적표지, 저탄소 제품, GR인증, 녹색기술제품 등이 있습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자 기관을 통해 받은 환경분야의 경영시스템 인증 또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은 고객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기업의 환경경영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금융기관의 기술평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평가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솔루션

STEP 1
인증 제도 파악
및 선정

- 기업이 속한 산업과 관련된 인증을 파악하고, 기업의 기회 또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 분야 인증제도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증의 목적

- 경영시스템 인증: 기업이 특정 표준이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인증
- 제품 및 서비스 인증: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특정 표준 또는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인증

STEP 2
취득 및 관리

- 선정한 인증제도에 대한 취득 절차와 요구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 경영시스템 관련 인증은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갱신을 위해서는 최초 인증심사 절차에 준하는 인증 심사가 진행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인증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갱신 인증활동이 완료된 경우 인증을 복구하여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인증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표준협회(www.ksa.or.kr)
 - ISO 인증 경영지원센터(www.iso-certification.kr)
- 지자체별 테크노파크 등의 인증 취득 지원 정책 활용
 - 경기테크노파크 2) 충남테크노파크 3) 경북테크노파크 등

| S사 | 친환경 인증을 통한 해외 판로개척

- S사는 국제 재활용 표준인 TRS(Global Recycled Standard) 인증에 이어 모든 생산 단계 공정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오키텍스(Oeko-Tex)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술 우수성과 녹색성 등을 인정 받아 녹색 기술인증을 취득하였으며, 환경·보건·안전에 관한 섬유 인증인 블루사인 시스템 파트너 가입과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표] 환경관련 시스템 인증 예시

| 인증 | 내용 |
|---------------------------|---|
| ISO14001 (환경경영 시스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경영의 효과적 수행과 환경성과의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 성과 향상, 준수 의무 이행, 환경 목표의 달성 등 기업의 환경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관리방법을 규정합니다. |
| ISO50001 (에너지경영 시스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경영시스템을 수립, 구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 효율 향상 활동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전략으로 구축하여 기업의 에너지 성능을 지속해서 개선해야 합니다. |
| ISO46001 (물 효율 관리 시스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효율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가이드와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물 효율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장비, 시스템, 프로세스, 인력 양성, 문서를 포함한 체계적인 물 관리 시스템을 규정합니다. • 효율적인 물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조직의 물 소비에 대한 투명성, 물 사용의 개선, 최적화된 물 수요 예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표] 환경관련 제품 인증 예시

| 인증 | 내용 |
|--------|--|
| 환경표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용도의 제품 가운데 전 과정에 걸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별해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제품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제품에 부여됩니다. • 동일용도의 제품 중 상위 20~30%의 제품에 인증이 부여됩니다. |
| 환경성적표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채취, 생산,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7개 범주로 계량화하여 산정했을 때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 1) 물발자국, 2) 탄소발자국, 3) 오존층 영향, 4) 부영양화, 5) 자원발자국, 6) 광화학 스모그, 7) 산성비 등 7개의 성적표로 발급합니다. |
| 저탄소 제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 생활용품, 가정용 전기기기 등 모든 제품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고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저탄소 제품 기준' 고시에 적합한 제품에 부여됩니다. • 환경성적표지 7개 범주 중 탄소발자국이 동종업계 평균 이하이거나 이전에 인증할 때 확인된 탄소 배출량 대비 3.3% 이상을 감축한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성적표지 2단계 인증입니다. |

참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ESG경영·평가 대응을 위한 ISO·IEC 국제표준 가이드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 Drive Sustainability · Responsible Care · ResponsibleSteel · Responsible Beauty Initiative · Sustainable Apparel Coalition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지속가능패키지(포장) 관련 활동 내역이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 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재료나 용기를 말합니다. 지속가능패키지는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며 재사용, 다회용기 등 친환경 포장재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장 폐기물의 발생량이 급증하며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기업도 이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U에서는 지난 10년간 포장재 폐기물의 양이 20%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EU는 유럽그린딜 순환경제 실행계획의 하나로 EU의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을 규정으로 강화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법안은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설계 의무, 포장 폐기물 감축 목표량 제시, 재사용 비율 제고를 통한 포장재 감축 등의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

솔루션

- STEP 1

배출항목 및 배출량 측정

 - 기업 활동에서 포장재를 활용, 배출하는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종이, 판지, 플라스틱 등의 포장폐기물 발생량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 친환경 패키지로 전환할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 STEP 2

감축 목표 설정

 - 지속가능 패키지는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포장폐기물을 감축하고, 지속가능패키지를 활용할 목표량을 설정합니다.
 - 이때, 담당 조직이나 담당자를 지정하면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속가능한 패키지 사용 활동 예시

 - 포장 최소화 (포장횟수 최소화 및 맞춤형 적정포장 설계적용 등)
 - 다회용 택배박스 및 다회용기 사용
 - 납품용기 재사용
 - 재활용이 가능한 단일소재 포장재 사용
 - 생분해성 포장재 사용

- STEP 3

감축 활동 이행

 - 목표에 따라 제품 생산 단계부터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 및 성과를 기록합니다.

I C사 | 친환경 포장재 개발

- 3R(Redesign, Recover, Recycle) 정책을 도입해 설계, 원료(생분해 및 재활용 원료 활용) 측면에서 지속가능 패키징 전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지속가능 패키징을 확대 적용하여 925톤의 플라스틱 원료 사용을 절감했습니다.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에 따라 제품 포장재의 재활용 등급을 관리하며, 수분리성 점착제 사용, 라벨 절취선 삽입 등 소비자의 재활용 용이성을 개선했습니다.

I K사 | 그린패키징 실천

- 식품유통사 K사는 포장재로 인한 환경 영향을 절감하기 위해 R&D센터를 설립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아이스팩 포장재를 포함한 모든 포장재를 종이로 변경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했습니다. 더 나아가, 종이 박스 사용을 절감하기 위해 개인용 다회용 포장 용기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 국내 지속가능패키지 관련 주요 법령

| 법령 | 주요 내용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9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법 시행령에 정의된 지정 제품의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1) 포장재질·포장방법 기준 또는 2)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제시 •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 제시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참고 •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기준 제시 및 평가 의무 설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참고 • 포장재 재질 및 구조 기준을 위반한 포장재/제품의 제조, 수입 및 판매에 대한 개선조치를 명하며, 이를 불이행할 시 제조/수입/판매 중단 명령이 내려짐 • 벌칙: 수입 중단명령을 받은 포장재 및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을 정의 • 포장재질 기준 준수 대상: 포장재를 사용하는 전제품 • 포장방법 기준 준수 대상: 화장품류, 300g 이하의 휴대용 전자제품류, 의약품류, 가공식품/음료/주류/제과류/건강기능식품 등의 음료제품류 등 |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제8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중금속 함유량 등 정의 •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포장재 사용량 및 포장횟수 감축 •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

| | |
|-----------|---|
| 참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amending Regulation (EU) 2019/1020 and Directive (EU) 2019/904, and repealing Directive 94/62/EC · ISO 14040/14044 |
|-----------|---|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프로젝트 개발시 생물다양성 영향을 파악하고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물 다양성은 육상, 수상을 포함한 전체 생태계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생물 종 내/종 간 다양성 및 생태계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생물 다양성 보호는 1) 생산 공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연환경 분야의 오염원을 파악하고, 2) 발생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등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 안정성과 생물 자원의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하며,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국제 협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솔루션

STEP 1

생물다양성 영향 및 리스크 확인

- 기업 활동 시행 전 **1) 프로젝트 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2) 산업의 특성** 등을 중심으로 기업 활동이 생물 다양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 1) 한국보호지역 통합DB관리 시스템(<http://www.kdpa.kr/>)에서 국내 보호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 적용 가이드라인(보호지역 유형별 관리 방식 정의) 등을 참고하여 지역별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2) SASB 중대성 평가에 따르면, 생물다양성(생태학적 영향)을 중대 항목으로 다루어야 하는 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개발 산업(석탄, 석유정제, 금속 광업, 태양광 기술 및 프로젝트), 제조업(건설 자재), 건설업, 농축산업(임업, 축산업) 운송업 등

생물 다양성 평가 및 보호지역 설정 예시

- 해당 지역 또는 인근에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경우
- 협력회사 및 원산지를 포함한 공급망이 위치해 있는 경우
- 사업 운영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부정적 영향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경우

STEP 2

생물다양성 보호 활동 계획 및 시행

- 확인된 리스크를 바탕으로 기업 활동 과정에서 생물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생물다양성 보호 활동을 진행합니다.
- 생물다양성 보호 활동의 예시로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 : 사업장 주변 생물 종 모니터링 및 보호, 해양생태계 보호활동, 나무심기, 희귀 종 먹이주기 등 종 보호와 서식지 보전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 하천 정화 활동 등

| P사 | 생물다양성 보호 프로그램 실행

- P사는 기업 전체의 윤리규범 실천지침에 생물다양성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내 비금융권 기업 최초로 생물다양성 재무정보 공개 기준 수립을 위해 출범한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에 가입했습니다.
- P사는 아르헨티나 사업장 인근의 염호 개발에 있어 멸종위기종인 비쿠냐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 정부와의 협업, 염호 근처 동식물 현황 파악 및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K사 | 생물다양성 보호 프로그램 실행

- K사는 꿀벌 개체수 보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그 일환으로 회사 건물 옥상에 도시 양봉장을, 서울식물원 내 Bee-호텔을 조성해 꿀벌의 동지 조성을 돕고 있습니다.
- 강원도 홍천, 창경궁 일대에도 개화시기가 서로 다른 밀원수(꿀벌이 꿀을 수집할 수 있는 나무) 숲을 조성하여 꿀벌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 양봉장과 Bee-호텔이 위치한 꿀벌정원을 중심으로 생태체험 행사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표] 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 | |
|--|---|
| 협약 | 개요 |
|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 적용 가이드라인 | (1994년) 다양한 유형의 보호 지역을 정의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관리 방식을 제안함. 보호 지역은 '학술적 자연보호구역 / 원시야생지역 / 국립공원 / 자연기념물 / 종 및 서식지 관리지역 / 자연경관보전지역 / 자원관리보호지역'으로 구분됨. |
| 생물다양성 협약(CBD) | (1992년) 196개 국가가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 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비준함. 대한민국 또한 협약에 가입했으며, 2022년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 (1973년) 국제거래를 규제하여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으로, 40,900종 이상의 종을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부속서1~3으로 나누어 관리함. |
| 세계 지속가능 발전 기업위원회(WBCSD) | (1995년) 영향력 있는 2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기업 생물다양성 보전 가이드라인, 자연자본에 대한 기업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자연자본 프로토콜과 툴킷 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지침을 제공함. |

| | |
|-----------|---|
| 참고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국제자연보전연맹의 보호지역 카테고리 적용 가이드라인 (IUCN, Guidelines for Applying Protected Area Management Categories) |
|-----------|---|

E18 환경 법규 준수

| | |
|------------|--|
| 지표 | 귀사는 최근 3년 내 환경 법규 위반 내역 이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환경법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그 하위에 개별 환경법의 헌법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그리고 오염분야별 대책법의 성격을 가지는 환경관계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처분, 행정법(과태료), 사법법(고발) 등의 처벌 받은 내역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입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법규를 위반 할 경우, 벌금, 과태료, 행정처분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환경복구 비용 등의 책임 비용, 소송 및 배상 비용 등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평판 손상과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 법규 중 적용 대상이 되는 규제를 파악하고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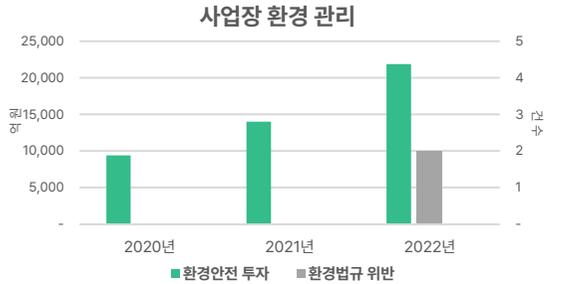
- STEP 1**
적용 규제 파악
 - 다양한 환경 법규 중에서 기업의 경영활동 상에 적용이 되는 법·규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 이 때, 기업이 받은 환경 인허가 내역을 확인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파악한 규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식별해야 합니다. 사전에 법규 위반 가능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야별 환경 인허가

 - 대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등
 - 폐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 악취: 악취배출시설 설치 등
 - 폐기물: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폐기물 수집·운반업·중간처분업 등
 -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 소음·진동: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 STEP 2**
정기적인 점검
 - 법률의 준수 사항을 정리하여 평가표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환경부 등 정부기관에서 배포하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으며 법 개정에 따라 관련 항목 수정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면 시간, 비용 등 장기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STEP 3**
위반 사항 확인 및 개선 조치
 - 내부 점검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 및 개선하여 해당 법규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 제재조치가 진행되었다면 위반 내역을 기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활동 등 사후 조치를 해야 합니다.

| S사 | 환경 법규 위반 내역 공개

- S사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최근 3년간의 환경 법규 위반 건 수와 환경안전 투자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환경법규 위반 사항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 및 개선 조치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단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환경안전 투자 | 억 원 | 9,412 | 13,997 | 21,836 |
| 환경법규 위반 | 건 수 | 0 | 0 | 2 |

[참고]

1. 환경부는 S사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결과 기록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제 1항 위반으로 과태료 3.2백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S사는 위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였으며, 측정값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기적인 교차 측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환경부는 S사에 「대기환경보전법」 제 31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1.6백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S사는 위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였으며 대기방지 시설 점검을 강화하여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S사 홈페이지

[표] 주요 환경 법률

| 법률 | 주요 내용 |
|----------------------------|---|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 완화, 의무고용의 완화, 검사 등의 완화 |
| 「대기환경보전법」 | • 사업장 및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자동차 및 선박 배출가스 규제 등 |
| 「물환경보전법」 | • 점오염원(산업폐수,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비점오염원 배출규제 등 |
| 「석면안전관리법」 | • 건축물 석면 관리, 자연발생 석면의 관리, 석면함유제품 관리 등 |
| 「소음/진동관리법」 | • 공장, 교통 등의 소음 관리, 방음시설의 설치 기준 등 |
| 「악취방지법」 | • 사업장 악취에 대한 규제, 생활 악취 방지, 검사 등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배출량의 보고·검증 및 인증 등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
| 「토양환경보전법」 | • 토양오염의 규제,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
| 「지하수법」 | •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이용,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 등 |
| 「화학물질관리법」 | •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등 |
| 「폐기물관리법」 | •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
| 「환경정책기본법」 | • 환경계획의 수립,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등 |
| 「환경영향평가법」 | •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
| 「환경보전법」 | • 위해성 평가,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 및 관리 등 |

참고 환경부, 환경법령 요약 및 주요 위반 사례집 · 환경부, 환경백서 · EcoVadis Sustainability Assessments · RBA · Responsible Care · ResponsibleSteel · Responsible Beauty Initiative · Sustainable Apparel Coalition

| | |
|------------|--|
| 지표 | • 귀사는 사회부문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 목표 를 수립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 사회정책 목표 는 기업이 근로자인권 보호, 사회공헌, 공급망(소비자) 관리, 정보보안, 산업재해 예방 등과 관련된 사회 책임경영 정책목표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필요성 | • 기업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산업재해, 공급망 위험, 정보보안 사고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사회 관련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
| 솔루션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P 1 비전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대표이사는 비전수립을 통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실천 의지를 내·외부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
| 기업 비전 수립 예시 (H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비전 “혁신과 상생으로 미래에너지 가치를 만들어 가는 기업” • 사회적 책임활동 비전 “사랑과 나눔으로 함께하는 세상을 열어가는 기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P 2 대내외 환경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은 경영활동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회요소와 위험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
| 기회 및 위험 요소 예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내부와 관련된 이슈 : 인권, 근로관행, 지역사회공헌, 공급망, 산업재해 예방 등 •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규제 및 가이드라인 검토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아동권리협약, ILO노동자기본권 선언 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P 3 세부목표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여건에 맞춰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공급망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 관련 세부목표 수립해야 합니다. |
| 세부목표 예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인권 : 인권경영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인권교육 • 사회공헌: 지역봉사활동 등을 통한 사회공헌 • 공급망: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정책 마련 • 산업재해 예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ISO45001 인증 획득 | |

| D사 | 2배 이상의 매출 성장

- ◎ D사는 취약계층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체 임직원의 30%를 일자리 취약계층으로 채용했습니다.
- ◎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1년 216억 규모의 신규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배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경영시스템 또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회 관련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영역의 경영시스템 인증은 ISO 45001(안전보건), SA 8000(윤리사회책임), ISO 26000(사회적책임), ISO 22301(사업연속경영), ISO 9001(품질), ISO 16949(자동차), ISO 20000(IT 서비스), ISO 22000(식품안전), ISO 28001(물류보안), ISO 27001(정보보호) 등이 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인증은 KS인증, KC인증, SQ인증, HACCP, FDA, HALAL 등이 있습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자 기관을 통해 받은 사회분야의 경영시스템 인증 또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은 고객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사회적책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금융기관의 기술평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평가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솔루션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P 1 인증 제도 파악 및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속한 산업과 관련된 인증을 파악하고, 기업의 기회 또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사회 분야 인증제도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P 2 취득 및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한 인증제도에 대한 취득 절차와 요구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경영시스템 관련 인증은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갱신을 위해서는 최초 인증심사 절차에 준하는 인증 심사가 진행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증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갱신 인증활동이 완료된 경우 인증을 복구하여 유지할 수 있습니다. |
| |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분야 경영시스템 인증: ISO 45001(안전보건), SA 8000(윤리사회책임) |
| | <p>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표준협회(www.ksa.or.kr) 2) ISO 인증 경영지원센터(www.iso-certification.kr) 지자체별 테크노파크 등을 통해 인증 취득 지원 정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기테크노파크 2) 충남테크노파크 3) 경북테크노파크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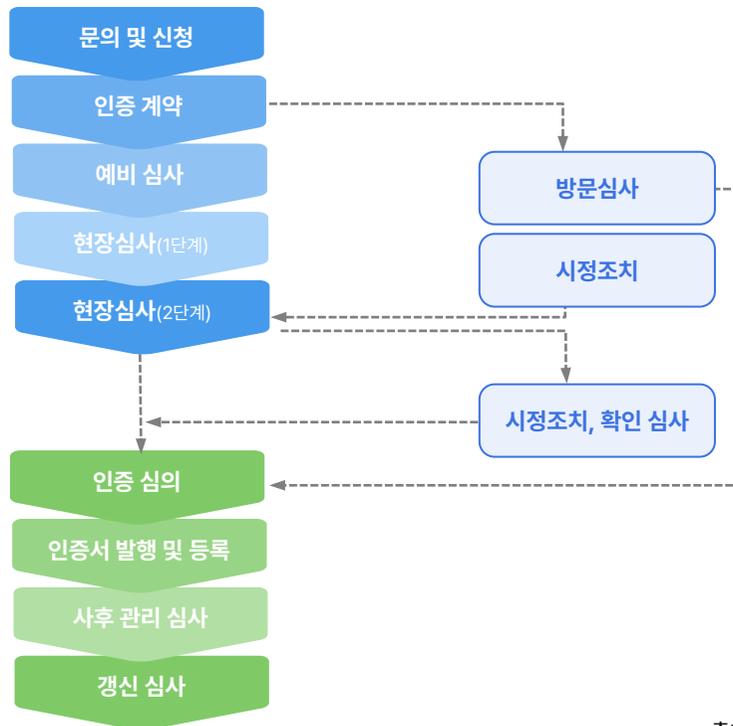
| N사 | 제품 품질 보증 인증

- N사는 화장품 제조사로 전 생산 과정에 걸친 품질보증 인증 ISO9001을 획득하였습니다.
- 또한, 세계적인 비건 인증 기관인 프랑스 이브(EVE, Expertise Vegane Europe)로부터 화장품 생산 설비에 대한 비건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표] 사회 관련 경영시스템 인증 예시

| 인증 | 내용 |
|-----------------------------|--|
|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사전 예측, 예방하여 조직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함. • 근로자의 산업 재해와 건강상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ISO22301 (비즈니스연속성 관리시스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 테러 등으로 인한 비즈니스 중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조직의 방어, 발생 가능성의 감축, 대응 및 복구를 위한 관리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명시함. • 복원력 있는 사회 구축 및 미래 리스크를 식별하고 사전연습을 통해 사고예방과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음. |
| ISO/IEC27001 (정보보호경영시스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이 정보보호경영시스템을 구축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함. • 체계적인 정보보안 및 고객정보 보호로 정보보안사고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음. |

[그림] 인증 취득 프로세스



출처: 한국표준협회

참고 한국표준협회 · ISO경영인증지원센터

S03 취업규칙 적용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문서에 부여된 명칭과 별개로 임금, 휴가, 퇴직 등 근로기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법률상의 취업규칙으로 분류됩니다. 기업은 적절한 취업규칙을 문서화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고, 내부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취업규칙을 적절하게 변경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준법」 제96조에서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 규정이기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취업규칙을 바탕으로 근로자와 기업 사이의 법적인 관계가 확립된다는 점에서 취업규칙의 작성은 기업 운영의 체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

솔루션

- STEP 1

취업규칙 이해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과 그 밖에 기재가 필요한 사항을 파악합니다.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대상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반드시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 밖에 사용자가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됩니다.
- STEP 2

취업규칙 작성 준수 및 신고

- 근로자들에게 교부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상의 제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로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 복무규율,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가장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령 반영하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최저기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 STEP 3

개선 및 관리

- 취업규칙 미흡 및 법령 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관리합니다.
 - 취업규칙 변경시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변경 시 주의사항

 - 취업규칙은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 조합의 동의,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가 필요합니다.

| H사 | 대법원 판례 변경

- H사는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새로운 취업규칙은 기존 취업규칙 대비 휴가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담고 있었습니다.
- 당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었지만, H사는 노동조합이 아닌 간부들을 모아 과반의 동의를 얻었기에 일부 간부들은 H사를 대상으로 해당 조항이 무효이며, 미지급한 휴가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집단적 동의권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임을 지적하며 2심 재판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해당 소송의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으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노조나 근로자들이 동의를 남용*했다고 불만한 근거가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라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집단적 동의권 남용: 취업규칙 변경의 필요성이 명확하고, 사용자의 설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노동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변경을 반대하는 경우

[표] 취업 규칙 필요적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9-1.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9-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참고

「근로기준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Directive 2019/1152 on Transparent and Predictable Working Conditions · ILO Hours of Work (Industry) Convention, 1919 (No. 1)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모든 근로자(비정규직 포함)에 대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근로(정신노동 및 육체노동)를 제공하고, 고용주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체결된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핵심 근로조건이 적힌 문서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 준수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의된 필수사항이 포함된 표준근로계약서가 문서화되어 있어야 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해 모든 근로자에 대해 표준 근로계약서를 적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계약은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약속이므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처리되며,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벌금 부과의 대상이 되므로 근로계약 준수는 필수적입니다.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솔루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10px; padding: 2px 5px; margin-right: 5px;">STEP 1</div> <div> <p>근로계약 이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계약과 관련한 노동관계법령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div> </div> | <div style="background-color: #d9d9d9;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근로계약의 효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에 미치지 못하면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되지만,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면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div>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10px; padding: 2px 5px; margin-right: 5px;">STEP 2</div> <div> <p>근로계약서 작성 및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과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계산방법, 임금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는 필수항목으로 반드시 근로계약에 포함해야 합니다. </div> </div> | <div style="background-color: #d9d9d9;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보관 및 교부의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누어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결정 서류, 고용·해고·퇴직서류, 그 외 중요서류는 근로자가 퇴사하여도 3년간 보관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div>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10px; padding: 2px 5px; margin-right: 5px;">STEP 3</div> <div> <p>개선 및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계약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점검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div> </div> | <div style="background-color: #d9d9d9; padding: 5px;"> <p>근로계약 변경 시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에 불리한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필히 변경해야 변경된 근로계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div> |

[표] 표준 근로계약서

____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무장소: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시 분~ 시 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일주일 중 어떤 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금

- 월(일, 시간)급: _____ 원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상여금: 있음 () _____ 원, 없음 ()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기타급여(제수당 등): 있음 (), 없음 ()

_____ 원, _____ 원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임금지급일: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지급방법: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 후 기재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①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전화:)

주소:

대표자: (서명)

(근로자) 주소:

연락처:

성명: (서명)

출처: 고용노동부

| 사례 | 노동청 기초노동질서 위반 적발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23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천지역의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 준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 그 결과, 165곳 중 70.3%에 해당하는 116곳이 미준수로 적발되었고, 서면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 노동청은 25일의 시정 기한을 부여하였습니다.

| P사 | 근로계약 미준수 공론화

- 제작사인 P사는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로계약 준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재계약 거부 방식으로 해고한 것이 공론화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노동 시간을 정당하게 계산하지 않은 점, 주52시간제를 지키지 않고 최대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서 제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유급 휴가수당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사례 | 기업 이미지 실추

- S사는 2018년 8월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그 후 2개월 사이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7건 확인되었습니다. 위반사항 중 하나는 노동자 2명에 대해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와 교부를 불이행한 것이었습니다.
- Y사는 2018년 8월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2021년 6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위반 사항 내용은 근로자 88명의 근로계약서 임금 구성 항목에 대한 명시 불이행이었습니다.

| A사 | 위반사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처벌

- 경기도 소재 전기업체 A사의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입사한 지 7일 만에 퇴사한 직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대표를 노동청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단기간 근무한 직원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시행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Directive 2019/1152 on Transparent and Predictable Working Conditions·ILO Termination of Employment Convention, 1982 (No. 158)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최근 3년 내에 채용 절차상 발생한 비용(채용심사비, 중개업체 수수료 등)을 근로자가 부담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 절차상 발생한 비용은 구직자가 부담하는 채용서류 제출 비용을 제외한 채용심사 목적의 모든 금전적 비용(채용심사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심사비, 중개업체 수수료 등의 채용심사비용은 비용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구인자인 기업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솔루션 | |

- STEP 1
 관련 법 확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제출비용 이외의 금전적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구직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구인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 승인 신청서』에 ‘채용심사비용 산정 내역서’ 및 ‘채용(예정) 공고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구직자에게 부담을 시켜도 되는지 여부와 그 부담의 범위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따라 아래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① 당해 채용에 있어 채용심사비용의 총 금액 및 그 용도별 내역
- ② 해당 사업장의 특수성이나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의 이익 등을 감안하여 구직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유 및 목적
 - ex) 병원 인턴 또는 레지던트 채용 시 의료 견습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③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구인자가 부담하지 않아야 하는 타당성 및 합리성 유무
- ④ 실제로 구직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과 그 부담 정도(총 금액 대비 부담금액의 비율)
- ⑤ 전형(시험)유형 및 단계
- ⑥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형평성
- ⑦ 기타 구직자가 부담하여야 할 필요성

[그림] 채용심사비용 승인 신청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채용심사비용 승인신청서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사업장명 | | | | |
|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 | |
| | 소재지 | | | | |
| 신청내용 | 채용예정인원 | 명 | 상시근로자수 | 명 | |
| | 채용심사내용 | | | | |
| | 채용심사기간 | | | | |
| | 채용심사비용 | 원 | 구직자 부담금액 | 원 | |

심사비용 청구 사유(구체적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직자의 채용심사비용 부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OO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참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S06 아동노동 금지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아동노동 금지 정책을 문서화하고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동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 최저연령을 15세(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로 명시하고 있어, 15세 미만의 아동은 고용 금지 대상이 됩니다. 아동노동 금지는 미성년자 근로자를 보호하고, 아동노동자와 취약 아동이 발달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시에 감지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노동 금지는 아동의 건강, 기초 교육,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정과 여러 국가의 법률은 아동 보호원칙에 따라 최소연령 이하의 아동노동을 엄금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노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솔루션

- STEP 1

아동노동 금지 이해

- 기업의 경영방침에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에 연소자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절차를 포함시키는 등 아동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합니다.
 - 기업은 직접적인 연관성 관리와 더불어 간접적으로 자회사나 공급망, 해외 법인 등 어느곳에서도 아동노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STEP 2

점검 체계 구축

- 아동노동 금지 및 조치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점검체계를 구축합니다.

아동노동 금지 체크리스트 예시

-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음
- 교육프로그램을 병자하여 고용 금지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음
- 서류를 통해 고용자의 나이를 확인 후 고용하며, 신분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 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함

아동노동 조치 체크리스트 예시

-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을 중지시키기보다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취함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
- 기업은 아동들의 건강, 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작업을 규정한 정책을 수립
- 연소자들이 노동에 적합한 체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건강진단 실시

- STEP 3

정기적인 점검

- 기업은 자회사와 협력업체까지 포함하여 아동노동 금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합니다.

참고

- 아동노동에 관여하는 조직, 업체에서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 기업은 자회사나 협력업체에 대해서 아동노동을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되지 않을 것을 계약서 등의 서류에 포함시켜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 근로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아동이 고용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알게 된 경우 교육기회 제공 등 구제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U사 | 아동친화 경영 실시

- U사는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방침을 세우고, 신입사원 채용 시 연령을 제한(18세)하여 아동노동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 U사는 원료를 공급하는 멕시코 농장의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농장 작업시설을 개선했으며, 사회연금과 자녀 학비지원제도를 시행했습니다.
- 현지 직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아동노동의 근본 원인인 빈곤을 해결하고, 교육 기회 등 아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H사 | 아동노동 적발

- H사의 미국 소재 부품 제조 자회사에서 12세 아동들이 불법 노동을 한 것이 공론화 되었습니다. 결국 H사는 해당 자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또 다른 미국 협력 부품업체에서도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고용되어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협력사는 3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 H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인증사 변경, 1차 협력사 아동 노동 감사 실시 및 결과 공개 등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No. 182(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

| 법령 | 내용 |
|----------------|--|
| 노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매매 및 인신매매, 부채를 기반으로 한 구속 및 농노제, 강제노동(무력 충돌의 강제 동원 포함) 등 모든 형태의 노예 제도 및 그와 유사한 관행 |
| 성적 착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춘, 음란물 제작, 음란물 공연을 위한 아동의 이용, 알선 및 제공 |
| 불법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조약에 정의된 마약의 생산 및 밀매를 위한 아동의 이용 • 국가법에 정의된 절도 등의 기타 범죄 가담 강요 • 조직적 구걸에 동원 |
| 건강, 안전, 도덕적 위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산의 터널 붕괴, 낙석으로 사망 또는 부상, 납과 수은 등 독성 물질 노출로 인한 만성적 건강 피해 등 위험한 환경에서의 작업 • 장시간 같은 자세를 취하거나 작은 공간을 기어다니는 등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 유형 |

참고

「근로기준법」 · ILO Convention No.138 on Minimum Age · ILO Convention No. 182 on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강제노동 금지 정책을 문서화하고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노동기구(ILO)는 강제노동을 불이익의 위협 하에 이루어지거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노동으로 정의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제노동은 근본적인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와 여러 국가의 법률 뿐 아니라 주요 공급망 이니셔티브와 기업들의 공급망 행동 규범에 반드시 포함되는 관리 대상입니다. |

솔루션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EP 1 강제노동 금지 이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경영방침에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기업은 직접적인 연관성 관리와 더불어 간접적으로 자회사나 공급망, 해외법인 등 어느 곳에서도 강제노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div style="background-color: #d9d9d9;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대표적인 강제노동의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제, 채무(부채 상환을 위한 노동) 또는 노예계약에 묶인 근로관계, 비자발적 감금 하 노동, 노예 및 인신매매된 사람을 사용 본인 의사에 반하는 근로, 퇴사의 자유 제한 서면 근로계약서 미체결 및 근로자 본인에게 1부 미교부 </div>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EP 2 점검 체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제노동 금지 및 조치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점검체계를 구축합니다. <div style="background-color: #d9d9d9;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강제노동 예방 체크리스트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는 외국의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인신매매, 채무노동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div>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EP 3 정기적인 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은 자회사와 협력업체까지 포함하여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합니다. 전 근로자 대상 관련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div style="background-color: #d9d9d9;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강제노동 금지 정책 준수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제노동 금지 정책은 직접-간접 고용근로자 모두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협력회사의 강제노동 금지 준수를 점검하기 위한 문서화된 업무절차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내에서 자유로운 퇴사를 보장하며, 고용 종료 시 근로자가 근무한 모든 시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div> |

| 참고 |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관련 이슈

- 2021년 3월 스웨덴 패션브랜드 H사가 신장 위구르 지역 강제노동을 고발하며 해당 지역의 목화 사용을 보이콧(불매운동)하고 연관 기업들과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보이콧은 스포츠웨어 브랜드 N사 등 다른 패션브랜드로 확산되었습니다.
- 2021년 12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 그리고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것으로 식별된 특정 단체의 제품을 미국 내 수입 금지했습니다.
- 대표적으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해당하며, 의류 및 신발 산업뿐만 아니라 태양광, 배터리 산업 및 식품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공급망에 일부라도 신장 위구르 관련 자재나 제품이 포함된다면 수입 금지 및 협력사 거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표] 국가인권위원회 강제노동 금지 관련 체크리스트

강제노동 금지 관련 체크리스트

1. 회사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7조)
2.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채를 안긴 후에 빚을 담보로 한 노역을 실시하지 않는다.
3.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4. 회사는 근로자를 감금하지 않으며, 근무시간 이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한다.
5. 근로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통지 후에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
6. 회사는 인신매매나 채무노역에 관여하는 조직이나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인력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7. 직원들을 묶어둘 의도로 보증금을 예탁하도록 하는 행위, 연장근무를 목적으로 임금지급을 보류하는 행위, 협박이나 강제력을 이용하여 원하지 않는 근무나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행위,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부채를 지게 한 후 이를 빌미로 노동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8. 회사가 수용자의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경우, 그 수용자는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이어야 하며 당국의 감독하에 이용해야 한다.
9. 회사는 근로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각종 신분증 등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10. 회사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여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파기하지 않으며, 짧은 시간이라도 원본을 보관하지 않는다(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1990).
11.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회사나 협력회사에 대해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명시적인 요구란 계약서 등의 서류에 해당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12.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연루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감시란 해당 사안을 전담하여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하고 이에 관련하여 정기적인 조사 보고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헌법」·「근로기준법」· ILO Convention No.29 on Forced Labour · ILO Convention No.105 on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 UN Global Compact ·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노동자의 3대 권리(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를 문서화하여 보장하고 있으며, 관련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결권은 노동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단체에 가입하거나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노동 조건, 노동 협약과 관련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단체행동권은 노동자가 단결력을 기반으로 사용자에 대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쟁의권입니다. 기업은 노동자의 3대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문서화하고, 노사간담회, 노사협의체 등 관련 프로그램을 보유해야 합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자의 3대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해당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에 해당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 및 협약에서도 노동삼권을 노동자의 기본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노동자의 3대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문서로 제정하여 기업 전체에서 시행해야 하며, 관련된 노사 상생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3개월마다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

솔루션

- STEP 1**
노동삼권 이해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 노동삼권 보장의 첫 단계로, 관련 규정을 문서화하고 회사 전체에 공개하여 모든 임직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최신분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관계 법령

 -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STEP 2**
노사 상생문화 프로그램 실행

 - 노동자의 3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노사 상생문화 프로그램 예시

 - 노사 간담회 개최
 - 노사협의회 설치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의무**)
 -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워크숍, 체육행사 등 노사 상생협력을 위한 기타 활동 실천
- STEP 3**
정기적인 점검

 - 협력적이고 상생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적절한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노사갈등 및 분쟁(파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가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 S사 | 노동자 권리 보장 및 교육

- S사는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존중하며, 노동조합 가입, 단체교섭 요구 및 참여, 단결권 행사 등을 이유로 직원에게 보복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 2022년에는 임금, 휴일, 성과 등을 포괄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해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매년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인권 교육에서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에 대해 근로자 개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임원을 대상으로 각 근로자들이 권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고 및 금지 사항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 W사 | 노사 협의 실시

- W사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 노사협의를 실시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피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더 나아가, 임금을 감축하지 않고 정년 퇴직자 전원을 재고용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해외배낭여행 지원, 기숙사 숙소 지원금 지급 등 근로복지를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표] 노동삼권 관련 ILO 규정

| 협약 | 내용 |
|---------------------------------|---|
| ILO 헌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생산 효율성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노사 협력 등을 도모하는 각국의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국제노동기구의 의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No. 8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8년에 채택된 ILO의 8개 핵심 협약 중 하나입니다. • 사용자와 노동자가 자유롭게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해 활동할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No. 9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9년에 채택된 ILO의 8개 핵심 협약 중 하나입니다. • 반노조 차별 행위, 노동자와 사용자 단체 사이의 간섭 행위에 대한 보로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에 채택되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비롯해 직장에서 지켜져야 할 필수적인 가치를 보장하는 정부, 고용주 및 근로자 조직의 약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참고

「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ILO Constitution ·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 ILO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No. 87) ·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No. 98)

| | |
|------------|--|
| 지표 | • 귀사는 임직원 역량 개발 을 위한 활동 내역 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 임직원 역량 개발이란 직원들이 직무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적인 성장과 회사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기술, 지식 및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
| 필요성 | • 임직원 역량 개발 활동은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재 및 미래의 업무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최신 기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직원들은 일상 업무에서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

솔루션

- STEP 1**
임직원 역량 개발 활동 계획

 - 정기적인 직원 평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임직원의 기술적, 전문적 능력의 개선점을 진단합니다.
 - 이 외에도 임직원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나 도움이 될만한 활동을 파악합니다.
 -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의 상황에 맞게 임직원 역량을 향상시킬 방안을 계획합니다.
- STEP 2**
임직원 역량 개발 활동 실행

 - 활동 계획을 바탕으로 역량 개발 활동을 실행합니다.

임직원 역량 개발 활동 예시

 - 멘토링 및 코칭 : 경험이 풍부한 선배 직원들이 멘토가 되어 후배 직원들에게 실무 지식 및 경력 관리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역량 개발 활동입니다.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온라인 교육, 워크샵, 사내 트레이닝 세션을 통해 직원들의 기술적, 전문적 능력을 강화합니다.
 - 교육비 지원 : 대학원이나 기타 교육 연수 시 학비를 지원합니다.
- STEP 3**
활동 내역 작성 및 점검

 - 역량 개발 활동이 계획에 맞춰 잘 실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임직원이 실행한 역량 개발 활동의 진행 과정 및 결과, 1인당 참여 시간 등을 정리하여 활동 내역을 작성합니다.
 - 개발 활동의 효과 및 만족도를 조사해 개선점을 파악하여 다음 계획 시, 반영합니다.

| S사 | 다양한 인재양성 제도 제공

- S사는 국내외 경영학 석사(MBA), 인사 및 재무 석사, 학술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입사 3년차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1~2년 동안 현지 언어와 문화를 익히도록 지원하는 자율관리형 해외연수 프로그램 '지역전문가'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직무 및 리더십 코칭 프로그램을 외부 인증기관의 자격 획득과 연계하여 진행합니다. (ex.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등)
- 본인 직무 관련 교육 외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타 직무 교육과정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경험과 직무 지식을 바탕으로 탁월한 업무 성과를 보여준 임직원을 각 직무별 사내 교수로 위촉하여 지식전파 및 후배양성의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구체적인 현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임직원이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림] S사 인력양성 관련 제도 예시

인재양성

인재양성 체계

| | 내부 양성 | | 외부 양성 | |
|--|---------------------------|-----------------|---------------|----------------|
| | 핵심 분야 | | 핵심 분야 | |
| 운영목표 | Vision, Value, Culture 공유 | 글로벌 핵심 리더 양성 | 직무별 최고 전문가 양성 | MBA 지역전문가 학술연수 |
| 교육과정 | 신규 입사자 입문 교육 | SELF* 모델 기반 리더십 | 직무 전문가 교육 | 사내 기술대학원 |
| Workplace Learning 멘토링, 코칭, OJT(On the Job Training) | | | | |



출처 : S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3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정책 문서화 및 프로그램(교육, 전사 워크샵 등)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상 차별 금지 정책은 기업이 국적, 성별, 장애, 학력, 문화, 종교, 성 소수성 등의 차이에 따라 어떠한 요인에도 차별없이 임직원을 채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상 차별 금지 프로그램은 고용 차별 금지 정책에 따라 차별금지 인식을 확산을 위한 사내교육, 전사 워크샵 등을 의미합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은 고용상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인재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능력과 역량에 기반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 월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미준수할 경우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솔루션 | |

- STEP 1**
정책 문서화

 - 고용 시 국적, 성별, 장애, 학력, 문화, 종교, 성 소수성 등 어떠한 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사내 정책 또는 내부규정에 반영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다양성 관리의 필요성

 -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 저조한 출산율 → 경제활동 인구 감소
 -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 다양한 인종 및 이민자 유입
 -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다문화 가정 증가
- STEP 2**
프로그램 운영

 - 고용 차별금지 인식확산을 위해 차별금지 사내교육, 전사 워크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D사 | 충북 지역 중소기업 성별 다양성 제고 실천

- D사는 중소기업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여성 고용을 확대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 여성 고위관리직 확대를 위하여 여성 경력개발 지원,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 성평등한 기업 문화 조성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내 운영원칙

| 대상 | 내용 |
|-----------------|--|
|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 기업은 최고결정권자의 결정으로 인권경영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선언해야 한다. 기업은 자신의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 고용상의 비차별 | 기업은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
| 결사 및 단체교섭 자유보장 | 기업은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
| 강제노동 금지 |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설사 직접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강제노동으로부터 어떠한 영업적 이득도 얻지 말아야 한다. |
| 아동노동 금지 | 기업은 15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기업은 이들에게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
| 산업안전 보장 |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기업은 자회사나 공급업자 등을 포함한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업은 협력회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않으면 그들과의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 |
| 현지주민 인권보호 | 기업은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기업은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
| 환경권 보장 | 기업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으며,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해야 한다. |
| 소비자인권 보호 |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 | |
|-----------|---|
| 참고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 UN Global Compact 10 Principles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 차별금지 조항을 문서화하고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 및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 내 차별금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내부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별금지 조항을 문서화하고, 임직원 설문조사, 동일 임금 모니터링,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한 차별금지 인식개선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균등한 대우 원칙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ILO에서도 「직장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을 통해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 철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별금지 는 인권 원칙 중 가장 근본적인 원칙 중 하나로, 여러 법률에 의해 보장받고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 솔루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P 1 차별 금지에 대한 이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금지 는 보편적인 인권으로 확립되어 관련 법률이 존재하므로 사전에 검토하여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
| 관계 법령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제 11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P 2 차별 금지 활동 이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임직원의 다양성 데이터(성별, 종교, 국적, 사회적 신분 등)와 직급, 급여 등을 집계해 상관성을 분석합니다. 다양성에 관한 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해 차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
| 차별금지 금지 체크리스트 예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상의 차별금지 ●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P 3 정기적인 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대우를 겪거나 목격하는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채널 운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계자에게 적절한 징계 조치를 이행합니다. |
| 정기적인 점검의 기대 효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금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 고충 수렴 및 피해자 구제를 조기에 직접 다루어 피해 확산을 방지합니다. ● 모니터링 분석을 통해 차별금지 정책 및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합니다. | |

| T사 | 차별 행위 적발

- 중견기업 T사는 고용 과정에서 성별과 연령으로 지원자를 차별하여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
- 창업주는 특정 연령대, 특정 성별을 선호하라는 압력을 가했으며, 특정 학과나 외모 등의 신체 조건으로 채용에 불합리한 영향을 주는 발언을 지속했습니다.
- 그 외에도 업무와 무관한 지시 불이행으로 급여를 삭감하거나, 근로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체중 감량을 요구하는 등 위법 행위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 S사 | 차별금지 정책

- S사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UN 세계인권선언 등의 국제인권규범을 기반으로 동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차별 및 괴롭힘 금지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책임 있는 비즈니스 연합(RBA)에 가입하여 급여, 승진, 교육 등 노동과 고용 관행에서의 차별금지 행동규범을 준수합니다.
- S사는 차별금지에 대한 자체적인 검증과 제3자 점검을 실시하며, 관련된 역량을 강화하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S사 | 차별금지 행동규범

- S사는 인권, 고충처리, 차별금지, 괴롭힘 예방을 다루는 행동규범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인권교육 등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운영하며, 연간 인권 관련 사고 건수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행 중입니다.
- 임직원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소리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충이 접수되면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관리본부장을 주축으로 신속하게 고충처리위원회가 개최되며,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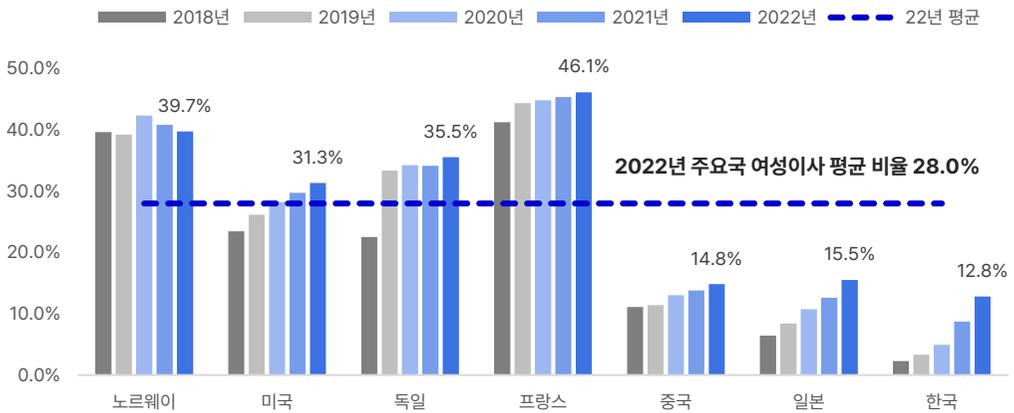
「헌법」·「근로기준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 ILO Convention No.111 on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 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 EU Council Directive 2000/78/EC of 27 November 2000 establishing a general framework for equal treatment in employment and occupation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이사회 내 여성 이사 및 임원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회사는 최소 1명 이상의 사내이사가 존재하며, 기업의 독단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지표에서는 기업이 여성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를 모두 보유할 것을 권장합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기구이며,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사회 의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 이사 선임에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여성 이사를 1인 이상 선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국제적인 요구에 대비하고 조직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원진 및 경영진의 여성 인력 확보, 여성 사외이사 선임, 여성 사내이사 선임 순의 단계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 솔루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EP 1 조직 구성 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이사회 조직의 여성 비율을 점검합니다. 여성 관리자 고용 관련 법률이 적용되는 조직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할 경우,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지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조직이더라도 조직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여성 임원 고용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div style="background-color: #d9d9d9; padding: 5px; margin-top: 10px;">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절에 따라 민간 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이거나, 300인 이상이고 공시 대상인 기업은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 규모별로 정해진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이를 개선할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미만으로 나누어 각 사업이 속한 집단의 1) 전 직종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 평균의 70% 미만(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제외), 2) 여성 관리자의 고용 비율 평균 70% 미만 시 개선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기준에 연속 3회 미달된 사업주의 명단은 관보에 공개됩니다. </div>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EP 2 고용정책 수립 및 실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 다양성을 고려한 여성 이사 및 임원 고용 정책 또는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합니다. <div style="background-color: #d9d9d9; padding: 5px; margin-top: 10px;">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공급망 플랫폼 Sedex는 기업들이 아래의 단계를 따라 성평등을 실현할 것을 권장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의 비즈니스 전략을 검토해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평등 목표를 수립합니다. 주요 성별 지표를 파악하고 수집합니다. 여성 근로자 비율, 임원 비율, 여성과 남성의 평균 임금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성평등 전략을 조정합니다. 특히, 공급업체와 협력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div>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EP 3 정기적인 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 프로세스에서 성 다양성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여성 임원 고용 비율이 만족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 참고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공표

- ◎ 고용노동부는 2023년 5월 지난 3년간 여성 고용 비율이 낮으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이 미비하다고 판단한 43개의 기업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해 공표했습니다.
- ◎ 특히,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된 기업 중 단 두 곳을 제외한 41개(95%) 기업이 여성 관리자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31개사는 여성 관리자를 아예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 상시근로자 1,000인 이하 기업 31개, 1,000인 이상 기업 12개로 구성되었으며, 업종을 기준으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과 중공업이 각각 7개사, 6개사로 가장 많았습니다.
- ◎ 해당하는 기업은 명칭과 주소, 사업주 성명,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 등이 관보 및 누리집에 게시되었습니다.

[그림] 주요국 여성이사 비율 추이(2018-2022년)



출처: MSCI Women on Boards: Progress Report 2022

참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MSCI Women on Boards: Progress Report 2022 · Sedex Driving gender equality through data on global supply chains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고충수렴 채널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충수렴 채널은 크게 두 가지로 ① 임직원을 위한 내부 고충수렴 채널, ② 협력사 및 고객 등을 위한 외부 소통채널을 의미합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은 자사의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고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과 고충, 건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자사 경영활동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
| 솔루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P 1 이해관계자 파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경영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파악합니다. <div data-bbox="415 763 1208 846"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p>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직원, 협력사, 투자자, 고객, 유관기관, 지역사회 등 </div>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P 2 소통채널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내·외부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div data-bbox="415 923 1208 1078"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p>이해관계자 소통채널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직원 : 인트라넷, 사내방송, 기업문화 워크숍, 노사간담회 등 주주 : 주주총회, 투자설명회, 공시 등 고객 : 홈페이지, 설문조사, 고객 불만접수 등 협력사 : 협력사 간담회, 협력사 교육 및 세미나 등 </div>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P 3 경영활동 의견 반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경영활동간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

| I사 | 협력회사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 대기업 D사는 협력회사와 진행하는 상생 박람회 참여하여 수입산 자재를 국산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 I사는 D사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제품 생산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기술지원을 바탕으로 자사의 공정 프로세스를 재수립, 최적의 품질 규격을 설계하였습니다.
- I사는 외산 제품을 대체하는 국내산 제품 개발에 성공하여, D사와 I사 모두 거래규모가 전년 대비 약 300% 증가하였습니다.

[표] S사 내외부 이해관계자 소통채널 공개 예시

| 대상 | 구분 | 내용 |
|-----|-------|---|
| 고객 | 채널 | 홈페이지 및 네이버 포스트, 유튜브, 설문조사, 고객 불만 접수, 윤리경영 신고 채널 |
| | 중대 토픽 | 사업의 혁신과 성장, 윤리경영, 고객행복, 경제 성과,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경영 |
| | 주요활동 | 홈페이지 공지를 통한 회사 현황 공개, 네이버 포스트, 유튜브를 통한 기업 소식 제공, 고객 Complain/Claim, 접수 처리 및 회신, 윤리경영 신고 접수 및 처리 |
| 주주 | 채널 | 주주총회, 실적발표회, 국내외 NDR 및 IR 미팅, 1:1 미팅, 유/무선상 |
| | 중대 토픽 | 업의 혁신과 성장, 경제 성과, 주주 Communication,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리스크 관리 |
| | 주요활동 | 매분기 기관투자자들과 NDR 시행, IR 미팅 상시 진행, 주주 질의/답변 |
| 구성원 | 채널 | 노사협의회(행복협의회), CEO Letter, CEO 행복씨 대화, Mgmt. MBWA |
| | 중대 토픽 | 임직원 소통, 구성원 행복, 현장 구성원 Communication |
| | 주요활동 | 노사협의회(행복협의회) 4회 실시(주요 개선 과제 합의), CEO Town Hall Meeting 5회, 임직원 행복씨 대화 50회 실시, CEO 사업장 현장 방문 |
| 사회 | 채널 | CSR 협력미팅(시/구청 및 협력 복지기관), 사회공헌 활동,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 시민/환경단체 협력 |
| | 중대 토픽 |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경영,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 자연생태계 보호기관 협업, 사회공헌, 사회적기업 협력 |
| | 주요활동 | 지역사회 사회공헌 사업 진행, 스쿨버스 지분투자(3억 원) 및 협력사업 추진, 국립생태원과 협력 |
| 협력사 | 채널 | Withus 온라인시스템, 협력사 간담회, 안전점검 워크숍, 동반성장 정보 제공 |
| | 중대 토픽 | 산업안전보건, 동반성장, 사업 혁신과 성장, 윤리경영, 고객행복 |
| | 주요활동 | 윤리경영 신고채널 운영, SHE 협력사 간담회 및 개선 미팅 등, 사업장 단위 협력사별 간담회(안전점검업체 간담회, 수송기사 간담회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 소식 제공 |

출처: S사 홈페이지

참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S14 신고자 보호 및 권리 보장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신고자 보호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충처리제도는 근로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을 신고하고, 이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노동, 안전보건, 환경, 윤리 부문에 건의함, 설문조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충, 불만,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채널은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충처리제도가 없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자신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불만을 쌓이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생산성 저하, 결근 및 이직 증가, 노동조합 활동 증가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신고자 보호 및 권리 보장이 중요합니다. 신고자가 자신의 고충을 신고할 때, 신분 노출이나 보복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고충을 신고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신고자 보호 및 권리 보장을 통해 신고자가 고충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솔루션

- **STEP 1** 담당자 선정
 - 고충처리 담당자를 선정하고, 제도 운영에 관한 내·외부 교육을 실시합니다.
- **STEP 2** 제도 안내
 -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설명회를 개최하여 고충처리제도에 대한 안내를 실시합니다.
 - 고충 처리 접수 방법과 처리 장소, 설비 등을 점검합니다.
- **STEP 3** 시범 운영 및 보완
 - 고충처리제도를 시범 운영하여 피드백을 받습니다.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제도를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 **STEP 4** 제도 실시
 - 고충처리제도의 공식적인 운영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별지4호 서식) | |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고충처리 요청인 | | 고충내용 | 처리결과 | 회신일자 | 고충처리위원 |
| | | 성명 | 소속부서 | | | | |
| | | | | | | | |

신고자 보호 및 권리 보장 조치

- 신고자 신분을 보호하여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 신고자의 고충 신고를 이유로 정직, 감봉 등의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률적 또는 행정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참고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 **고충처리위원 선임(제26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 및 사업장은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 **노사협의회 설치(제4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 및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하여 근로 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고,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 **고충처리위원 미 선임 시 벌칙(제32조)**
 사용자는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거나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고충의 처리(제28조)**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의 고충사항을 접수하면 10일 이내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고충처리 절차(시행령 제7조)**
 근로자는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위원은 신고 접수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 **대장비치(시행령 제9조)**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 접수 및 그 처리 대장을 작성하고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참조: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 참고 | 고충처리 운용 절차 (예시)



참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기업이 지역사회의 복지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
| 솔루션 | |

- STEP 1**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 지역사회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업의 예산과 인력 등을 감안하여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이슈 예시

 - 코로나19 위기에 의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
 - 농어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 독거노인 등을 위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부족
 - 지역사회 환경파괴 이슈 등
- STEP 2**

사회공헌 프로그램 실행

- 기업은 장학금, 기부금, 도시락 봉사 등 현금 또는 현물로 금전적인 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독거노인 돌봄, 지역사회 환경개선 활동 등의 임직원의 능력과 재능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기업은 미디어,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사회공헌 성과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성과 공개항목으로는 사회공헌 비용(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비용 산출), 임직원 참여율, 프로그램의 효과 등이 있습니다.

| G사 | 마음톡톡 사업

- ◎ G사는 미래의 주역인 아동·청소년의 자아성장과 사회성 향상을 돕기 위해 2013년부터 '마음톡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마음톡톡은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와 회사의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형식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되며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마음톡톡을 통해 보다 양질의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기관과 예술치료사 간의 체계적인 협업 구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S사 |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확산

- ◎ S사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및 적응력 향상, 직무교육을 통한 고용 창출, 전국 발달 장애인 음악축제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2022년에는 국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해외 사업장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D사 | 지역사회 주거환경 개선 지원

- ◎ D사는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2021년에는 지자체와 함께 '우리집 공간 채움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3천만원을 전달하여 저소득층 사회적 주거약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향후에는 단순 기부금 전달이 아닌 지역사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동반성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반성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매 등의 부문에서 공동의 활동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증진시켜 함께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객사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의 참여와 함께, 기술 및 인력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하위 협력업체까지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 뿐만 아니라 협력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반성장은 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긍정적인 협력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협력업체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업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협력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통해 양측이 함께 발전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와 각 지자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비용 지원 뿐만 아니라 공공조달 입찰 시, 가점을 부여 받는 등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솔루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EP 1 고객사 동반성장 활동 참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사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동반성장 또는 협력사 포털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포털을 통하여 관련 정책과 지원 대상 및 절차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div style="background-color: #d9d9d9; padding: 5px; margin-top: 10px;"> 고객사 동반성장 프로그램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 지원: 설비관련 투자비용 지원, 해외현지법인 등 운영자금 지원 등 기술 지원: 신기술 개발 지원, 제조-공정 과정에서 전문 기술 지도 및 이전 등 교육 지원: 전문교육기관 위탁을 통한 온라인 교육, 어학-자격증 등 역량 강화 교육 등 경영 지원: 협력사 보안 강화 지원, ISO-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 컨설팅 지원 등 기타 지원: 쇼핑몰, 자녀 교육 지원 등 복지 서비스 지원 등 </div>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EP 2 협력사 동반성장 활동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는 파트너사, 하위 협력사까지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때, 정부 기관의 동반성장 지원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가점 부여, 우수기업 인증 등을 통하여 시장 내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EP 3 사후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사의 동반성장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얻은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상호 발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 G사 | 파트너사와의 상생 경영

- LED 모듈 및 전기전자부품 제조기업인 G사는 파트너사와의 상생경영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반도체 열전소자 기반의 혁신 기술과 지속적인 R&D투자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사 기술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품질 지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파트너사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회사 내 연구소 시설과 장비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참고 |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지원 프로그램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경제 발전과 기업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기술 이전 및 공동연구 지원, 금융 지원 등 다양한 대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업은 대기업 또는 협력사와 함께 정부기관의 동반성장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시장 경쟁력 강화 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 동반성장 지원 프로그램 예시

| 주관 | 사업명 | 내용 |
|------------------|--------------------|--|
|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설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 • 대기업 혹은 소재 및 부품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소재 부품 국산화를 지원 |
| 한국환경공단 |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 혁신기술 보유 기업과 기술 수요기관 간 매칭으로 녹색기술의 개발·보급 촉진 및 기업의 환경경영 지원 |
| 고용노동부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기업과 정부가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상생협력활동 소요 비용을 매칭 부담 지원 |
|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및 해외 판로 개척 지원 |
| 동반성장위원회 | 협력사 ESG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공급망 조성을 위한 협력 중소기업의 ESG 경영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수출 기업화 촉진 •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한 협력 중소기업의 ESG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ESG 전문 교육 및 컨설팅,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참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경영안내서」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 관련 법규준수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망이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 정보, 자원 등을 조달받거나 제조, 운송 등 협력하는 모든 기업을 말합니다. 공급망은 기업 공동체로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이행합니다. 기업은 원거래사의 행동 규범 또는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환경·사회적 경영에 대한 기업의 '행동 규범'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후 자사 하위 협력회사(파견 도급계약업체, 현장 서비스 제공 업체 등 포함)들에게 '공급망 행동 규범'을 준수하도록 노력을 요구하고, 협력사에 대한 평가·직접 실사·제3자 평가 및 검증 등의 방법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대기업은 공급망 내 모든 협력업체에 대한 노동권, 인권, 건강, 환경 보호 등 협력사 행동 규범(Supplier code of conduct)을 요구하며, 협력사에게 하위 협력회사가 원거래사의 행동 규범 또는 윤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협력회사에 대한 거래 선정과 유지에 있어서 평가 항목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
| 솔루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padding: 2px 5px; margin-right: 5px;">STEP 1</div> <div> <p>정책 및 절차 수립</p> </div> </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거래사의 행동 규범 이행을 위한 규범을 수립하고 하위 협력업체가 해당사항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문서화합니다. 이후, 기업은 협력사와 계약 시, 규범 요건을 포함하여 협력사에게 공식적인 안내를 진행합니다. <div style="background-color: #808080;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안내 시 주요 포함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사 대상: 주요 공급업체에 대한 기준과 정의 협력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회의, 이메일 등 요구하는 행동 규범에 대한 내용 행동 규범에 대한 준수를 점검 및 감독하는 프로세스 </div>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padding: 2px 5px; margin-right: 5px;">STEP 2</div> <div> <p>정기적인 감독 및 통제</p> </div> </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위 협력사의 행동 규범과 법규 준수가 잘 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합니다. 점검 방법은 체크리스트와 현장 방문 보고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점검 결과를 안내하여, 하위 협력사로부터 행동 계획 등 개선 조치를 검증합니다. 공급망 실사를 요구 받는 경우, 다음을 참고하여 실시합니다. <div style="background-color: #808080;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공급망 실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 거래금액, 대체불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실사 대상 협력업체를 선정합니다. 공급망 행동 규범을 바탕으로 실사 항목을 선정합니다. 실사 대상 협력업체에 대해 정기적인 공급망 실사를 수행합니다. 결과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분류하고 거래 종료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공급망 이니셔티브가 있다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div>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50%; padding: 2px 5px; margin-right: 5px;">STEP 3</div> <div> <p>사후 관리</p> </div> </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거래사가 이행한 협력회사 점검 및 평가를 참고하여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원거래사의 ESG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공급망 실사법과 고객사의 ESG 요구 강화

- 2023년 6월 인권 및 환경 이슈에 대한 기업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한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이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적절한 인권과 환경 전략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도덕적 지탄을 넘어, 협력사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공공조달 입찰 배제나 수출 금지 등 행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유럽 회원국의 실사법: 영국 현대판 노예방지법(2015), 프랑스 인권실사의무에 관한 법(2017), OECD '책임있는 기업 행동을 위한 실천지침'(2018), 네덜란드 아동노동 실사법(2019) 등

인권 및 환경기준 예시(부속서 part I, II)

| | |
|-----------|--|
| 인권 | 국제인권협약을 포함한 다양한 근로조건(노동시간, 임금, 근무환경 등) 및 아동노동·권리협약, 강제노동·인신매매 금지, 뇌물 및 부패 방지,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보장 등 |
| 환경 | 대기·토양·삼림·해양·수질 오염, 천연자원 과소비, 폐기물 관리, CITES 협약, 수은 미나마타 협약,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관련 스톡홀름 협약, POPs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등 |

출처: EU의회 지속가능한 실사 지침 부속서

| 참고 | 독일 공급망 실사법

- 2023년 시행된 독일 '공급망 실사법'은 공급망 내 노동자 인권 함양을 위한 정책으로, 적용대상 공급망에 속한 국내 기업은 인권 관련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전략수립 및 내부점검 프로세스 정비가 필요합니다.

| 구분 | 설명 |
|------|--|
|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내 3,000명 이상 고용 기업은 자체 사업장 외 직·간접 공급업체를 비롯한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 관련 사항을 실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문서화를 해야 합니다. • 우리 기업이 독일에 소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의 협력회사라면 간접적으로 이 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
| 실사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관리시스템, 내부 책임 소재, 정기적 위험 분석, 관련 원칙 선언, 예방 조치, 시정 조치, 불만 처리 절차, 간접 공급업체 실사, 문서화 및 보고 등의 체계 |

| H사 | 공급망 진단 · 실사에 따른 개선조치

○ H사는 5단계(사전식별, 서면진단, 현장실사, 개선조치, 이행지원)로 공급망 리스크를 진단하고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위: 개사)

| | 구분 | 업체 수 | 비고 |
|-----------------------|------------------|-------|--------------------------|
| ESG 리스크 서면진단 | 1차 협력사 | 1,680 | 구매 비중 100% |
| | 중점관리 1차 협력사 | 47 | 1차 구매비중 중 65% |
| | 중점관리 2차 협력사 | 24 | |
| 서면진단 기반 고위험 협력사 발굴 | 1차 협력사 | 13 | |
| | 중점관리 1차 협력사 | - | |
| | 중점관리 2차 협력사 | 1 | |
| ESG 리스크 현장실사 | 1차 협력사 | 36 | 서면진단 기반 고위험 협력사 13개 포함 |
| | 중점관리 1차 협력사 | 1 | |
| | 중점관리 2차 협력사 | 2 | |
| 고위험 협력사 개선조치 | 부정적 영향이 발견된 협력사 | 14 | 중점관리 1차·2차 협력사 중 1개 발견 |
| | 합의된 개선계획 수립된 협력사 | 14 | 중점관리 1차·2차 협력사 중 1개 계획수립 |
| | 개선계획 이행완료 협력사 | 14 | 중점관리 1차·2차 협력사 중 1개 이행완료 |

출처 : H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3

[표] H사의 공급망 진단 · 실사 5단계

| 기관 | 사업/문서명 |
|------|--|
| 사전식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상되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리스크 분석 협력사 위치(국가별), 산업별, 납품 제품별 분석 |
| 서면진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시스템(IT)을 통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활용) ESG 리스크 수준에 대한 근거 문서 증빙 |
| 현장실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협력사 방문 현장 상황 확인 및 증빙문서의 진위 여부 검토 |
| 개선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면진단 또는 현장실사에서 발견된 고위험 요소에 대한 즉각적 개선조치 요청 개선 계획 수립 권고 |
| 이행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사가 개선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 컨설팅, 기타 자원 제공 |

출처 : H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3

참고 RBA Code of Conduct · EcoVadis ·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영안내서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근로자 휴식을 위한 시설을 보유하고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휴게시설이란 근로자들이 휴식시간 내에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을 의미하며, 본 지표에서는 화장실, 탕비실 등을 포함합니다. 휴게시설 위생 및 안전 관리란 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느끼지 못하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며, 업무 중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직원들의 집중력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 및 직무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솔루션

- **STEP 1**
휴게시설 제공

 - 근로자에 제공하고 있는 휴게시설을 파악합니다.
 - 휴게시설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이나 요청사항을 수렴하고 새로운 휴게시설 설치나 기존 휴게시설 개선에 반영합니다.
- **STEP 2**
위생 및 안전 관리 시행

 - 제공한 휴게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시행합니다.
 - 담당자를 지정한다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 위생 관리 예시

 - 주기적인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합니다.
 - 청소용품, 휴지 등 위생용품을 충분히 구비합니다.

휴게시설 안전 관리 예시

 - 전기 및 가스 설비 등의 안전 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소를 관리합니다.
 - 손상되어 교체가 필요한 물품(거울 등)을 발견 즉시 처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 **STEP 3**
정기적인 점검

 - 위생 및 안전관리가 적절히 실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점검 담당자, 점검 일자, 점검 내용 및 상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H사 | 예약제 휴게공간 운영

- 소파, 간이 침대, 마사지 기기 등이 구비된 약 4평(12제곱미터) 크기의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사전 예약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어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 가능합니다.
- H사는 예약제 휴게공간 운영 등을 통해 직원 만족도 상승과 업무 효율 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표]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와 과태료 부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등 정리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① 전화상담원, ② 돌봄서비스 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 아파트 경비원, ⑦ 건물 경비원
- 파견 근로자의 경우 사용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주어짐.
 -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21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 크기: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공동휴게시설은 6제곱미터×사업장 개수)
- 위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 20퍼센트 미만 유지
- 온도: 적정온도(18~28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 습도: 적정 습도(50~55%)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
- 조명: 적절한 밝기(100~200럭스)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
- 환기: 창문 등을 통해 환기 가능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구비
- 물이나 식수 설비 구비
-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
-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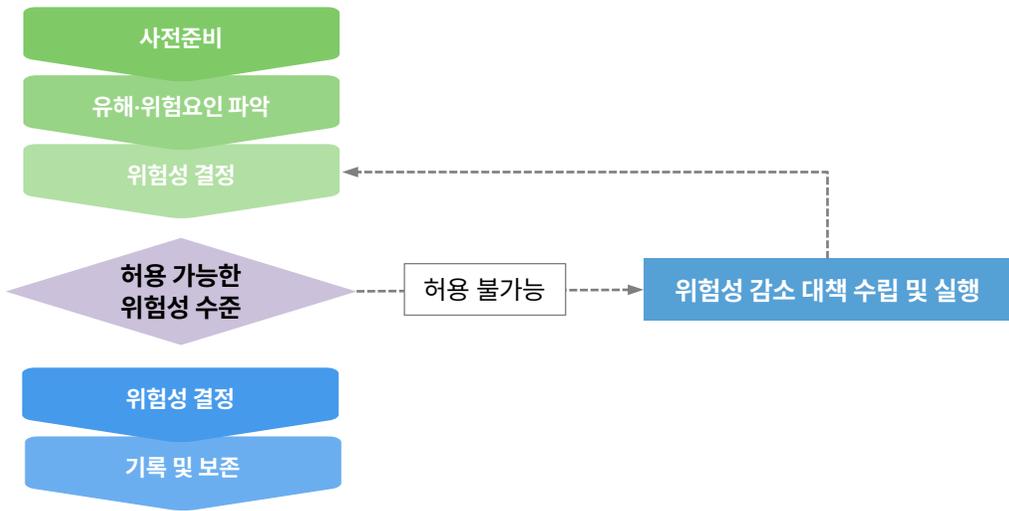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사업장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은 ① 안전보건업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②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③ 정기적으로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여 사업장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고 사전 관리하기 위해 사업장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보상 등 4중 처벌에 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
| 솔루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10px; padding: 2px 5px; display: inline-block;">STEP 1</div> 전담조직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은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장 안전을 관리해야 합니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10px; padding: 2px 5px; display: inline-block;">STEP 2</div> 유해·위험요인 파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재해이력, 현장종사자 의견 청취, 동종업계 사고사례, 전문가 진단 등을 바탕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div style="background-color: #555;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top: 10px;">참고</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위험요인을 지속 확인하여 제거·대체·통제하는 내용의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반기 1회 이상)하며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위험작업은 기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서(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마련하고 이를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10px; padding: 2px 5px; display: inline-block;">STEP 3</div> 정기적인 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은 위험성평가를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장 안전 관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div style="background-color: #555;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top: 10px;">참고</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수시평가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실시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 H사 | 사업장 안전 관리 활동

- 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경영층이 앞장서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다각적인 안전점검 프로그램을 신설 및 안전점검 강화하고 있습니다.
- 2020년 110회 실시한 안전보건점검을 분야별 안전관리 전담제를 통해 총 1,039회로 대폭 확대하여 일반안전 119회, 기술안전 32회, 장비안전 888회 심화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림] 위험성평가 절차



[표]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방법

| 평가 방법 | 주요 특징 | 권장 사업장 |
|---------|---|-----------|
| 3단계 판단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의 정도를 이해하기 쉬움. • 비교적 빠르게 위험의 우선순위 결정이 가능함. • 3단계 구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사전 설명해야 함. | 중·소규모 사업장 |
| 체크리스트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함, 빠른 결정이 가능함. • 신뢰성 및 일관성이 높음. • 소수인원으로 점검 항목의 적정성 확인이 가능함. • 체크리스트 항목 작성에 경험, 지식 등 전문성이 요구됨. | 중·소규모 사업장 |
| 핵심요인기술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견 수렴이 용이함. • 현장의 위험성 파악이 용이함. •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움. | 중·소규모 사업장 |
| 빈도·강도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 • 결정과정의 신뢰도가 높음. • 빈도, 강도 기준을 사전에 결정해야 함. • 위험성평가 절차에 대해 이해 없이 진행하기 어려움. | 모든 사업장 |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임직원 건강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직원 건강 관리 활동은 기업이 직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말합니다. 업무로 인한 건강 피해 뿐만 아니라 업무 외 요인으로 인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진단, 검진, 치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직원 건강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요구되며, 직원들의 건강을 증진시켜 업무 효율성과 연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병가와 장기 결근이 줄어들어 중소기업의 운영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고객사와의 신뢰 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는 안정적인 파트너를 선호하며, 직원 건강 관리가 잘 되는 기업은 일관된 서비스와 제품 품질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솔루션

- STEP 1

건강 관리 프로그램 계획

 - 임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임직원에게 필요한 건강관리의 유형을 파악합니다.
 -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의 상황에 맞게 임직원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계획합니다.

건강 관리 프로그램 예시

 - 일반건강검진 지원(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 특수건강검진 지원(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
 - 심리상담 프로그램
 -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 주기적인 스트레칭 방송
 - 체력 단련 휴가 제공
 - 금연 프로그램(보조금, 상담 등)
 - 운동 비용 지원
- STEP 2

프로그램 시행 및 정기적인 점검

 - 프로그램이 주기적이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 직원별로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기록하고 참여 주기, 만족도, 개선 정도 등을 조사합니다.
 - 특히, 건강검진의 경우 모든 임직원이 주기적(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참고)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일에 휴가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 S사 | 임직원 건강 증진 활동

- 정기건강검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만성질환, 비만, 고혈압, 당뇨 위험군 임직원에 대한 1:1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사내에 피트니스와 수영장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장을 금연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금연 클리닉, 상담, 보조제 등을 지원합니다.
- 상담센터 등을 통한 스트레스 케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고용노동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中 계획 수립 및 지원 혜택 요약

제4조(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

-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증진활동의 목표, 조직구성, 추진내용, 예산 및 장비시설 확보 여부 등이 포함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조치, 근골격계질환 징후 근로자 사후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여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9조(건강증진활동 지원신청)

- ①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서식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신청서를 공단 산하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건강증진활동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 중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건강증진활동 지원혜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주에 대한 지원)

- ① 공단은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주에게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방법 지도, 관련 자료의 제공·교육, 추진계획의 작성·수행·평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공단은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주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상담 등을 지원하거나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공단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처리규칙」에 따른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④ 공단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건강증진활동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표] 근로자 건강진단 관련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中 일반건강진단 관련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사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제198조(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 ①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 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촬영 5. 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 콜레스테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최근 3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내역이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재해란 업무상 발생한 사고나 직업병으로 노동자가 입게 되는 부상이나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말하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사망도 포함합니다.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부주의나 실수, 업무와 관련된 시설물, 원재료, 업무과정 등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업자의 안전대책이나 예방대책이 부실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안전한 작업환경조성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쳐, 치료비,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재해로 인한 생산 중단이나, 이미지 하락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 솔루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EP 1 작업장 위험 진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장 위험 시설·설비 등 작업환경과 작업방식 등에 유해·위험·인적 요인을 탐색하고 파악합니다.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작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위험평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경영방침 또는 산업안전경영시스템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EP 2 작업 방식 개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이 있는 작업장의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기타 작업장에서 신입직원(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현장 단독작업을 제한합니다. 근로자가 위험 상황 인지 시 관리자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div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사고 예방형 작업방식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상기후 시 현장근로자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 제도를 활성화합니다. 일요 휴무제를 시행하고,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구체적인 예외기준을 마련합니다. 위험 신고제를 도입하여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실시간으로 개선을 요구합니다. </div>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EP 3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div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실행 유인 방안 및 감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현장별 맞춤형 안전보건 수칙 준수 교육을 강화합니다. 작업장 출입 전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는 퇴거 조치합니다. </div> |

|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및 근로자 의무사항

◎ 사업주의 의무사항

-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시책 등의 준수, 산업재해발생 보고 의무, 산업재해 기록보존의 의무, 산업안전보건 법령요지 게시 등의 의무, 안전보건표시 부착 의무, 안전보건상 필요 조치 의무,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 및 증진 의무, 안전보건규정 작성 후 게시하고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 사업주의 법률상 책임

-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에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지 않음을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 준수,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이행, 사업주가 제공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 산업재해 발생 보고(산안법 제10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업재해(4일 이상 요양)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①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사항을 보고합니다.

*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산업재해 기록·보존(산안법 제10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업재해 발생 시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③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 사본(재발방지계획 첨부)를 보존해도 됩니다.

◎ 재발방지 계획에 따른 개선활동 이행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의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보유하고 점검·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상황은 화재, 폭발, 붕괴, 유해위험물질 누출, 자연재해 등과 사업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비상상황 대응이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대처하는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이 수립되어 있고 점검 및 훈련을 실시했을 때,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상황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직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상황을 조기에 통제하고 정상 상태로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며, 관련 법규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 법적 책임을 방지하고, 기업의 신뢰성과 긍정적인 평판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

솔루션

- **STEP 1**
비상상황 파악
 - 사업장의 시설 및 주변환경에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의 종류를 파악합니다.
- **STEP 2**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작성
 - 파악한 비상상황의 종류에 맞게 매뉴얼을 작성합니다.
 - 매뉴얼에는 관련된 설비에 대한 관리와 대응 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까지 확장하여 작성합니다.

비상상황 대응 설비 관리

 -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소방시설, 비상구 등이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물품이나 시설의 사용기한이나 고장 여부, 비상구 장애물 유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비상상황 대응 체계

 - 비상연락망을 구축합니다.
 - 비상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업무를 분담합니다.
 - 비상상황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비상탈출경로나 초기 통제 방법 등을 익힙니다.
- **STEP 3**
정기적인 점검 및 대응 훈련
 -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에 맞게 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대응 훈련을 실행해야 합니다.
 - 점검 및 대응 훈련 시 일자와 내용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 C사 |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물류센터 화재

- 이천의 물류센터에서 2018년 발생한 작은 화재에 이어 2021년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 이 화재로 연면적 3만 8천평 규모의 물류센터 건물과 내부 적재물 1,620만개가 사실상 전소되었습니다. C사 2021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재고 손실이 1억 5800만 달러, 유형자산 손실이 1억 2700만 달러로 기록되었습니다.
- 스프링클러, 비상방송 관리가 미흡해 화재 초기에 조치하지 못했으며, 관리자의 상황 파악, 통제, 대피 지시도 명확하지 않았던 점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 대응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었다면 재산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참고 | 업무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 업무연속성 계획이란 자연재해나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전쟁 등 돌발적이고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핵심이 되는 업무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계획과 절차를 말합니다.
- 공급망 안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협력사를 선정하는데 있어 업무연속성 계획의 수립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표] 정부 부처 제공 업무연속성 관리를 위한 가이드(2020년 이후)

| 기관 | 명칭 |
|----------------|-------------------------------------|
| 산업통상자원부 | 감염병 발생 시 기업의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 |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 감염병 발생 대비 사업장 업무연속성계획(BCP) 작성 가이드라인 |
| 고용노동부 | 중소규모 사업장 기능연속성계획(BCP) 수립 가이드 |

[표] 비상상황 대응 설비 관리 유관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참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감염병 발생 시 기업의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감염병 발생 대비 사업장 업무연속성계획(BCP) 작성 가이드라인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기능연속성계획(BCP) 수립 가이드

S23 제품 안전 및 품질 관리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 관리 기준을 매뉴얼화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안전 및 품질 관리 매뉴얼은 제품의 설계와 생산 과정에서 품질과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품의 규격, 성능 등의 기준과 생산공정 관리 기준 등을 문서화한 것을 말합니다. 기업은 설정한 매뉴얼을 기반으로 제품 안전 설계, 안전 및 품질 기준 충족, 위험성 평가 등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는 제품의 사용과 취급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보장된, 안전한 제품의 생산은 기업에 대한 인식, 제품의 판매량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그 기준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솔루션

- STEP 1**

제품 개발 단계

- 제품의 규격, 성능, 사용 물질, 유해물질 함유량, 위험성 등을 법에 제시된 기준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 모든 신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개발 단계의 매뉴얼을 작성하여 준수합니다.

참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제품, 안전확인 대상 제품 등일 경우 법에 정의된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EU REACH** 등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된 규제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구성의 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 STEP 2**

제품 생산 단계

- 제품 생산 및 제조 시 공정의 결함을 낮추고 제품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제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관련 인증을 취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공정 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결함 발생 시 조치사항을 매뉴얼화하여 보관하고, 전 공정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합니다.

참고

 -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고객의 선호에 부합하며, 법률과 규제사항에 적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
- STEP 3**

정기적 점검

- 제품의 개발 단계에서 안전성을 반영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매뉴얼에 명시된 안전 및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지,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개선합니다.

| K사 | 품질관리시스템 및 인증 적용

- 제품의 원료부터 생산, 포장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 제품품질을 보충하기 위해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TS 16949(자동차 산업품질경영시스템), JIS 인증(일본산업규격 인증제도)를 도입했고, 품질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 정기 내부심사를 통해 품질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통합생산관리시스템(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를 통한 품질 검사와 부적합품 관리를 시스템화했습니다.
- 실시간으로 품질 부적합 비용을 산출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불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주요 안전관리 기준

| 구분 | 대상 제품 | 위해 정도 | 개요 |
|-------------------------|-----------------|-------|---|
| 안전인증대상제품 (46품목) |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 상 | 위해성이 높은 제품군인 만큼 제품 출시 전 안전성 시험, 공장확인(제조/검사설비, 원자재/공정검사, 제품검사), 인증서발급 및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
| 안전확인대상제품 (107품목) | 동법 시행규칙 별표 4 | 중상 | 제품 출시 전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고 신고확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102품목) | 동법 시행규칙 별표 5 | 중하 | 자체 또는 제3자 시험기관의 제품 검사를 받은 후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24품목) | 동법 시행규칙 별표 6 | 하 |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가죽, 섬유 등의 품목으로, 사전 평가 및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후규제를 도입합니다. |

참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EU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제품·서비스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하자 발생 시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은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의 특성, 위험성, 성분, 사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품 및 서비스에서 판매 후 하자가 발견될 경우, 리콜, 손실 보상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정보 공개는 정보 부족에서 기인할 수 있는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기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하자가 발생하면 고객의 불만과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법적 의무 준수 및 기업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솔루션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P 1 소비자 사용 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P 2 안전성 점검 단계 | <p>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기본법」 제13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래조건, 방법, 품질, 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제19조(사업자의 책무)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p>제품 결함 시 조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는 판매 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관련 기관에 보고하고 수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시 후 제품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즉시 소비자에게 공지합니다. 그 외에 관련 행정기관에서 제품의 수거, 파기, 교환 등의 조치를 명령한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품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손실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

| K사 | 품질경영체계 인증 획득

- ◎ K사는 품질경영체계 ISO9001 인증을 획득하고, 제품서비스 책임과 관련된 행동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 고객 안전 및 보건 영향 파악을 위해 제품 전과정평가를 실시하고, 고객을 대상의 안전 및 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고객불만 신고처리센터, 설문조사, 불만 및 분쟁 처리 프로세스, 고객정보 통합 관리 등 고객 불만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간 고객 불만 접수 건수 등의 지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 제품 및 서비스 안전성 점검 관련 법령

| 법령 | 내용 |
|---|---|
|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1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제품의 수거 등의 명령 등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제품 수거 등의 권고를 따르지 않거나, 제품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인증 및 신고 후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품 수거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
| 사업자의 제품 수거 등의 의무 등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 제1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 등을 하여야 한다. |
| 벌칙 및 과태료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 제27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제13조 제1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의3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참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품안전기본법」·「소비자기본법」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책임있는 원부자재 정책을 보유하고 원부자재 원산지를 추적관리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있는 원부자재 정책은 원부자재의 조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노동, 강제노동, 인권유린, 환경파괴 등의 부정적인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는 원부자재 조달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부자재 원산지 추적관리란 기업이 생산 또는 가공하는 제품에 조달된 원부자재의 제련소 및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는 원부자재 조달방식을 금지하고 분쟁영향 및 고위험 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윤리적인 노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솔루션

- STEP 1**
 책임있는 원부자재 정책 수립
 - 기업은 먼저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공급망 정책 중 책임있는 원부자재 정책 관련 내용을 파악하여 책임있는 원부자재 정책을 마련하여 문서화합니다.
 - 기업의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광물 및 원부자재를 파악한 후, 해당 광물 및 원부자재의 제련소 및 원산지를 추적하여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특히, 분쟁광물의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문서 기록을 남깁니다.

참고

- 분쟁광물이란,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로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이 있으며, 이는 콩고민주공화국이나 그 인접국가(앙골라, 탄자니아, 우간다, 부룬디, 르완다, 잠비아 등)에서 채굴되는 광물을 말합니다.
- 분쟁광물의 예시
 - 주석: 납땜(솔더), 도금에 주로 사용되며, 대부분의 전자 전기제품 및 부품에 사용됩니다.
 - 탄탈륨: 극한 환경에서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전기전자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 텅스텐: 높은 강도와 융점 때문에 전자, 자동차 및 항공 우주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됩니다.
 - 금: 금은 IT 및 반도체부품, 의료용기기, 도금, PCB 등 에 널리 사용됩니다.

- STEP 3**
 고객사 요구사항 대응
 - 고객사(대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원부자재 관리 현황을 분쟁광물 보고양식(CMRT) 작성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해당 양식은 분쟁광물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관리서류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참고

- CMRT(The 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 RMI(Responsible Mineral Initiative) 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보고서로 광물 원산지와 활용되는 제련소 및 정제소에 관한 공급망을 통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L사 | 책임있는 원부자재 조달 활동

- L사는 책임있는 공급망 내 원재료 구매인식 및 핵심가치를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정책'과 '협력회사 행동규범'에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협력회사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원재료 구매 관련한 모든 정책과 세부 활동은 '분쟁지역 광물의 책임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 가이드선(Due Diligence Guidance)'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매 부문 내 전담 부서를 통해 코발트 공급망의 제3자 기관을 통한 리스크 검증 및 개선 사항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리튬, 니켈, 천연 흑연 등 핵심 원재료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표] RMI 분쟁광물 보고 양식(CMRT) 예시

| 질문 | 답변 | 추가내용 |
|---|-----|------|
| 1) 3TG*가 제품 또는 생산공정에 의도적으로 추가 또는 사용됩니까? | | ... |
| 탄탈륨 | Y/N | ... |
| 주석 | Y/N | ... |
| 금 | Y/N | ... |
| 텅스텐 | Y/N | ... |
| 2) 제품에 3TG 잔여물이 있습니까? | | ... |
| 탄탈륨 | Y/N | ... |
| 주석 | Y/N | ... |
| 금 | Y/N | ... |
| 텅스텐 | Y/N | ... |
| 3) 귀사 공급망의 제련소가 해당국가로부터 3TG를 공급 받습니까? | | ... |
| 탄탈륨 | Y/N | ... |
| 주석 | Y/N | ... |
| 금 | Y/N | ... |
| 텅스텐 | Y/N | ... |
| 4) 귀사의 공급망에 있는 제련소 중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 3TG를 조달하는 제련소가 있습니까? | | ... |
| 탄탈륨 | Y/N | ... |
| 주석 | Y/N | ... |
| 금 | Y/N | ... |
| 텅스텐 | Y/N | ... |

* 3TG: 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

출처: RMI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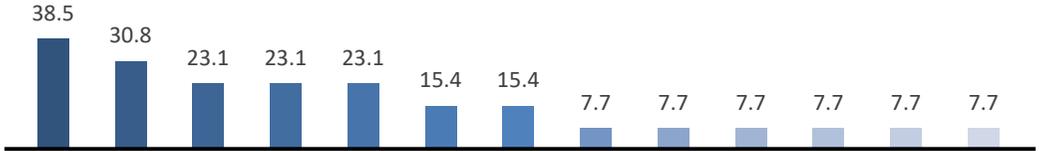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S26 데이터 및 정보 보안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정보 보안 정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는 영업 비밀 및 기술(예: 소스코드, 설계도면, 디자인, 화학식, 레시피 등) 등 중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에는 정보자산의 가치에 따라 인가자 및 비인가자의 접근 권한과 정보 관리 절차, 귀사 및 협력사의 지적재산권 등 관련 법규 준수, 정보 오남용 방지, 정보 유출 방지, 정보시스템의 가용성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보안시스템은 서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치 등 관리적·기술적·물리적 관리 수단을 총칭하며, 웹 방화벽, 스팸메일 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구매정보시스템, 암호화·백업·복구 관리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5년간('16-'20)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기업의 89.1%가 벤처·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지식재산연구원, 2022). 또한, 사이버침해사고의 97%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생했으며, 3년간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은 3,021억 원에 달합니다(중소기업벤처부, 2018). |
| 솔루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P 1 정보자산 식별, 보안 계획 및 정책 ● STEP 2 전문 인력 및 자원 확보 ● STEP 3 정보 위험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는 공공기관 등에서 배포하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기업에 부족한 항목을 도출하고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시행문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제·개정하여 최신화합니다. 지식재산권, 내부 정보보호 및 보안 분야의 전문인력(책임자 및 담당자)을 지정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합니다. 정보의 수집/보관/처리/전송/공유에 있어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기술적·관리적 보안 조치를 이행합니다. |
| | <p>최소한의 보호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법원은 보호조치 노력이 없으면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밀로서 관리된 정보로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i) 접근제한, (ii) 기밀성, (iii) 이력관리 등 최소한의 보호 조치가 요구됩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임직원과 협력사가 정보 자산 보호의 중요성 및 위험을 인지하기 위해 정보 보안 각서를 작성하고, 정기 교육을 통해 의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
| | <p>보안의 종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적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화벽, IPS, 유해사이트 차단, 스팸 차단, 웹보안, VPN, DB 접근 제어 등 다양한 보안 솔루션 적용 가능 관리적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직원 비밀유지서약서, 핵심 개발자 및 임원의 전직 금지 서약서 등 징구 임직원 대상 기술 및 정보보호 및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관련 사내 정기 교육 및 공통 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포, 악성메일대응 모의 훈련 진행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P 4 정기적 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보안 침해 및 사고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여 점검 주기를 설정하여 관리합니다. |

| 참고 | 중소기업의 기술 및 정보 침해 유형 (복수응답, 기술침해 발생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래밍 파일
- 연구노트 데이터 등 관련 정보
- 아이디어 및 제안서
- 설계 도면
- 시제품 및 관련 부품
- 영업정보(고객정보, 거래처 정보 등)
- 회계정보(재료 원가, 급여 등)
- 생산 중인 제품
-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
- 기술도입 및 이전계획
- 개발/판매계획
- 기타
- 유출된 자료 없음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2023),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

| 참고 | 중소기업의 정보유출 주요 경로 및 매체



현 직원에 의한 유출, 14.8%

퇴사자에 의한 유출, 69.3%

| 정보유출 경로 Top 5 (복수응답) | 비중 (%) |
|-----------------------|--------|
| 휴대용 저장장치(USB, 외장하드 등) | 38.6 |
| 핵심인력 스카우트 또는 매수 | 19.3 |
| 복사, 절취 | 18.2 |
| E-mail | 14.8 |
| 스마트폰 카메라 등 사진 자료 | 11.4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2018),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

[참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자가진단 및 지원 사업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 기술보호 자가진단 (<https://www.ultari.go.kr/portal/pmy/levelSelfDiagnosis.do>)
- 중소기업 기술보호 주요 지원사업

| 운영기관 | 사업명 | 지원 내용 | 기업 부담비용 |
|---------------|--------------------------|--|--|
|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침해행정조사 | ·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신고 시 조사팀 파견 | 무료 |
| | 기술자료 유용행위 행정조사 (기술침해조사팀) | · 실태조사 후 기술유용행위 발견 시 조사 · 불공정거래 상담 및 분쟁조정 신고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 시 조사 | 무료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 · 전문가 현장 방문컨설팅 | 무료(3일) |
| | 법무지원단 | · 기술탈취·유출 등의 분쟁 소송 관련 법률자문 지원 | 무료 |
| | 기술분쟁 조정·중재 | · 조정, 중재부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및 지원 | 조정(5만원이내) |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기술지킴서비스 | · 보안 모니터링(관제) 서비스 및 유출방지 프로그램 무료 지원 | · 보안관제: 장비보유시 무료 · 내부정보 유출방지, 악성코드, 랜섬웨어: 각 30개 무료 |
| 기술보증기금 | 기술지킴이 |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해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관, 기술개발 보유사실입증 | · 신규: 30만원/1년(vat 별도) · 갱신: 15만원/1년(vat 별도) * 창업,벤처등 1/3감면 |
| | 증거지킴이 | 기술거래 과정 시 발생하는 각종 자료를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에 보관하여 증거로 활용 | · 신규: 55천원/6개월 · 연장: 33천원/6개월 |

참고 「부정경쟁방지법」·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중소기업벤처기업부(2023), 2023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

지표 • 귀사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정의

- **개인정보**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개인정보 및 가명정보)*를 말합니다. 회사는 홈페이지나, 방문고객,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객과 임직원, 이해관계자의 정보를 수집하게 되기 때문에 관리 정책의 수립과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기본 **정책**에는 (i)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시 처리 목적, 항목 및 보유기간, (ii)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iii)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및 제3자 제공, (iv) 안정성 확보(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v) 수집·이용·제공 및 거부 등에 관한 사항, (vi)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vii) 책임자 및 담당자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개인정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김개인, 32세, 남성, 서울, 중구 저동,
010-1234-5678

가명정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 수 없는 정보
김XX, 30대, 남성, 서울시, 중구,
010-XXXX-XXXX

필요성

- 개인정보 유출 시 사생활 침해, 명의도용 등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침해사고 예방·대응 체계 강화, 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확산해야 합니다.

솔루션

STEP 1

정책 및
관리체계 수립

- 개인정보를 다루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② 책임자 및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 ③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④ 접근 권한 관리, ⑤ 접근 통제
- ⑥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⑦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 ⑧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⑨ 물리적 안전조치
- ⑩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
- ⑪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 ⑫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
- ⑬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⑭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동의/보관/처리/폐기 절차를 정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시행문서의 주기적 검토와 제·개정합니다.

STEP 2

전문 인력 및
자원 확보

- 정보보호 및 관리 보안 분야 전문 인력(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자원을 마련합니다.

STEP 3

개인정보 위험 관리

-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전송/공유에 있어 위반방지 조치를 이행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의식을 제고합니다.
- 개인정보 침해 및 사고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N 사 |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

- 내부 정보보호시스템 및 관리를 통해 임직원의 업무용 PC에는 고객 및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저장하여 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을 통해 보호 조치 시행하고, 검색 결과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인식하여 마스킹(Masking) 처리 후 게시해야 합니다.

| 참고 | 접속기록 관리 및 정기 점검

-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기록(계정정보, 접속일시, 접속자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정보, 활동 등)을 1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비정상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내부 관리 계획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합니다.
- 비정상 행위란 비인가 계정 및 접속지(단말기 및 IP)에서 접근, 업무시간 외 접속, 특정 정보주체에 대한 과도한 조회 및 다운로드, 대량의 개인정보 조회·정정·다운로드·삭제 등 행위, 짧은 시간내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지역(IP)에서 접속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과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의 이행 실태를 최소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표]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 구분 | 내용 | 벌칙 및 과태료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 없는 수집(제22조), 민감 정보수집(제23조) • 동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제24조) • 사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제24조의2) |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개인정보 취급 위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 최소 정보 이외의 정보 미제공을 사유로 서비스 제공 거부(제23조) • 주민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미조치(제23조의2) | 과태료(3천만원 이하) |
| 영업양수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동의 없는 취급 위탁(제25조), 개인정보 취급 위탁 사실 미공개(제25조) • 영업양도 등 미통지(제26조 제1항) • 영업양수자 등이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제26조 제3항) | 과태료(2천만원 이하) 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개인정보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27조), 개인정보취급방침 미공개(제27조의2) •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이행(제27조제1항제1호, 제6호) •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제28조제1항 제2호~제5호)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훼손, 침해, 누설(제28조의2) | 과태료(2천만원 이하) 과태료(3천만원 이하)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개인정보 파기 및 이용자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미파기(제29조) • 이용자의 동의철회, 열람, 정정요구 미조치(제30조) • 개인정보 오류 정정 요구에 미조치 상태로 제3자 제공 및 이용(제30조제5항) | 과태료(3천만원 이하) 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 ·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202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해설서

S28 사회 법규 준수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최근 3년 내 사회 이슈와 관련된 법규 위반 내역이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부문의 법규는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근로자, 여성, 연소자, 거래업체(협력사), 소비자, 지역사회, 주주 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로 유관 법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주로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법상 제재(형벌, 벌금, 과료), 행정적 제재(시정조치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등의 처분 여부를 묻는 문항입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러한 법규 위반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해하고, 평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ESG 경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귀사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을 판단하여야 법규 준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솔루션

- STEP 1

관련 법령 이해 및 리스크 식별

- 우선, 기업의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규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식별해야 합니다.

사회 영역 주요 위험 유형 및 관리 지표

 - **노동관행**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법정 근로시간 준수, 법정 최저 임금 준수, 취약여성근로자비율, 건강 검진 실시, 취업규칙 제정(상시 10명 이상)
 - 차별금지(제6조)·강제노동(제7조)·아동노동(제54조)·인신매매 금지
 - 노사협의회 실시(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 임직원 법정 4대 교육(연 1회)
 - **산업안전**
 - 산업재해율, 산업안전관리, 작업장 안전관리, 비상사태 대응 등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 법규**
 -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Compliance Manual) 작성 및 배포, 자율준수관리자 지정, 임직원 교육, 준법 지원 인력 및 조직 운영내부감시 및 제재 체제 구축
 - **소비자 보호법**
 - 제품 정보 공유(소재, 스펙, 유해물질 등)

- STEP 2

내부 통제 이행

- 유관 법령에 대한 내부 정책 문서를 주기적으로 재·개정하여 내부 통제 기준, 절차, 운용 방식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 임직원에게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교육·홍보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이행합니다.
 - 준법 지원 인력 또는 조직을 운영하여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 및 예방 조치를 시행합니다.

- STEP 3

위반 사항 점검 및 예방 조치

- 기업은 사회 법/규제 위반 건수 및 처벌 수위를 기준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위반시 적절한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 | 사회 부문 유관 법과 필수 조치 사항

| 이해관계자 | 관련 법령 | 주요 내용 및 필수 조치 |
|-------|----------------------|--|
| 임직원 | 「근로기준법」 | <p>근로자의 근로 조건(근로시간·휴일·휴가·임금·해고·퇴직 등 노동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상시 10명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상시근로자 30인이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 외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시간 준수(주52시간제), 최저 임금 보장,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직장내 괴롭힘 예방, 고용상의 차별금지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 주요 적용 규정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일반 원칙·근로조건 서면 명시·해고 예고·금품 청산·임금 지급의 4원칙·휴게시간·주휴일 적용이 있으며, 제외 규정으로는 법령 요지 등의 게시·부당 해고 등 금지 및 노동위원회 구제절차·휴업수당·법정 근로 시간·연장 근로 제한 및 가산임금·연차유급휴가·생리휴가·취업규칙의 제정 및 신고가 있습니다. |
| 협력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p>사업자의 경쟁 제한 행위와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이 원사업자로부터 쉽게 겪을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인 거래상 지위 남용, 차별 취급, 사업방해활동 등을 금지합니다. 사업자는 고객에게 약관 내용 명시와 설명할 의무가 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약관의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며, 사용되었다면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p>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사업자 금지의무(12개)는 ①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② 물품 등의 구매 강제, ③ 부당 감액, ④ 부당한 위탁 취소·수령 거부, ⑤ 부당반품, ⑥ 부당한 대물변제행위, ⑦ 구매대금의 등의 부당 결제 청구, ⑧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⑨ 탈법행위, ⑩ 보복 조치, ⑪ 부당한 경영간섭, ⑫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금지합니다. 작위의무(9개)로는 ① 하도급계약 서면 교부 및 보존(3년), ② 선급금 지급, ③ 내국신용장 개설, ④ 감사의 기준방법·시기 및 검사결과 통지, ⑤ 하도급 대금의 지급, ⑥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⑦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⑧ 관세 등 환급금 지급의무, ⑨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가 있습니다. |
| | 「지식재산권법」 | <p>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 침해금지를 위한 법률입니다.</p> |
| 정보보안 | 「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 <p>정보통신망의 보안관리,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목적·내내 및 동의 획득, 기술적·관리적 안전 조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위탁에 대한 동의 등의 내용을 규정합니다. |
| 산업안전 | 「산업안전보건법」 | <p>사업자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인 이상 사업장은 생산 관련 업무와 감독을 이행하는 부서장, 직장방장 등 중간관리자를 관리감독자(제16조)로 선임해야 합니다. ① 관리감독자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②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 교육지도, ③ 산재 보고 및 응급조치, ④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협조, ⑤ 위험성평가 관련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을 이행해야 합니다. (제조,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 등 업종) 20~49인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 자격 또는 교육 이수한 자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9조)로 선임해야 합니다. (제조업 등)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제17조), 보건관리자(제18조)를 선임하고 공장장이나 현장 소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를 선임해야 합니다. |

| | |
|-----------|--|
| 참고 | <p>KESG가이드라인 · 「고용정책기본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산업안전보건법」 · 「최저임금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고용정책기본법」 · 「직업안정법, 청년」 · 「고용촉진특별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법」 등</p> |
|-----------|--|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윤리경영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경영 정책이란 기업 경영 및 활동에 있어 경제적, 법적 책임 수행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 수행까지 기본적 의무로 인정하고, 이를 기업의 의사결과 행동원칙으로 삼아 실천하기 위한 회사의 문서화된 방침을 의미합니다. 이 정책은 윤리헌장, 윤리정책, 윤리규정, 윤리지침의 형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윤리정책을 수립한 후 사내 인터넷이나 교육을 통해 임직원에게 공유하고, 자사 홈페이지 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해 협력사 등 대외 이해관계자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헌장 및 실천 규범의 제정은 내외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관련 모든 구성원이 기업의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글로벌 대기업은 윤리 정책과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협력사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는 원사업자에게 윤리준수서약서, 청렴거래이행계약서의 작성을 요구 받을 수도 있으며, 신뢰 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윤리헌장과 실천규범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솔루션

| | |
|---|---|
| <p>STEP 1 윤리경영 원칙 수립</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일반적인 윤리 준수 의지를 담은 윤리경영 원칙을 수립합니다. |
| <p>STEP 2 규제 동향 및 윤리 위험 진단</p> | <p>윤리경영 원칙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1. 법과 윤리를 준수한다. 원칙2. 고객, 임직원, 주주를 존중하며, 건전한 조직문화를 유지한다. 원칙3.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경영 관련 제도 및 규제 동향을 파악합니다. 기업의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파악하고, 발생한 혹은 발생가능성이 있는 윤리경영 이슈를 조사합니다. |
| <p>STEP 3 정책 및 지침 수립</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윤리경영 이행에 필요한 세부 정책을 수립합니다. <p>윤리 정책 주제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직원 윤리 준수: 뇌물, 청탁, 이해관계 상충, 내부자 거래 금지 및 직장 윤리 준수 등 공정거래 이행: 반독점, 담합, 부정경쟁, 자금세탁,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금지 고객 윤리 준수: 고객 안전, 품질 준수, 개인정보 보호, 고객 의견 수렴 등 임직원 존중 및 보호: 인권 존중,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차별 및 괴롭힘 금지, 일·가정 양립, 안전 및 보건 |
| <p>STEP 4 윤리 경영 의지 공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경영 준수 의지 및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문서화하여 자사 홈페이지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합니다. |

| S사 | 협력사 윤리경영 가이드

| 항목 | 주요 내용 |
|-----------------------|--|
| 청렴성 | <p>협력회사는 모든 형태의 뇌물 수수, 부패행위, 부당이익 및 횡령을 허용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표방하고, 투명한 거래 이행과 회계장부 및 업무 기록에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또한 반부패 법규 준수를 위한 모니터링 및 집행 절차를 실행합니다.</p> <p>① 정책 및 절차 수립 : 모든 형태의 뇌물, 부패, 갈취, 횡령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수립하고 이해관계 충돌 신고가 있을 경우 이를 기록합니다. 또한 직원이 이해관계 충돌을 신고할 수 있는 접수채널을 만들고, 신고가 있을 경우 기록합니다.</p> <p>② 교육 : 최소 연 1회 이상 경영진과 근로자들에게 수립한 정책 및 절차와 이해관계 충돌 신고 등에 관한 교육을 합니다.</p> |
| 부당 이익 금지 | <p>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뇌물이나 기타 대가를 제안 및 제공, 허락 및 수령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p> <p>① 정책 수립: 고객사 또는 공급업체로부터 선물 비용 및 빈도가 과다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하고, 다른 수단을 약속-제공-허락-부여-수락하지 않도록 문서화합니다.</p> <p>② 정기 모니터링 및 교육 : 모든 임직원의 부당 이익 거래의 의혹, 발생 여부에 대해 확인합니다. 위반 사례 발생 시 조사 방법, 증빙 자료, 증언을 포함한 기록을 보관하고 인사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p> |
| 기록 및 관리체계 | <p>회계장부 및 업무 기록에 모든 거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노무-안전보건-환경 관리-경영활동-지배구조-재무상태-성과에 대한 정보의 신뢰를 확보합니다.</p> <p>① 내부 관리 체계 :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정기 점검/평가/감사 절차 등의 체계를 확립하고, 사업 운영에 대한 제3자 재무 감사 및 연례 보고서 작성합니다.</p> |
| 지적재산 보호 | <p>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보호 대상은 주요 고객사 직원의 개인정보, 계약 가격과 규모, 하청업체 및 공급업체 이름, 신원 정보와 상표, 제3자 지적재산, 특허 기록, 저작권 등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입니다.</p> <p>① 정책 수립: 지적재산권 검토 및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절차를 수립하고, 거래업체에 지적재산 정책 및 지침을 전달하고 기밀유지 협력을 체결합니다.</p> <p>② 교육: 관리자 및 감독자는 정보 보호 절차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수료하며 교육자료와 기록은 최신 상태를 유지합니다.</p> |
| 공정 거래, 광고 및 경쟁 | <p>공정거래법 및 공정한 광고 관련 법률, 경쟁 관련 법률 등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모니터링, 교육 등)를 포함한 공식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합니다.</p> |
| 공급망 규제 물질 관리 | <p>국가별 법규 및 국제 법규에 따른 분쟁광물, 전략물자, 불법목재 등 불법적 방법으로 생산 및 유통된 물자를 구매-사용하지 않는 정책을 수립하고, 불법적으로 생산된 물자의 조달 및 사용을 금지하는 절차를 수립합니다.</p> <p>① 원거래사에 원산지과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하위 협력사에 해당 물자의 사용 금지를 요청합니다. 또한, 실사를 통해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p> <p>② 내부적으로 관련 물자사용 현황과 개선 방안을 경영진이 인식해야 하며, 경영진 책임 하에 사용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관리합니다.</p> |

출처: S사 협력회사 행동규범 가이드 ver 4.0 - 윤리경영

G02 윤리경영 인증

심화지표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지배구조 관련 경영시스템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배구조 분야 경영시스템 인증은 ISO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ISO37301(준법경영시스템), ISO31000(리스크관리시스템), ISO5116-1(재무보고투명성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자 기관을 통해 받은 윤리경영 관련 시스템 인증은 고객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사회적책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공용기관의 기술평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평가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솔루션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iv style="border: 1px solid #007bff; border-radius: 10px; padding: 2px 5px; display: inline-block;">STEP 1</div> <p>인증 제도 파악 및 선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속한 산업과 관련된 인증을 파악하고, 기업의 기회 또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지배구조 분야 인증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div style="border: 1px solid #007bff; border-radius: 10px; padding: 2px 5px; display: inline-block;">STEP 2</div> <p>취득 및 관리</p> | <div style="background-color: #555;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참고</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시스템 인증: 회사가 특정 표준이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한 인증제도에 대한 취득 절차와 요구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경영시스템 관련 인증은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갱신을 위해서는 최초 인증심사 절차에 준하는 인증 심사가 진행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증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갱신 인증활동이 완료된 경우 인증을 복구하여 유지할 수 있습니다. <div style="background-color: #555;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top: 5px;">참고</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표준협회(www.ksa.or.kr) 2) ISO 인증 경영지원센터(www.iso-certification.kr) 지자체별 테크노파크 등을 통해 인증 취득 지원 정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기테크노파크 2) 충북테크노파크 3) 경북테크노파크 등 |

[표] 윤리경영시스템 인증 예시

| 인증 | 내용 |
|-------------------------|--|
| ISO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합니다. • 조직이 직면한 뇌물 수수 위험에 따라 합리적인 정책, 절차, 통제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명시합니다. • 사회적 책임을 입증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뇌물수수 등 법규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 ISO 37301 (준법경영시스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규정 준수를 위한 준법경영시스템을 구축, 개발, 구현, 평가, 유지관리 및 개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지침을 제공합니다. • 조직이 관리시스템의 규정 준수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관리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을 명시합니다. • 준법경영시스템을 통해 법규 및 기업 윤리를 준수함으로써 법규위반 등의 손실에 대한 리스크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
| ISO 31000 (리스크관리시스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관리 및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 리스크관리를 통해 기술관리 개선과 현장 안전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사전 리스크관리를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이해관계자와의 신뢰성 구축, 재정적 및 법적 리스크 완화 기대가 가능합니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법규준수를 위한 담당자를 보유하고 윤리 규정을 문서화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는 법규 준수 및 리스크 관리 담당자 또는 조직을 지정하여, 재무·회계·감사 관련 부정사안·기타 내부통제 관련 현안·지적재산 보호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합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사항 및 관련 정보를 보고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하는 체계를 갖춰야 하며, 내부통제를 위한 규정과 징계 절차를 문서화하여 준법경영시스템의 기반을 수립합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진 및 임직원의 부패로 기업은 법률, 영업, 평판상 직·간접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은 경영상 지속가능성에 치명적일 수 있어 체계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요구합니다. 상시적으로 감독 및 관리할 수 있는 담당자 및 조직을 지정하고 운영 기반인 규정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

솔루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P 1 전담 조직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P 2 리스크 식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과 행위를 파악합니다. <table border="1" style="background-color: #f2f2f2; width: 100%;"> <thead> <tr> <th colspan="2">기업의 위험 유형</th> </tr> </thead> <tbody> <tr> <td>법률 위험</td> <td>법적 제재로 인한 벌금형, 피해보상, 수감</td> </tr> <tr> <td>운영 위험</td> <td>매입, 생산, 판매, 고용, 투자 등 운영상에 부정적인 영향</td> </tr> <tr> <td>평판 위험</td> <td>동료, 가족, 친구, 일반 대중 내 임직원과 기업 전체 입지 하락</td> </tr> </tbody> </table> | 기업의 위험 유형 | | 법률 위험 | 법적 제재로 인한 벌금형, 피해보상, 수감 | 운영 위험 | 매입, 생산, 판매, 고용, 투자 등 운영상에 부정적인 영향 | 평판 위험 | 동료, 가족, 친구, 일반 대중 내 임직원과 기업 전체 입지 하락 |
| 기업의 위험 유형 | | | | | | | | | |
| 법률 위험 | 법적 제재로 인한 벌금형, 피해보상, 수감 | | | | | | | | |
| 운영 위험 | 매입, 생산, 판매, 고용, 투자 등 운영상에 부정적인 영향 | | | | | | | | |
| 평판 위험 | 동료, 가족, 친구, 일반 대중 내 임직원과 기업 전체 입지 하락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P 3 관련 규정의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이 승인한 회사의 윤리 및 법규 준수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전 사업장에 현지어언어로 게시합니다. 노동, 안전보건, 환경 등의 내용을 함께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행동 규범 및 윤리 강령 등을 제정하고, 모든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회사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 정책문을 사업장내 또는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해야 합니다. <table border="1" style="background-color: #f2f2f2; width: 100%;"> <thead> <tr> <th colspan="2">행동 규범 및 윤리강령 내용 예시</th> </tr> </thead> <tbody> <tr> <td>운영 절차</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기록의 정확성, 회계장부와 기록의 정확한 보고를 통한 회계 장부 조작 방지, 투명한 공개 등 </td> </tr> <tr> <td>법률 준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 상충 행위·절도·갈취·횡령·사기 행위 금지, 기업 자산 보호, 개인정보보호, 지적 재산 보호, 지원금 부정 수급 등 금지 등 ● 반부패 및 뇌물 수수(약속, 강요 등) 금지, 청탁 방지, 내부고발자 익명성 보장 및 보복 금지, 책임 있는 광물 조달 등 </td> </tr> </tbody> </table> | 행동 규범 및 윤리강령 내용 예시 | | 운영 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기록의 정확성, 회계장부와 기록의 정확한 보고를 통한 회계 장부 조작 방지, 투명한 공개 등 | 법률 준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 상충 행위·절도·갈취·횡령·사기 행위 금지, 기업 자산 보호, 개인정보보호, 지적 재산 보호, 지원금 부정 수급 등 금지 등 ● 반부패 및 뇌물 수수(약속, 강요 등) 금지, 청탁 방지, 내부고발자 익명성 보장 및 보복 금지, 책임 있는 광물 조달 등 | | |
| 행동 규범 및 윤리강령 내용 예시 | | | | | | | | | |
| 운영 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기록의 정확성, 회계장부와 기록의 정확한 보고를 통한 회계 장부 조작 방지, 투명한 공개 등 | | | | | | | | |
| 법률 준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 상충 행위·절도·갈취·횡령·사기 행위 금지, 기업 자산 보호, 개인정보보호, 지적 재산 보호, 지원금 부정 수급 등 금지 등 ● 반부패 및 뇌물 수수(약속, 강요 등) 금지, 청탁 방지, 내부고발자 익명성 보장 및 보복 금지, 책임 있는 광물 조달 등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 법령에 대한 내부 정책 문서를 주기적으로 제·개정하여 내부통제 기준, 절차, 운용 방식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위반에 따른 징계절차는 인사정책 및 취업규칙을 따릅니다. | | | | | | | | |

|참고 | 중소기업 인식 제고 및 부패 방지 위한 툴킷(Toolkit)

- OECD 부패 위험 평가 프로세스를 위한 자체 평가 도구(OECD, 2021)
출처: 아시아태평양, 동남아시아반부패및기업청렴성(SEACAB) 프로젝트를 위한 OECD 이니셔티브
- 내부 통제, 윤리 및 규정 준수에 관한 OECD 모범 사례 지침(OECD, 2021)
출처: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378>
- 중소기업을 위한 G20 및 B20 반부패 툴킷(g20.org)
출처: g20.org/wp-content/uploads/2015/12/anti-corruptiontoolkit-for-smes.pdf
- CIPE 비즈니스 청렴성 보고서(CIPE, 2020)
출처: <https://transparency.ch/fr/nouvelles-publications/>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S사 | 윤리경영 선언과 실천

- 윤리경영선언문을 전 직원에게 알리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윤리의식 제고합니다.
- 반부패 및 공정경쟁 관련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 사내에서 부적절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불공정 거래 적발 시 대응할 수 있는 합당한 처벌 규정을 운영합니다.
- 협력업체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품질, 경력, 기술 등 각 부문별 평가 및 재무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익명신고, 내부신고 게시판을 활용하여 협력업체와의 건전성 증진에 노력합니다.

|E사 | 윤리경영 실천 프로세스

- 전기동력 추진시스템의 개발 및 제조업체 E사는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모든 임직원에게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실천을 유도합니다.
- E사의 윤리경영 실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기업의 부패관련 리스크 식별 및 분석
 - 2단계: 식별된 부패 이슈 대응 방안 모색
 - 3단계: 반부패 사내규정 제정

[부당이익 금지 정책 수립]

- 이해관계자에 제공하는 물품/금품에 대한 명확한 횡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뇌물 등의 수수 금지가 업무 기준으로 수립되고, 구매/영업 관련 부서 등 핵심 유관 조직에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 주기적 교육과 모니터링

- 윤리경영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서는 회사 차원의 윤리규범 제정 후 비리행위 제보 채널 운영 등의 프로세스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 UNGC 중소기업을 위한 반부패 가이드라인 · FAIR PLAYER CLUB 반부패 준법·윤리경영 지침서 (2016)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법규준수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 및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절하고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뇌물이나 기타 다른 대가를 약속·제안·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허가 또는 수령하지 않으며, 반부패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위반사항이나 의심행위에 대한 (1) 정기적인 내부 점검을 수행하고 있는지, 경영진 및 임직원에게 윤리 관련 정책과 (2) 내부 통제 기준을 내부에 공유하고 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과 홍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규 준수 및 내부통제 체계가 잘 운영되고 있다면, 부패 및 비리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부패 및 비리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윤리준수 및 내부통제를 위해 정기적인 감사나 점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 솔루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EP 1 내부통제 진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에 발생한 부정부패 관련 행위나 잠재적 부정부패 리스크를 확인하고, 내부통제시스템으로 대응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내부통제시스템 진단 및 미비점 탐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직원 징계 빈도, 유형, 처리결과를 확인합니다. 내부통제 실효성에 대한 임직원 자가진단,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div>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EP 2 정기적인 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반부패, 공정거래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위반이나 의심행위가 없는지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위반 발생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 방법, 객관적 데이터, 증언을 포함하는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예방 및 징계 조치 포함)을 취해야 합니다.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정기적인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패행위, 윤리정책 위반, 공정거래 위반 유형 / 건수 / 개선조치 사항, 거래관계에서 부적절한 제안, 뇌물 또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수락 등 규정을 위반하거나, 의심되거나, 수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방법 및 객관적 데이터, 증언 등 기록을 보관·관리합니다. </div>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EP 3 정기교육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직원 대상으로 법규 준수의 중요성, 부패방지, 공정거래 교육 등을 실시하고, 교육자료와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교육 지원 및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을 위한 ESG관련을 위한 규정집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거래 교육 지원(중소벤처24 www.smes.go.kr) 기업 반부패 가이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의 부패 인식 제고 및 예방을 위한 툴킷 (OECD) </div> |

| 참고 | UNGC 중소기업을 위한 부패리스크 체크리스트

| 부패 리스크 평가 | 예 | 아니요 | 진척상황 |
|--|---|-----|------|
| 기업이 정기적으로(최소 연 1회)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리스크 평가를 시행할 때 업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가 | ✓ | | |
| 리스크 평가를 시행할 때 운영 상 절차를 명시하고 이를 문서화 하였는가 | ✓ | | |
| 기업이 관리감독 업무를 명시하고 있는가 | ✓ | | |
| 기업이 현재 절차에 리스크 평가를 포함시켰는가 | ✓ | | |
| 기업이 부패방지에 실패하였을 시 직면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법, 영업, 운영, 평판 상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 | ✓ | | |
| 리스크 평가에서 모든 위험 분야를 다루고 있는가 (예: 업계 및 사업장 위치) | ✓ | | |
| 기업의 내·외부 정보를 통해 부패 리스크를 식별하고 있는가 | ✓ | | |
| 기업이 전반적인 리스크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가 | ✓ | | |
| 기업이 전반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잔여 리스크를 파악하는 리스크 전략을 개발하고 있는가 | ✓ | | |
| 기업이 전반적인 리스크 평가 결과를 문서화 하고 있는가 | ✓ | | |
| 기업이 리스크 평가를 공시하고 있는가 | ✓ | | |

출처 : UNGC 중소기업을 위한 반부패 가이드라인

| E사 | 윤리적 의사결정과 행동 원칙 실천

- 전 직원들의 윤리서약서에 서명을 이행합니다.
- 글로벌 수준의 기업윤리 실천을 위한 윤리경영 실천 지침을 규정합니다.
-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경영이 지향하는 의사결정 원칙인 합법성, 투명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 A. 합법성: 관련 법규 및 회사 규정에 부합하는가?
 - B. 투명성: 내용과 절차에 숨김과 거짓이 없고, 공개해도 떳떳한가?
 - C. 공정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가?

| 참고 | 이해관계 충돌 사례

- 임직원 또는 그 직계 가족이 회사와 사업 관계가 있거나 경쟁사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등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와 공공 또는 타인의 이익과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거래상의 리베이트, 커미션, 선물, 현금 등 뇌물 제공 및 수수 행위도 포함됩니다.

참고

UNGC 중소기업을 위한 반부패 가이드라인 ·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을 위한 ESG관련을 위한 규정집 (중소기업중앙회) · 공정거래 교육 지원(중소벤처24 www.smes.go.kr) · 기업 반부패 가이드(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의 부패 인식 제고 및 예방을 위한 툴킷 (OECD)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하도급 거래 시 공정계약 이행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가 없는 공정한 상황 하에서 거래를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및 업종 특성 등을 반영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을 담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하도급 거래'란 재위탁(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단순 도급계약(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위탁)이여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의 균형을 맞추고 불공정 행위를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로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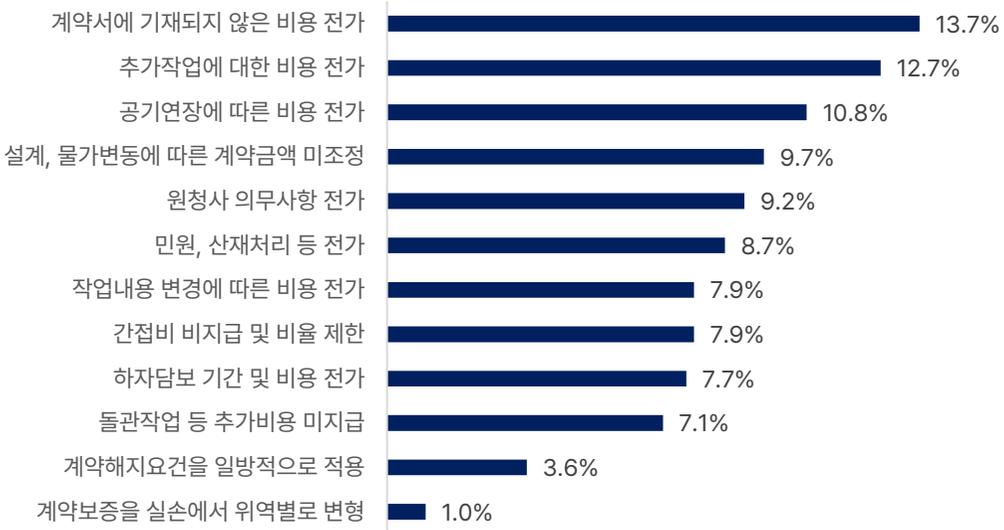
- STEP 1**
 관련 법령 이해
 - 하도급법에 따라 행정제재 처분이 주로 발생하는 사례로 **하도급계약서의 작성, 공사대금 지급보증, 대금직접지급, 대금지연이자, 대금 조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STEP 2**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 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을 확인하여 누락하지 않도록 합니다.
 - * 선급금, 기성금, 조정액 등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및 기일, 위탁일, 납품일시 및 장소, 목적물,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시기,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및 방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공 업종

| | |
|---------------|---|
| 건설업종 (7개) | 건설업 ·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 해외건설업 · 조경식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 제조업종 (24개) | 자동차업 · 전자업 · 전기업 · 조선업 · 조선(제조임가공)업 · 기계업 · 섬유업 · 건설자재업 · 음식료업 · 자가상표부착제품업 · 화학업 · 제1차금속업 · 의료기기업 · 정밀·광학기기업 · 출판인쇄업 · 해양플랜트업 · 가구제조업 · 의약품제조업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 제지업 · 철근가공업 · 방산업 · 금형제작업 |
| 용역업종 (19개) | 건축설계업 · 엔지니어링업 · 건축물유지관리업 · 화물운송업 · 화물취급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 ·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 · 상용SW유지관리업 · 상용SW개발구축업 · 임용SW개발구축업 · 애니메이션제작업 · 방송업 · 경비업 · 광고업(TV·라디오 등) · 광고업(전시 및 행사) · 내륙화물운송업 · 환경디자인업 · 제품·시각·포장디자인업 · 디지털디자인업 |

| 참고 | 하도급계약 시 부당특약 사례 비중

- 표준하도급계약을 사용하는 경우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비율이 감소합니다. 부당특약이 설정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직접적 피해 구제가 어려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홍성진(2022), 실태조사 기반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부당특약의 입법 개선 방안

| 참고 | 「하도급법」 반영한 공통 규정

- 부당 행위(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위탁취소, 부당반품, 부당감액, 기술자료 유용, 보복조치)를 금지하며, 원사업자 발생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제35조 제2항).
-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 제공 행위 금지, 비밀유지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합니다(제12조 제3항).
- 대금 조정협의 신청 사유를 대금조정협의 신청 사유로 하여 주요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조건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2 제1항).
- 중대재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 대금의 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되, 대물변제는 원사업자의 부도 등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금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율과 약정이자율이 다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참고 「공정거래법」·「하도급법」·공정거래위원회·「표시광고법」·「약관규제법」

G06 ESG KPI 설정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핵심성과지표(KPIs)에 ESG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란 기업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미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지표를 선정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KPI에는 시장 점유율, 매출 성장률 등의 재무적인 지표와 고객 만족도, 신제품 개발, 산업재해 건 수, 법규준수 등과 같은 비재무적인 지표를 포함합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사회, 지역사회 등과 관련된 목표를 KPI로 설정하였다면, 사업의 전략 목표에 ESG가 포함된다 의미입니다. 이는 기업이 ESG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된 잠재적인 규제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급망 실사가 확대됨에 따라 협력사의 ESG 역량도 중요해지는 만큼 ESG 관련 KPI를 보유한다면, 고객사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만한 협력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또한, KPI 달성 성과에 연동하여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ESG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솔루션

- STEP 1

KPI에 포함될 ESG 지표 선정

 - 기업에 중대한 ESG 핵심이슈를 식별합니다. 본 자가진단을 수행하면서 기업의 미래 경쟁력에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거나 대비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지표가 있었다면 선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중대하다고 생각한 이슈 중 노력으로 성과를 개선할 수 있으며, 측정가능해야 KPI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동종업계나 유사 산업 내 대기업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SG 관련 KPI 지표 예시

환경

- 제품 사용단계 온실가스 누적 감축량
- 온실가스 원단위 배출량
- 에너지 사용량 감축
- 사업장 폐기물 재자원화율
- 재생에너지 전환율
- 용수 재이용율

사회

- 협력사 ESG 실사 비율
- 여성 임직원 비율

지배구조

- ESG 관련 인증 취득 수

- STEP 2

목표 설정 및 정기적인 점검

 - 선정한 ESG 지표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여러 연도의 데이터가 있으면 목표 설정에 도움이 됩니다.
 -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 정기적으로 성과를 측정해 목표 달성 정도를 점검합니다.

| 참고 | 주요기업의 ESG 관련 KPI 현황

- 국내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기업 162개에서 52.5%(85개사)가 경영진 또는 조직의 핵심성과지표(KPI)에 ESG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환경, 안전 등 일부 ESG 관련 이슈를 KPI에 반영한 기업은 23.5%(38개사)입니다.

출처 : 2023 K-기업 ESG 백서(한국경제인협회)

| K사 | 안전보건 KPI 설정

- 석유화학 기업인 K사는 산업 특성상 안전보건의 중요함을.
-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해 업무 수행 평가 결과를 관리감독자의 KPI 평가지표에 반영합니다.
- 또한, 협력사를 포함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최저 등급을 부여합니다.

| H사 | 기후변화 관리 인센티브

- CEO, 공장장(생산법인장), 유관조직 직원의 KPI에 기후변화 항목을 포함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인센티브 및 연봉 체계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표] 기후변화 관리 인센티브 예시

| 대상 | 인센티브 | KPIs | KPIs 설명 |
|----------------|-------------------------|--------------------|--|
| CEO | 금전적 보상 (상여금 산정 시 반영) | 탄소중립 & 에너지전환 이행 | 1) 탄소중립 목표 대비 달성 수준 2) 탄소중립 이행 체계 구축 수준 |
| 공장장 (생산법인장) | | 온실가스 배출 감축 | 1) 총 배출량 2) 단위당 배출량 3) RE100 목표 달성률 |
| 직원 (유관조직) | | | 각 유관조직 담당자별 달성 목표를 수립 후 개인 성과평가 항목에 반영 |

출처 : H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표] ESG KPI 설정 예시

| 영역 | 범주 | 성과지표 | 목표 | | | | | |
|---------|--------------|-----------------|-----------|--------|--------|------|------|------|
| | | | 단위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 환경(E) | 온실가스 감축 | Scope 1 배출량 | tCO2eq | 3500 | 3000 | ... | ... | ... |
| | | Scope 2 배출량 | | 1900 | 1600 | ... | ... | ... |
| | 폐기물 관리 | 폐기물 재활용율 | % | 70 | 75 | ... | ... | ... |
| | 지역오염 방지 | 오염방지 실적 | 대응시간 | 3일 이내 | 2일 이내 | ... | ... | ... |
| | 용수 사용 관리 | 용수 사용량 | 천 톤 | 125 | 120 | ... | ... | ... |
| | 대기오염물질 | NO _x | 톤 | 1.1 | 1.0 | ... | ... | ... |
| | | SO _x | | 1.3 | 1.1 | ... | ... | ... |
| 먼지 | | 0.7 | | 0.5 | ... | ... | ... | |
| 에너지 감축 | 에너지 사용량 | TJ | 500 | 488 | ... | ... | ... | |
| 사회(S) | 산업안전 강화 | 안전관리 등급 | 등급 | 2등급 이상 | 2등급 이상 | ... | ... | ... |
|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청년 신규 채용 | 비율 | 정원의 3% | 정원의 3% | ... | ... | ... |
| | 인력 다양성 | 여성관리자 비율 | 비율 | 8% | 8.3% | ... | ... | ... |
| | 인권경영 강화 | 인권경영 의식수준지수 | 지수 | ... | ... | ... | ... | ... |
| | | 아동 및 강제노동 | 발생건수 | 0 | ... | ... | ... | ... |
| 직원건강 | 건강검진 비율 | 100% | ... | ... | ... | ... | | |
| 지배구조(G) | 윤리경영 강화 | 종합청렴도 평가 | 청렴도 평가 점수 | ... | ... | ... | ... | ... |
| | | 뇌물수수 | 청렴도 평가 점수 | 0 | ... | ... | ... | ... |
| | | 이해상충 | 발생건수 | 0 | ... | ... | ... | ... |
| | | 돈세탁 | 발생건수 | 0 | ... | ... | ... | ... |
| | 지배구조 법/규제 준수 | 반부패·윤리규범 이행 점수 | 점수 | ... | ... | ... | ... | ... |
| | | 정보보안 | 사고 발생건수 | 0 | ... | ... | ... | ... |

출처: K사 ESG KPI 지표

참고

중소기업 ESG 추진전략(대한상공회의소) · RBA Code of Conduct · EcoVadis 평가문항 · 주요기업 협력사 행동규범 · 주요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사의 환경, 사회 등 비재무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 이해관계자(고객사, 투자자, 소비자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기업현황을 홈페이지, CSR 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기업이 환경적·사회적·윤리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내용을 내외부에 자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고객, 투자자, 임직원 등 주요 이해관계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비재무적 리스크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적절한 공시는 기업 신뢰 향상 등에 기여합니다. |

솔루션

- STEP 1**
정보 공시 항목 파악

- 주요 정보공개 표준을 기반으로 자사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의 활동을 고려하여 자사만의 공개 기준과 공개 항목을 파악합니다.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정보 공개 표준

 - **GRI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채택된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입니다.
 - **SASB (지속가능성 회계 기준 위원회)**: 산업별로 중요한 ESG 이슈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비교 가능한 비재무정보에 대한 회계 지표를 제공합니다.
 - **TCFD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기업이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고, 재무적 영향, 전략적 대응 방안, 거버넌스 등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돕는 표준입니다.
- STEP 2**
정보 공시 항목 선정

- 기업의 주요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파악하여 정보 공시 항목을 선정합니다.

주요 ESG 정보 공개 항목

 - 환경: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용수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환경법규 준수 등
 - 사회: 인권 보장 조치 윤리정책, 임직원 안전 및 건강, 청년인턴 채용 현황 및 정규직 비율, 제품 리콜 및 조치사항 등
 - 조작: ESG 전담 조직, ESG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평가, 내부통제 이해관계자의 ESG 참여 방식
- STEP 3**
공시 방안 선정

- 정보공시 담당자에게 기업 주요 의사결정 내용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정보공개 방안을 결정합니다.

참고

 - 기업설명회, 홈페이지 게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언론사 등 자율공시
 - 수출, 해외 법인, 외국인 주주를 고려한 주요 공시사항을 영문 제공
- STEP 4**
공개 및 모니터링

- 연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소통 채널을 통해 공개합니다. ESG 요소와 재무정보를 연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공개 시점과 비슷하게 설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 참고 | 정보공개 유형 및 장단점

| 홍보 유형 | 장점 | 단점 |
|-----------|--|---|
| 게시판 | 저비용 | 내부 홍보 국한 |
| 회합, 구전 | 직접적인 대화·청중에게 개별화된 정보 제공 | 도달 범위 한정·개별화를 위한 시간 소요 |
| 전시회, 컨퍼런스 | 직접적인 대화·기업 차별화와 고객 확보에 효과적·청중에게 개별화된 정보 제공 | 홍보부스 확보와 자료 준비, 출장 등에 고비용 소요 |
| 뉴스레터, 이메일 | 배포 대상 특정화 가능·다른 관련 정보를 포함·보고서 발간 대비 저렴 | 일방향 소통 채널·CSR 이행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될 우려·무시 또는 오해를 초래할 우려 |
| 보도자료 | 저비용·광범위한 전달 범위 | 흥미있는 기사거리 제공 필요성·인맥의 영향력이나 접촉 등 필요 |
| 보고서 발간 | 전문가적 이미지·완전한 홍보 가능·투명성 및 신뢰성 제공 | 인쇄와 디자인 등 고비용·추가적인 홍보 비용 소요 |
| 웹사이트 | 인쇄 비용 불필요·종이 절약·모든 이에게 무료 제공 가능 | 보고서에 비해 미관 열약·웹에 대한 접근 필요 |

출처: 최성호 외(2006),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체계 구축방안

| 참고 | Fact Book 발간

- 지속가능경영서 발간이 처음인 기업은 자료 수집과 담당자들의 이해, 내용 작성 및 편집 등으로 상당한 업무 부담이 있습니다. Fact Book과 같이 **간소화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ESG 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 ESG 관련 목표와 실천과제를 담고 있으며, 해당 과제별 진척률과 관련 데이터(예: 온실가스 배출량, 용수 사용량, 이직률, 여성이사비율 및 남녀 임금격차 등)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 출력물 형태가 아니어도 되며, PDF파일·홈페이지 별도 섹션·홈페이지와 Fact Book의 혼합 리포팅(Web-reporting)을 활용하여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단, 웹 방식은 종합적인 기업의 ESG 정보의 제공이 제한됩니다.

| Y 사 | 환경경영 목표 수립과 지속가능경영 정보 공개

- 전 지구적인 환경보호 노력에 동참하고자 환경경영 방침을 선언하고, '친환경 원료 사용의 확대',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포장재 재활용성 향상'을 핵심목표로 설정했습니다.
- CEO 직속의 환경 전담조직이 제품 개발부터 생산, 판매, 물류 전과정의 친환경성을 고려하고 전사적인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수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환경경영 목표 및 이행 성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이해관계자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참고

K-ESG가이드라인 · GRI. 2004, High 5!: Communicating Your Business Success through Sustainability Reporting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사의 경영진은 ESG 경영을 위한 교육, 연수 등의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의 ESG 역량 개발이란, ESG 경영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대상으로 ESG 교육 및 연수활동을 추진하여 ESG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ESG에 대한 실천요구가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소기업 경영진들의 대한 ESG 교육 및 연수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 교육이 선행된다면, 향후 ESG 역량개발을 직원들까지 확대해 전사 차원의 ESG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솔루션

- STEP 1**
ESG 역량 개발 계획 수립

 - 간단한 설문조사나 회의를 통해 경영진의 ESG 경영 이해도를 파악합니다.
 - 이해도를 바탕으로 교육의 목적 및 목표, 세부교육내용, 운영방법, 교육 주기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STEP 2**
ESG 역량 개발 프로그램 진행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기관 제공 자료, 고객사 지원 교육 등 무료로 제공되는 다양한 리소스를 활용하여 ESG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체계 및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 자체 개발할 경우, 자사에 ESG 이행수준과 요구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SG 교육 프로그램 예시

- ESG에 대한 기본개념 및 최근 동향
- 주요 ESG 규제 및 이니셔티브
- ESG 분야별 구체적 가이드라인
- 실천사례 소개 및 실무 적용 방안
- ESG 관련 정보 공개 방안

ESG 관련 외부 연수 프로그램 유형

-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 ESG 사내 전문가 양성 과정
- ESG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교육
- 협력사 또는 공급망 이니셔티브 ESG 교육 참여
-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연수 참여

- 자체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진행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은 외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진들에게 ESG 관련 연수 활동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대기업의 협력사 대상 ESG 교육

- 공급망 실사법 대응에 따라 협력사의 ESG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어, 여러 대기업에서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ESG 역량 개발의 좋은 기회입니다.

협력사 ESG 지원

- K사는 중소/중견 협력사가 글로벌 ESG 환경 및 규제에 대한 대응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K사의 협력사 ESG 프로그램(절차, 요구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협력사 ESG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또한, K사 내부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CDP Supply Chain 등 협력사 ESG 프로그램의 의미, 담당자 지원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22년 ESG 평가점수 미달업체 180사를 대상으로 동종업체에 대한 ESG 벤치마킹 지원, 협력사 취약점 개선 및 경영전략 연계 맞춤형 서면 또는 현장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 ESG 교육 실적 | | 단위 | 2022년 |
|--------------------------|-------|----|-------|
| 글로벌상생협력센터(GPC) ESG 교육 실적 | 협력사 수 | 개 | 303 |
| | 이수자 수 | 명 | 1,123 |

출처: K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3

[표] 공급망 이니셔티브의 ESG 교육 제공

| 산업 | 이니셔티브 | 제공 교육 | 비용 |
|----|-----------------------------------|--|-----------------------|
| 화학 | Together for Sustainability (TfS) | 주로 온라인 교육의 형태로 보건안전, 환경, 지속가능 조달, 노동 및 인권, 경영 및 거버넌스에 대한 교육을 340개 이상의 강좌로 제공합니다. | 회원사 및 일부 공급업체에 무료로 제공 |
| 전체 | EcoVadis | EcoVadis 아카데미 e-러닝, 50개 이상의 온라인 과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지속가능성 주제를 다룹니다. 새로운 과정과 언어가 정기적으로 추가됩니다. | 구독 요금제에 따라 차등 |

[표] 중소기업 ESG 교육 및 지원 사업(2022년 이후)

| 기관 | 사업/문서명 |
|-------------------------|----------------------------|
| 중소벤처기업부 | CSR 사회적 책임경영 |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 ESG 자가·심층진단, 경영안내서 |
| 중소벤처기업부 & 애심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ESG 경영 이행가이드 |
| 산업통상자원부 | 공급망 ESG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
| 동반성장위원회 | 중소기업 ESG 표준가이드라인 |
| 동반성장위원회 | 협력사 ESG 지원 |
| 대한상공회의소 | ESG플랫폼 으쓱 |

참고

EcoVadis 아카데미 · TfS 이니셔티브 온라인 교육 · 정부부처 ESG 교육 및 지원 사업 · 대기업 협력사 교육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사는 주요 안건을 이사회를 통해 점검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은 자사 경영활동에서 중대한 사안을 이사회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이사회 주요 내용을 회의록을 통해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것을 결의(「상법」 제 393조)하여, 회사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조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사 사업상의 일상 업무는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르나, 이사의 주요 책임은 전략 계획, 대표이사 또는 총괄 관리자 평가 및 보상, 감독을 포함합니다. |

솔루션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P 1 이사회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은 이사회를 구성하여 기업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 결의해야 합니다. |
| | <p>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 383조에 따르면,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에 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P 2 이사회 연1회 이상 개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를 구성했다면, 이사회 개최 7일 전 각 이사에 대해 소집일자과 장소를 통지하고 이사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 정관에서 이사회 개최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사는 원격통신수단(화상회의 등)을 통해 결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상법」 391조 2항). |
| | <p>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는 이사와 감사의 전원 동의를 있다면,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이메일 등을 통해 각 이사와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 절차 생략 동의서'를 송부하고 서명 또는 날인과 함께 회신 받는 방법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EP 3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가 개최됐다면, 이사의 의사에 관해 의사록(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주주는 영업시간 내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p>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기 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

| [표] 이사회 운영 현황 공개 예시 | | | | | | |
|---------------------|------------------|----|-----|-----|-----|-----|
| 정기이사회(2023.XX.XX) | 내용 | | | | | |
| 보고 | 2022년 경영현황 보고 | |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회의 목적사항(4건) | 제1호 의안 : ... | | | | | |
| | 제2호 의안 : ... | | | | | |
| | 제3호 의안 : ... | | | | | |
| | 제4호 의안 : ... | | | | | |
| 구분 | 참석자 | 출석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 사외이사 | 김OO | 참석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이OO | 참석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박OO | 참석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최OO | 참석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사내이사 | 차OO | 참석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이OO | 참석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가결여부 | |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출처: A사 홈페이지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주주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은 주기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 최소 10일 전에 소집을 통지하여, 주주들이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원 임명, 재무제표 승인, 합병 등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이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총회의 개최와 소집 통지는 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규 준수를 위해 본 지표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

솔루션

- STEP 1**
주기적 주주총회 개최

 - 주식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 등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에 주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 내부 담당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주주총회가 주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법」 제365조(총회의 소집)

 -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정기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경우 매기에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 정기총회 외에도 필요 시 임시총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 STEP 2**
사전 소집 통지

 -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 주주총회일 이전에 각 주주에게 사전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통지의 주기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정의되며, 최소 기한은 총회일 10일 이전입니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회의의 목적을 적은 통지서를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발송해야 합니다. 다만,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3년 연속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해당 주주에게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일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표] 주주총회 관련 기타 법령

| 법령 | 내용 |
|---|--|
| 주주제안권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 <p>일정 기준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회에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
|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상법」 제366조) | <p>소수 주주 또한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소수 주주의 권리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위임장을 통해 요구 지분율을 충족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항의 청구가 있는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상법」 제368조) | <p>주주총회의 결의 방법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의결권 (「상법」 제369조) | <p>자기주식 등을 제외한 주식은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이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 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상법」 제449조) | <p>재무제표의 승인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는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 이사는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
| 이익의 배당 (「상법」 제462조 제2항) | <p>이익배당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참고

「상법」

| | |
|---|---|
|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사는 최근 3년 내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법규 위반 내역이 있습니까?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경영진 및 임직원 일체의 부패 및 비윤리적 행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련된 주요 법은 국제법과 수출 및 거래 국가의 반부패 관련 법, 형법,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윤리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확정 판결된 사법상 형벌, 행정적 처분(시정조치와 과징금, 벌칙)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입니다. |
|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러한 법규 위반은 기업의 심각한 비용 손실을 야기하며, 평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소송 및 심리가 진행 될 경우,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윤리 법규 위반에 따른 비용 손실, 진행 중인 소송 등의 경우 법적 대응경과, 향후 개선계획, 총당금 설정현황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이 지표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솔루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EP 1 관련 법령 이해 및 리스크 식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 기업의 사업의 이행과정에 준수해야 할 법·규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식별해야 합니다. <div data-bbox="415 987 1208 1116"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p>위험 유형 및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직원 반부패(배임·횡령·뇌물수수·청탁 등) 행위 및 의심 사례 이해상충/사기행위/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 임직원 윤리 정책 위반 등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다드를 참고하여, 국내외 공무원과 거래 관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업상 이익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에 대한 기준과 한도를 수립해야 합니다. 식사 및 선물, 경조금, 편의 제공에 대한 한도와 빈도를 제한하고 금지 항목에 대하여 나열하고, 경영진 및 임직원에게 공유합니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EP 2 내부통제 이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 법령에 대한 내부 정책 문서를 주기적으로 제·개정하여 내부통제 기준, 절차, 운용 방식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준법 지원 인력 또는 조직을 운영하여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 및 예방조치를 시행합니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EP 3 위반사항 점검 및 예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은 윤리 법/규제 위반 건수 및 처벌 수위를 기준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수립합니다. 임직원에게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교육·홍보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이행합니다. |

| 참고 | 윤리부문 유관 법과 필수 조치 사항

- 주요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다드를 참고하여, 국내외 공무원과 거래 관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업상 이익을 위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적법하고 투명한 거래 활동을 통해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 자금을 사용, 유통 등에 관련되는 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

| 주요 국가별 반부패 관련 법규 및 스탠다드 | |
|-------------------------|---|
| 미국 | 형법(United States Code Title 18-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 |
| 영국 | 「뇌물수수법(Bribery Act) 」, 「절도에 관한 법률(Theft Act), 사기에 관한 법률(Fraud Act) 」 |
| 프랑스 | 프랑스「사팽2법(Sapin II Law) 」, 「형법전(Code pénal) 」 |
| 중국 |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과 중국 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중국경쟁법) 」 |
| 베트남 | 「형사법전(Bộ luật Hình sự) 」, 「반부패법(Decree No.59/2019/ND-CP) 」 |
| 러시아 | 「형법(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 인도네시아 | 「형법(UU 1/2023 Kitab Undang-Undang Hukum Pidana) 」 |
| 글로벌 | OECD 뇌물방지협약 및 UN 글로벌 콤팩트 주주권리 보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상법」 사기절도 「형법」,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보조금관리법」 |
| 한국 | 회계장부 조작 및 부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뇌물수수 및 청탁「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 H사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ISO 37001) 획득

- 서울시 송파구 소재 의약품, 의료용구, 화장품 등 도매업체 H사는 ISO 37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해당 인증 기업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수립과 실행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는데, 중소기업이 동 인증을 획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ISO)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ISO 37001)]

- 조직이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합니다.
- 조직이 직면한 뇌물 수수 위험에 따라 합리적인 정책, 절차, 통제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요구사항 명시합니다.
- 사회적 책임을 입증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뇌물 수수 등 법규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참고 「상법」·「형법」·「보조금관리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ESG

경영안내서 공급망편

발행일 2024년 02월 01일

발행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집필 및 편집 대신경제연구소